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2/2차 연도)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신 유 선 초 청 연 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집필
신 유 선	초청연구원	자료 수집 및 정리, 5장 일부 집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북미, 남미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에 비해 지역 무역협정에 뒤늦게 참여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이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 체결 수나 심화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은 유럽 통합에 이어 북미와 남미 국가들의 경제 통합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지역협력은 지역통합의 완성에 가까운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 문화,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이해의 증진을 통해 역내 화합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ASEAN+3(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체제가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유럽과 같은 심화된 지역협력체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지역통합의 초기 단계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고 FTA 추진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2차년도 연구결과로 1차년도에 진행되었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논의 과정과 발전 방향, 동아시아 국가별 농업구조와 경쟁력, 농산물 교역현황 및 잠재력 등을 보완하였고, 특히 동아시아 FTA에 따른 역내 농산물 교역의 변화,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유럽, 미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자유무역지역, 경제공동체,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경쟁력, 관세장벽 등을 분석하고, 교역 자유화에 따른 교역 변화와 국가별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농업부문의 협력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FTA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GTAP 모형에 의하면 동아시아 FTA로 역내 국가들의 GDP는 한국 2.68%, 일본 1.41%, 중국 0.46%, ASEAN 0.7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는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외 국가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로 인한 기존의 역내 교역 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아시아 역내 곡물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은 쌀과 옥수수 정도에 불과하다. 쌀은 중국과 ASEAN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05년 동아시아 역내 쌀 교역 규모는 연평균 5억 9,000만 달러이다. ASEAN과 중국은 장립종과 중·단립종으로 분리된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단립종 시장에서는 중국이 ASEAN보다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GTAP 모형으로 쌀의 시장개방 효과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쌀 수출은 2억 9,000만 달러 증가하고, ASEAN의 쌀 수출은 1억 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쌀 수입 증가는 각각 8,200만 달러,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은 각각 7.6%, 9.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GSIM 모형에 의한 역내 농산물 교역 변화도 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GTAP 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출 증가는 중국 2억 5,000만 달러, ASEAN 6,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쌀 수입 증가는 한국 5,200만 달러, 일본 2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나 GTAP 모형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옥수수, 대두, 밀 등의 교역 증가는 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교역은 중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교역 증대가 예상되나 그 규모는 4,0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일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온대성 과일과 열대성 과일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3개국은 모두 동남아시아 시장에 온대성 과일을 수출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는 열대성 과일을 동북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의 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온대성 과일 가운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한국과 중국의 배, 중국의 사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SEAN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바나나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감귤의 경우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아시아 FTA로 중국의 과일류 수출은 사과와 배 각각 1,000만 달러, 포도 6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사과, 배 수출은 각각 100만 달러 증가하고 포도 수출은 1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ASEAN의 바나나 수출 증가는 600만 달러 수준이며, 파인애플 수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중국이 수출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양념채소 역내 수출 규모는 마늘 1억 5,000만 달러, 고추 7,000만 달러, 양파 4,300만 달러 수준이다. 동아시아 FTA로 중국의 마늘 수출은 2,4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1,500만 달러). 중국의 양파 수출도 2,4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54%가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이다.

육류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가축질병 문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거의 없다.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역내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역내에서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돼지고기에 있어서 일본 및 ASEAN 시장에

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닭고기의 경쟁력은 ASEAN이 중국보다 높다. 한국은 돼지고기를 일본과 ASEAN에 수출하고, 닭고기를 중국과 ASEAN으로부터 수입한다. 중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ASEAN에 수출하지만 닭고기는 ASEAN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한다. ASEAN은 닭고기를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돼지고기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교역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 FTA로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일본 및 ASEAN 시장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육류의 교역 변화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아시아 FTA에 의한 중국의 농산물 수출 증가는 50억 달러, 수입 증가는 15억 달러로 동아시아 FTA로 인한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ASEAN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8억 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쌀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에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를 기초로 한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역내 보상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역내에서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쌀, 사과와 배 등 일부 온대성 과일, 양념채소 등이 양자간 FTA에서 미개방 분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 협상에 있어서는 일부 민감품목만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대상으로 남게 될 일부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기타 품목은 실질적인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동아시아 FTA 협상 이전에 역내 교역 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산업 내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FTA 등 시장통합 협상 이전에 핵심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동식물검역, 통관절차, 규격, 표시, 표준 등을 조화시키고 정보 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적절한 기구를 역내에 설치함으로써 시장통합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FTA는 필연적으로 농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고 여기에 따른 유해 식품 및 유해 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이러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 유해 병해충 유입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식품안전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통의 표시, 규격, 인증 등 통관 및 유통 관련 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별 농업분야의 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요소의 부존 정도, 기술발전 정도, 농업의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부존자원 집약도가 다르고 품목별 특화에 있어서도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며,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 구조조정도 상호 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보다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역내 교역 활성화 잠재력과 필요성은 높다.

농업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의 보완 및 상호 이해와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기술 협력, 인적 교류, 유전자원 교류, 저장·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투자 등 단일시장을 향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다양한 분야의 농업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역내 국가들의 유용한 유전자원 교환 및 활용, 친환경 농업 관련 기술, 유통 및 가공 기술 등의 교류는 교역원활화와 경제통합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East Asia FTA and the Agricultural Sector

East Asian countries try to strengthen regional cooperation to cope with deepening and widening regional blocs in Europe and America. There are several forms of possible regional blocs such as free trade area(FTA), economic common market, common market, and union. Free trade area can be a basis for further economic or regional integration. In this study, the role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impacts of free trade area are discussed or evaluated. Trade patterns, competitiveness, tariff barriers and impacts of the FTA are analysed. The desirable role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e ways of enhancing agricultural cooperation for the progress of regional integration are proposed.

Results of simulation by GTAP show positive GDP growth for all of the member countries from The East Asian FTA. GDP growth is estimated to be 2.68% in Korea, 1.41% in Japan, 0.46% in China, 0.76% in ASEAN. Rice export is estimated to be increased by \$290 million in China and by \$180 million in ASEAN. Rice export destined to Korea and Japan. Therefor, rice production is expected to decrease by 7.6% in Korea and by 9.8% in Japan. Grain trade other than rice is estimated to show small changes, for example, China's corn export is projected to increase \$40 million.

Fruits trade is estimated to increase from the East Asian FTA. However increased trade volume would b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rice. China's export of apples and pears is estimated to increase by \$10 million and \$6 million respectively. Banana export by ASEAN is projected to \$6 million. Korea can increase fruit export by \$1 million for apples and pears respectively and by \$1.5 for grapes.

China becomes the biggest beneficiary in vegetable trade from the East Asian FTA. China's export of garlic and onions will increase by \$24

million respectively. More than half of China's export is expected to be imported by Korea. The change of meat trade from the East Asian FTA is estimated to be smaller than vegetables. ASEAN countries can increase chicken export to Japan and Korea. Korea and China are projected to increase chicken and pork export to ASEAN and Japan in small amount.

China's agricultural exports and imp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5 billion and \$3.5 billion from the East Asian FTA. ASEAN's agricultural trade surplus is estimated to be even bigger than China. However Korea and Japan can become looser of the FTA. Therefore there should be a mechanism of compensation for the FTA. Without compensation mechanism, member countries the agricultural sector may become an obstacle of the progress of regional integration.

There will be a few difficulties establishing the economic integration including agriculture. To avoid the worst possible role that agriculture might play in the negotiation, cooperative and positive role of agriculture is demanded, which includes reforming the domestic regulations based on the global level. Furthermore, various market openings that would impact on the East Asian agriculture will cause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changes adopting the new trade environment. When it comes to trade, various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useful information has to be shared within the East Asia as well as technical standard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existing quarantine procedure and customs, commodity standards, labeling, and other important things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volume and value of agricultural trade within the East Asia.

As the East Asia FTA promotes the agricultural trade volume within the East Asia as well as with the other countries, food safety would become more important issues. Thus, persuasive quarantine standard must be proposed to prevent from unnecessary social economic losses within the East Asian markets. Moreover, consistent economic cooperation and complementary trade relation should be maintained and developed as well.

For the means of compensation for the various market openings, it is necessary to launch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activities for rural areas and the agricultural industries within the East Asia. Furthermore, technical

cooperation, labor exchang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investment in marketing and processing sections must be considered to accomplish the ultimate objective of being a "Single Market".

Researchers: Choi, Sei-Kyun and Shin, You-Seon
E-mail address: skchoi@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동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현황

한 국	13
일 본	18
중 국	20
ASEAN	21
동아시아 FTA 대한 역내 국가별 입장	22

제3장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국가별 교역 개황	31
역내 교역	33
농산물 교역	38
품목별 교역	43

제4장 국가별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경쟁력 측정 방법	63
시장점유율	71

비교우위 지수 분석	84
가격경쟁력	96
종합적 경쟁력 평가	103

제5장 국가별 농산물 관세구조 분석

분석 대상국 및 방법	113
국가별 관세체계	114
국별 관세율 비교	149

제6장 동아시아 FTA 영향평가

GTAP을 이용한 정책실험	157
GSIM을 이용한 시장 개방 영향 분석	166

제7장 동아시아 FTA와 농업부문의 과제

사전적 협력 심화·확대	184
사후적 보완대책	190

제8장 요약 및 결론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195
동아시아 국별 농산물 경쟁력	196
동아시아 FTA의 영향	198
동아시아 FTA와 농업	199

부록 1. GSIM 모형에 의한 수입 수요와 수출 공급 탄성치	203
2. 국가별 주요 품목의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CAI) 지수	212
3. 국별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222
참고 문헌	261

표 차례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16
표 2. 동아시아 국가별 교역 규모	32
표 3. 동아시아 국가별 농산물 교역비중	32
표 4. 동아시아 역내 교역 규모	35
표 5. 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	37
표 6. 동아시아 국가별 역내 농산물 교역비중	41
표 7. 동아시아 국가별 역내 농산물 교역액	42
표 8.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 주요 농산물 교역	44
표 9.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 주요 농산물 교역	48
표 10.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주요 농산물 교역	53
표 11. ASEAN의 동아시아 역내 주요 농산물 교역	57
표 12. 한국 수입 곡물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72
표 13. 한국 수입 양념채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74
표 14. 한국 수입 육류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75
표 15. 중국 수입 양념채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76
표 16. 일본 수입 곡물류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78
표 17. 일본 수입 양념채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79
표 18. 일본 수입 과일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79
표 19. ASEAN 수입 곡물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81
표 20. ASEAN 수입 양념채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	82
표 21. ASEAN 수입 과일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83
표 22. ASEAN 수입 육류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84
표 23. 동아시아 국가의 곡물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86
표 24. 동아시아 국가의 양념채소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87
표 25. 동아시아 국가의 과일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88

표 26.	동아시아 국가의 육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89
표 27.	한국 주요 품목의 국별 비교우위(CAC) 지수	90
표 28.	중국 주요 품목의 국별 비교우위(CAC) 지수	92
표 29.	ASEAN 주요 품목의 국별 비교우위(CAC) 지수	94
표 30.	동아시아 국가별 곡물류 가격 비교	97
표 31.	동아시아 국가별 양념채소류 가격 비교	99
표 32.	동아시아 국가별 과일류 가격 비교	100
표 33.	동아시아 국가별 육류 가격 비교	102
표 34.	주요품목별 동아시아 국가의 경쟁력 비교	106
표 35.	한국의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수 및 평균 관세율	117
표 36.	한국의 선택세 품목 현황	119
표 37.	중국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22
표 38.	일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28
표 39.	일본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129
표 40.	브루나이의 종량세 품목 현황	131
표 41.	캄보디아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32
표 42.	인도네시아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34
표 43.	라오스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35
표 44.	말레이시아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37
표 45.	말레이시아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138
표 46.	미얀마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40
표 47.	필리핀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41
표 48.	싱가포르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43
표 49.	태국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45
표 50.	태국의 종량세 품목 현황	146
표 51.	베트남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48
표 52.	동아시아 국가별 양허관세 비교	150
표 53.	동아시아 국가별 관세율 단계별 분포	152
표 54.	동아시아 국가별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154

표 55.	동아시아 FTA로 인한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	160
표 56.	동아시아 FTA가 역내 국가별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162
표 57.	동아시아 FTA로 인한 한국의 농산물 교역 변화	163
표 58.	동아시아 FTA로 인한 중국의 농산물 교역 변화	164
표 59.	동아시아 FTA로 인한 일본의 농산물 교역 변화	165
표 60.	동아시아 FTA로 인한 ASEAN의 농산물 교역 변화	165
표 61.	관세 철폐 후 사과 교역액 변화	169
표 62.	관세 철폐 후 배 교역액 변화	170
표 63.	관세 철폐 후 포도 교역액 변화	171
표 64.	관세 철폐 후 파인애플 교역액 변화	171
표 65.	관세 철폐 후 바나나 교역액 변화	172
표 66.	관세 철폐 후 쌀 교역액 변화	173
표 67.	관세 철폐 후 옥수수 교역액 변화	173
표 68.	관세 철폐 후 밀 교역액 변화	174
표 69.	관세 철폐 후 대두 교역액 변화	175
표 70.	관세 철폐 후 마늘 교역액 변화	176
표 71.	관세 철폐 후 양파 교역액 변화	177
표 72.	관세 철폐 후 쇠고기 교역액 변화	178
표 73.	관세 철폐 후 돼지고기 교역액 변화	179
표 74.	관세 철폐 후 닭고기 교역액 변화	179

제 1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동유럽국가 통합을 통한 확산 및 결속력의 증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이후 남북미를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구상 등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럽과 미주의 양축이 보다 폐쇄적인 지역경제블록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류는 통합의 단계 또는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지역 통합의 목표를 공동체에 둔다면 FTA, 경제 공동체 등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창설은 EU와 NAFTA 확대에 비해 통합의 정도, 협상기간 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체결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역내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지도력이 발휘될 경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EU와 같은 수준 높은 통합에서부터 다자간 협의체 같은 낮은 수준의 지역 협력체로의 발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SEAN+3(ASEAN Plus Three: APT,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ASEAN지역포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통합 논의 기구로서의 역할은 미약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아시아 FTA 추진

4 서 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2006년 4월), ASEAN+3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동아시아 FTA를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는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된 논의는 일본이 선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 구상 등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행사하고자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시도하였으며, 최근에는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와세다 대학 히라노 겐이치로 교수는 연구자 120명 규모의 동아시아 공동체 프로젝트를 지난 5년간 진행해 오고 있다¹.

중국과 미국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소강사회(중등 생활수준 영위) 건설과 동시에 대동아시아의 꿈을 실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존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종합·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 FTA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농업부문에 대한 분석과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이 제휴할 경우 우리나라는 주변국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FTA 등 경제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농업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부문은 대표적인 취약산업으로 분류되며 양국은 모두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반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제조업 분야의 취약점을 농업부문에서 일부 보완하고자 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깊은 관심을 나타낼 가능성이

¹ 조선일보, 2008년 2월 11일

크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는 FTA 협상에 대비하여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및 국가별, 품목별 경쟁력, 교역장벽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국가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초기 단계인 FTA 체결을 위한 농업부문의 과제와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EU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지역 협력체로 낮은 단계의 통합에서 시작하여 높은 단계로 진행된 경우이다. 반면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을 지향하였던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아직도 FTA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EFTA 회원국에서 EU 회원국으로 진로를 수정한 경우이다. 이 연구는 FTA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궁극적 목표를 공동체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에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제로 1차년도(2007년)에는 ① 동아시아 FTA 추진 동향과 전망, ② 시장통합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문제, ③ 동아시아 국가별 농업현황, ④ 경쟁력 분석, ⑤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차년도(2008년) 연구는 국가별 FTA 추진 현황과 동아시아 FTA에 대한 입장, 역내 농산물 교역 및 경쟁력 분석, 관세장벽, 동아시아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교역 흐름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강화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역할 또는 과제(지역통합 대비 교역 원활화, 식품안전, 환경 및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농업협력 기금 조성 등)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과 실현 가능성, 실효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13개국(ASEAN+3)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계량모형 분석, 현지조사, 전문가와의 연구협의회 등이다. 교역 유형 및 경쟁력 분석은 주로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동아시아 FTA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은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모형)과 계량경제모형의 하나인 Global Simulation Model(GSI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GE 모형은 경제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내생변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CGE 모형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Purdue 대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하였다. 부문별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계량분석은 각국의 품목별 수요와 공급 곡선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초과 공급(수출 공급)과 초과 수요(수입 수요)를 도출하여 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무역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밖에 자료 수집 및 농업 현황 파악이 어려운 국가들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자료를 보완하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동아시아 FTA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두드러지며 산업적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FTA 또는 지역협력체 등 진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부문별 논의보다 진로 탐색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동아시아 FTA 관련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동아시아 FTA 형성을 경제, 정치, 외교적인 측면

에서 접근 또는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과 분석은 중력모형, CGE 모형 등을 적용하여 거시경제 측면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는 동아시아 FTA 형성의 당위성, 동아시아 역내 국가는 물론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 각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접근 전략, FTA로 인한 역내 거시경제 측면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개별 산업의 영향 및 역할 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 가능성, 과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김세원 외(2006), 다니구치 마코토(2007, 김종걸, 김문정 옮김), 최영종 외(2005), 김태현(2007) 등이 있다. 김세원 외(2006)는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큰 지역에서는 경쟁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충격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실현되기 위한 성공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시장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경제협력기구와 같은 다자적 협력체 구성, 회원국 간 신뢰제고 방안, 개발은행 및 다양한 구조조정기금의 설립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절차로써 우선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 내에서 동북아 3국이 FTA를 체결한 이후 동북아 FTA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사이에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니구치 마코토(2007)는 환경, 에너지, 농업, 통화 및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협조적 분업체계의 확립 필요성 및 가능성, 공적원조의 활용방안, 동아시아 시장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개발사업 협력(역내 개발 수입 촉진, 종자와 환경 관련 농업기술 및 투자 등), 동북아 3국의 국제 농산물 수입시장에서의 역할(경쟁 회피),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국제 시장개방 협상 대응(EU의 예)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최영종 외(2005)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배경 및 발전 과정, 경제 공동체, 통화 협력, 안보 공동체, 문화 공동체, 비전과 한국의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경제협력 부문은 미약하며 농업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태현(2007)은 동아

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 및 발전 과정, 제약요인 및 주변국의 정책 등을 분석하여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전망을 도출하였다.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또는 FTA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및 FTA 추진 전략 등과 관련된 연구로는 Cheong(2002), Suthiphand(2004), 권을 외(2005, 2004), 장기선 외(2004), Lee 외(2002), Kim(2002), 김영한(2004), 박인원(2001) 등이 있다. 방법론으로는 일반균형 모형과 중력모형이 이용된 경우가 많다.

Cheong(2002)은 한·중·일 3국이 ASEAN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경우와 동아시아 FTA 체결이 동아시아 국가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ASEAN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FTA 혹은 한·중·일 FTA보다는 동아시아 전체의 단일 FTA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FTA 형성 과정의 핵심은 한·중·일 FTA 체결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Suthiphand(2004)는 CGE를 이용한 동아시아 FTA의 거시경제 효과에서 실질 GDP 증가는 ASEAN,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권을 외(2005)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ASEAN+3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FTA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한국의 GDP 증가는 중국, 일본, ASEAN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계측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FTA는 ASEAN+1 차원의 쌍무적 FTA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영한(2004)은 불완전경쟁시장에 근거한 CGE 모형을 통해서 동아시아 FTA 거시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경우 한·일 FTA를 필두로 한 순차적 FTA 협상전략과 한·일·동남아로 구성된 광역FTA 협상전략이 실현가능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일 FTA를 필두로 한 순차적 FTA 체결이 이뤄질 경우 한국 산업구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가능한 한 동남아를 포함한 광역 FTA의 형태로 FTA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인원(2001)은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국가간 FTA 형성의 경제적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CGE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FTA 형성으로 노동집

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이 보다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며,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등의 경우 그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진국 간 또는 후진국 간의 FTA는 그 효과가 미미한 반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 FTA 형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을, 중국과 ASEAN은 한국보다 일본을 협력파트너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 장기선 외(2004), Lee 외(2002) 등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 전략을 분석하였다. 장기선 외(2004)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FTA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FTA 실현 가능성은 한·일과 AFTA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아시아 FTA, 한·중·일, ASEAN·중국, 일본·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양자간 FTA 보다는 다자간 FTA의 실현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역의존도가 낮은 경우 오히려 FTA가 쉽게 체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외(2002)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내 다양한 국가 그룹 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중·일 3국이 무역블록을 형성하기는 어려운 반면, ASEAN+3이 동아시아의 무역블록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과 ASEAN은 무역에 있어 특별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동아시아 FTA에 대한 정책적 선택으로 ASEAN+3을 제안하였다. Kim(2002)은 ASEAN+3의 무역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ASEAN+3 국가 간 무역집중도가 증가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중력모형에 따른 수준 이상으로 무역집중도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블록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역내 교역량 증대 효과가 한·ASEAN, 중·ASEAN, 일·ASEAN FTA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주로 일반 거시경제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13개국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경우 농업부문의 영향, 과제, 대안 등을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산업적 측면의 접근이 소홀히 된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 FTA의 영향과 농업부문의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동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현황

한 국

■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FTA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에 겪은 외환위기 이후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FTA 확산에 대한 대응,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확대,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한국은 2002년 칠레와의 FTA 타결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미국과의 FTA를 타결하는 등 단기간 내에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협상은 2005년 2월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8년 7월까지 23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상품분야 협상은 2006년 4월에 개최된 11차 협상에서 타결되어 같은 해 8월에 개최된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한-ASEAN FTA 상품분야는 2007년 6월 발효되었다. ASEAN과의 FTA는 2007년 6월 1일부터 국내 절차를 완료한 ASEAN 5개국과 우선적으로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필리핀과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은 2006년 2월부터 개시되어 상품협정 협상과 함께(11차 협상 제외) 진행되었고, 서비스협정은 2007년 11월 21일 서명이 이루어졌다. 투자협상은 2008년에도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은 2004년 1월에 개시되어 11월에 타결되었다. 2005년 8월에 공식적인 서명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이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인도와의 FTA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와의 FTA는 2005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종료한 후 2006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열

두 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다. 12차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분야는 실질적인 타결을 본 상태이다. 양국은 모두 농업분야를 민감부문으로 인식하고 협상에 임했다.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2009년 중에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과의 FTA에 대한 연구는 2005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of P. R. China: DRC)이 민간연구기관 차원에서 먼저 수행하였다. 민간공동연구 이후 2007년 3월에 산·관·학 공동연구를 출범시켜 2008년 6월까지 다섯 차례 개최되었다. 공동연구는 2008년 하반기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와 일본 농수산 분야의 소극적인 태도로 쉽게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기타 국가와의 FTA

여기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추진 현황을 논의하는 목적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역내 국가들이 전개하고 있는 양자 간 협정을 살펴봄으로써 역내 다자간 FTA 실현 가능성, 동아시아 FTA에 대한 국가별 입장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FTA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지역 이외의 국가와의 FTA에 대하여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FTA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칠레로 1999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10월에 타결하였다. 2003년 2월에 서명된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발효되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시작되어 2005년 7월에 타결되었다.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열린 여덟 차례의 협상, 그리고 8차 협상 이후에 이루어진 고위급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2일에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 선언 이후 추가협상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6월 말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양국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EU는 우리나라가 FTA 체결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대경제권 국가의 하나이다. EU와의 FTA는 2006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예비협약, 2006년 11월에 개최된 공청회, 2007년 5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5월에 협상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에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2008년 5월까지 일곱 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양국은 2009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2005년 7월에 시작되어 2008년 6월까지 모두 열네 차례 개최되었다. 캐나다는 한-미 FTA 협상 내용을 한-캐나다 FTA에 반영시켜 자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합의 품목은 대부분 한국이 민감하게 취급하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등)와 곡물(보리, 대두 등)이다. 캐나다와의 FTA는 2008년 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캐나다와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한-미 FTA 타결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와의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체결을 위한 협상은 2006년 2월에 시작되어 6월까지 세 차례 개최되었다. 협상은 양측 간 이견이 커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협상을 계기로 멕시코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재개되었다. 양국은 2007년 8월 SECA 협상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포괄하는 FTA으로 격상시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제1차 한-멕시코 FTA 협상이 개최되었고, 2008년 6월 2차 협상이 열렸다. 과거 SECA 협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정부조달, 전자상

거래 분야가 새로이 신설되는 등 포괄범위가 넓어졌다.

그밖에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는 2006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하여 2007년 내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후 2008년 초에 공동연구를 종료한 상태이다. 2009년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공식협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걸프협력회의 6개국(Gulf Cooperation Council: GCC)²과의 FTA는 2008년 1월 한-GCC FTA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협상이 개시되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³과는 2006년 말 종료된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8년 중 양국 간 협상 개시방안을 검토한 후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페루와의 FTA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 2009년부터 공식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구분	상대국	협상일정	발효시기 및 기타사항
협상 타결	칠레	· 1999. 12. 협상 개시 · 2002. 10. 협상 타결 · 2003. 2. 서명	· 2004. 4.
	싱가포르	· 2004. 1. 협상 개시 · 2004. 11. 협상 타결 · 2005. 8. 서명	· 2006. 3.
	EFTA ^{주)}	· 2005. 1. 협상 개시 · 2005. 7. 협상 타결 · 2005. 12. 서명	· 2006. 7.
	ASEAN	· 2005. 2. 협상 개시 · 2006. 4. 협상 타결(상품) · 2006. 8. 서명 · 2007. 11. 서비스 서명 · 2008. 11. 상품협정 캄보디아 발효	· 2007. 6.(상품분야) · 투자분야 협상 진행 중
	미국	· 2006. 6. 협상 개시 · 2007. 4. 협상 타결 · 2007. 6. 서명	· 비준절차 진행 중

²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6개국임.

³ 정식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임.

(표 1 계속)

구분	상대국	협상일정	발효시기 및 기타사항
협상 타결	칠레	• 1999. 12. 협상 개시 • 2002. 10. 협상 타결 • 2003. 2. 서명	• 2004. 4.
	싱가포르	• 2004. 1. 협상 개시 • 2004. 11. 협상 타결 • 2005. 8. 서명	• 2006. 3.
	EFTA ^{주)}	• 2005. 1. 협상 개시 • 2005. 7. 협상 타결 • 2005. 12. 서명	• 2006. 7.
	ASEAN	• 2005. 2. 협상 개시 • 2006. 4. 협상 타결(상품) • 2006. 8. 서명 • 2007. 11. 서비스 서명 • 2008. 11. 상품협정 캄보디아 발효	• 2007. 6.(상품분야) • 투자분야 협상 진행 중
	미국	• 2006. 6. 협상 개시 • 2007. 4. 협상 타결 • 2007. 6. 서명	• 비준절차 진행 중
협상 진행	캐나다	• 2005. 7. 협상 개시 • 2008. 6. 14차 협상	• 협상 마무리 단계
	멕시코	• 2006. 2. 협상 개시(SECA) • 2006. 6. 3차 협상(SECA) • 2007. 12. 1차 FTA 협상 • 2008. 6. 2차 협상 (서비스 투자)	• SECA로 시작하여 FTA로 격상
	인도	• 2006. 3. 협상 개시 • 2008. 9. 12차 협상	
	EU	• 2007. 5. 협상 개시 • 2008. 5. 7차 협상	• 8차 협상에서 종료 합의
	일본	• 2003. 12. 협상 개시 • 2004. 11. 6차 협상 • 2008. 6. 협상재개검토	• 시장개방폭 문제로 교착 상태
	GCC	• 2008. 7. 협상 개시	

18 동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현황

(표 1 계속)

구분	상대국	협상일정	발효시기 및 기타사항
추진 중 또는 검토 중	호주/ 뉴질랜드	· 2007. 12. 민간 공동연구 완료 · 2008. 9. 한-뉴질랜드 FTA 1차 예비협약	· 호주/뉴질랜드 적극적
	중국	· 2007. 3. 공동연구시작 · 2008. 6. 공동연구 5차회의	· 농업문제 등 고려 단계적 추진
	MERCOSUR	· 2006. 12. 공동연구 완료 · 2007. 10.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 우리나라 농업부문과 브라질의 제조업부문 민감성 조율 어려움
	러시아	· 2005. 11. 공동전문가 그룹 창설 합의 · 2007. 10. 제1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 2008. 7. 제 2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터키	· 2008. 6. FTA 공동연구 개시	
	페루	· 2006. 11. FTA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 2007. 10. FTA 제1차 공동연구회의 · 2008. 4. FTA 제2차 공동연구회의 · 2008. 5. 민간공동연구 종료 · 2008. 10. 한-페루 FTA 공청회 개최	

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 본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2002년 1월에 타결하고 2002년 11월부터 이행에 들어갔다. 일본-싱가포르 FTA는 2007년 9월부터 발효되었다. 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2월에 개시되었다. 2005년 8월에 FTA 협상은 타결되었으나 2006년 9월 태국의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FTA

체결은 지연되었다. 협정은 2007년 4월에 일본-태국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형태로 서명이 이루어져 2007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말레이시아와의 FTA는 2003년 ASEAN-일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 체결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04년 1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5월에 타결되었다. 협정은 2005년 12월에 서명이 이루어져 2006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필리핀과의 FTA는 2003년 ASEAN-일본 정상회담에서 추진에 합의하여 2004년 2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4년 10월까지 다섯 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11월에 ASEAN+3 회담에서 양국 정상 이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였다.

일-인도네시아 EPA 협상은 2005년 7월에 시작된 이후 2006년 10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 진행되었다. 2006년 11월에 경제동반자협정(IJEPA)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2007년 8월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일본 EPA에 공식 서명하였다.

일-브루나이 FTA는 2006년 6월 제1차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06년 12월에 타결되었다. 양국 정상은 2007년 6월 일본-브루나이 경제동반자협정(JBEPA)에 서명하였다.

일본과 ASEAN은 2002년 11월 일-ASEAN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방안(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Plan: CEP)에 서명한 이후 2003년 10월에 2005년부터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일-ASEAN FTA를 골자로 하는 EPA 협상 일정이 확정되었다. 1차 협상이 2005년 4월에 개시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FTA를 타결하고 2008년 5월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한국과의 FTA는 2003년 12월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2개월 주기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4년 11월까지 여섯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시장개방 폭을 놓고 양국 간의 견해 차이가 커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상품양허 부문에서 일본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농수산물 양허안을 제시한 것이 협상 중단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동아시아 역외 국가들 가운데 일본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멕시코, 칠

레 등이 있다. 그밖에 일본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GCC, 호주, 스위스, 캐나다, 페루, 노르웨이 등이다.

중 국

중국은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개방과 개혁 정책을 지속한다는 취지 아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높여감에 따라 전통적인 대중국 무역적자국인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통상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 전략과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일 FTA, 일본의 동남아 중시정책 등에 대응하여 ASEAN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02년 11월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중국은 ASEAN 6개 선발국과는 2010년까지, 후발 4개국과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중-ASEAN FTA 협상은 2004년 10월 상품분야가 타결되어 2005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서비스협정은 2007년 1월에 서명되었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2006년 11월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2007년 초부터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6월까지 다섯 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2004년 11월 상품 및 서비스, 투자에 관한 포괄적인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고, 2006년 10월 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 협상은 향후 ASEAN과의 FTA 체결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개별국간 협상으로 볼 수 있다. 협상은 2007년 말까지 네 차례 개최되었으며, 2008년 중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중국이 FTA를 체결한 동아시아 역외 국가는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등이 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는 GCC, 호주, EU, 아이슬란드, 페루, 한국, MERCOSUR, 코스타리카, 스위스 등이다.

ASEAN

ASEAN은 역내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와 아시아 지역 내의 지역경제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의 FTA를 가장 먼저 타결하였다(2004년 10월). 한국과는 2006년 8월에 상품협정을 타결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서비스무역협상을 타결하였다. 일본과는 2007년 11월에 EPA를 타결하였고, 인도 및 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중이거나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대만, EU 등이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주의에 적극 가세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하였다. 싱가포르가 2000년 이후 체결한 FTA는 12건이다. 싱가포르는 일본, 한국,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동아시아 역외 국가 가운데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EFTA, 요르단, 파나마, 페루, GCC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페루와의 FTA는 2007년 9월, GCC와의 협상은 협상 개시 1년만인 2008년 1월에 타결하였다. 중국,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과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집트, EU 등과는 협상을 검토 중이다.

태국은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2006년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FTA 협상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협상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며, 인도, 페루, EFTA, 미국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밖에 중국, 파키스탄, 칠레 등과의 FTA를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으며, 시리아와의 FTA를 검토 중이다.

동아시아 FTA 대한 역내 국가별 입장

동아시아 역내에 단일의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 동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를 늦출 수 없는 미국, 잠재적 패권국 견제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립해온 ASEAN,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의 중재자로서 FTA 중심축 역할에 관심이 있는 한국 등의 존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가능성을 내포하게 한다.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에서도 회원국의 범위, EAS와 ASEAN+3(APT)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와의 관계설정 문제, EAS의 주도권(동남아 또는 동북아, 특정 국가 등)을 놓고 동아시아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표출되었다.

■ 한국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 또는 동아시아 FTA(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EAFTA) 등 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제안은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n Vision Group: EAVG)이나 동아시아 연구그룹(East Asian Study Group: EASG) 등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지역경제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발상은 한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은 역내 다양한 측면에서의 위상 때문에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 일본, ASEAN 등에 뒤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주체가 APT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EAC 실현 가능성, 동아시아 정체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AS 회원국 확대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고 일본과 일부 ASEAN 국가들이 찬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EAS 참여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견지했다(진시원 2006). 이러한 문제는 EAFTA나 EAC 회원국과도 연계될 것이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찬반 및 중립 등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다(현재 우리나라는 회원국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한·미 FTA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고려 여부 및 정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ASEAN

ASEAN은 APT 등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EAS와 EAFTA, EAC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ASEAN 국가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제를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APT의 심화, 확대 과정에서 ASEAN의 주도력과 정체성의 훼손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ASEAN은 동북아 국가들의 역내 지역통합 논의에서의 지위 향상에 따른 ASEAN의 상대적 지도력 저하,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하여 EAS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EAS 추진으로 EAS 조기 등장을 막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EAS 참여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EAC 또는 EAFTA 건설에 대한 ASEAN의 기본 입장은 ASEAN+1 방식이고, 현재는 ASEAN+3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ASEAN+6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ASEAN+1, ASEAN+3, ASEAN+6 등 어느 방식이든 ASEAN이 동아시아 FTA의 중심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ASEAN은 이러한 과정에서 강제적인 시장개방을 지양하며, 국가 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의 농업부문 개방에서 민감품목이 될 쌀에 대해서 그러하다⁴.

EAC 또는 EAFTA 건설에 있어서 동북아 국가들의 주도권 행사 문제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다. ASEAN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AFTA 체제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ASEAN을 위해 ASEAN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제1차 EAS에서 EAC 건설에 ASEAN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ASEAN+3는 EAC 건설에 중심 부분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ASEAN+1 형태의 FTA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ASEAN은 중국, 한국, 일본과 이미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ASEAN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미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ASEAN-미국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ASEAN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FTA 중심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동북아 국가들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EAC나 EAFTA 회원국을 ASEAN+3로 한정시키기보다는 ASEAN+6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ASEAN은 2003년 ASEAN+3에 인도를 초청하고, 2004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초청한 바 있다. ASEAN은 역내 패권경쟁 국가들에 대한 견제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협력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지역 패권경쟁 때문에 ASEAN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중소국가 연합인 ASEAN이 계속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ASEAN은 회원국 사이에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이견이 있고,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도 없다. ASEAN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동아시아 강대국(중국, 일본, 인도 등)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⁴ ASEAN사무국 Anna M. Robeniol과 Somask Pippopinyo(2008년 10월 27~28일)

■ 중국

중국은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또는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중국은 동북아 FTA (North East Asia FTA: NEAFTA)보다는 ASEAN과의 FTA(China ASEAN FTA: CAFTA)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였다. CAFTA 체결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FTA는 ASEAN+1 형태의 FTA 활성화의 촉매로 작용하였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호주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인도, 한국과의 FTA를 위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국이 확대된 EAS나 EAFTA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ASEAN+3를 EAC의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 지역주의를 선호하였으나 EAS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EAC나 EAFTA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중국은 CAFTA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확대를 통한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 인식은 전후 미국에 의존하는 입장이 반영된 아시아-태평양 개념에 근거한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침략에서 오는 제약과 미국에 의존한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제약의 반영이기도 하다. 일본이 아시아 중심의 지역주의를 내세우게 된 것은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기석 2007). 아시아-태평양 개념의 APEC에 대한 회의, 아시아 외환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미국 등 국제사회

의 태도, EU, NAFTA 등 심화되는 지역주의 경향 등이 일본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주도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 입장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APT보다는 APT+3 등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2006년에 ‘동아시아 경제연계협정(East As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APEA)’ 추진을 발표하였다. 일본이 추구하는 EP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인적교류 등을 포괄하는 일본 주도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EAPEA 회원국으로 일본은 APT+3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동아시아 EAFTA 논의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EAPEA에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간 EPA가 EAPEA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점에서도 양자간 EP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AFTA를 계기로 일본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자국의 역내 영향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EP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의 FTA 정책은 ASEAN에 대한 영향력 유지 등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동남아에서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EAS 주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의 EAS 가입에도 찬성하고 있다.

일본 내에는 동아시아공동체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FTA와 같은 기능적 협력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 공통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우세하다(김기석 2007). 추진 주체와 관련하여 일본은 APT보다는 EAS가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시사점

동아시아에는 세계화 경향에 반하는 폐쇄적인 국수주의가 지역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인적, 문화적 잠재력과 자연자원의 등 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동북아 3국에 존재하는 역사문제와 국민감정의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주의 경향도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간에 제도와 규범의 조화와 투명성이 강조되는 다자적인 국제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장기적인 비전은 지역공동체 수립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를 국제화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이 야기할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적 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ASEAN의 양적, 질적 팽창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도 필요하다. ASEAN은 AFTA 결성을 통해 APEC, ASEM 등 주요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 등 역내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반면 동북아 국가들은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의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역내에는 양자협상(FTA 등), 소지역적 협상(ASEAN 및 ASEAN과의 양자협상 등), 다자협력(APEC, EAS 등) 등 다양한 지역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NEAFTA가 중심이 되어 EAFTA를 주도하기보다는 ASEAN+1 체제를 통한 ASEAN 중심의 EAFTA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NEAFTA 성사 여부에 따라 EAFTA 주도권은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NEAFTA에 대하여는 한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중국은 NEAFTA 타당성 검토를 가장 먼저 제안하였으나 ASEAN과의 지역협력

강화로 적극성이 감소하였다. 일본은 중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NEAFTA를 성사시켜 AFTA와 결합하는 형태의 EAC 또는 EA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식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NEAFTA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이라는 제약이 따르며, 여기에 우리나라의 중재자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 경쟁에 나서 지역통합의 또 다른 중심을 지향하기보다 한·미 FTA를 계기로 주변국들의 FTA 중심축 역할을 통해 EAFTA 실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ASEAN+1을 비롯하여 ASEAN이 동북아공동체 형성 논의의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이후 한·중 및 한·일 FTA 등 동북아 국가 사이의 양자간 FTA와 이를 활용한 동북아 FTA(NEAFTA)를 형성하고, 이후에 AFTA와 결합하여 EAFTA를 완성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중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ASEAN+1 체제를 바탕으로 한 EAFTA 방식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방식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가 발전되어 나갈지 판단하기 어렵고 동아시아공동체 등 경제통합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며 양자간 FTA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양자간 FTA 추진 실적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주도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장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국가별 교역 개황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2005년 기준 수출 7,620억 달러, 수입 6,600억 달러 수준이다. 일본의 교역 규모는 수출 5,969억 달러, 수입 5,177억 달러로 중국의 78% 수준이다. 일본의 교역 규모는 2000년에는 중국의 1.8배에 달했다. ASEAN의 교역 규모는 수출 6,506억 달러, 수입 5,932억 달러로 일본보다 크다. 한국은 수출 2,029억 달러, 수입 1,864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00~05년 기간에 교역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다. 이 기간에 중국의 수출은 3배, 수입은 2.9배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의 수출은 24%, 수입은 36% 증가에 그쳐 역내 국가들 가운데 교역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ASEAN과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50%와 65%로 한국이 높았고 수입 증가율은 모두 63%를 기록하였다.

2000~05년 기간의 연평균 무역수지는 한국 170억 달러, 중국 400억 달러, 일본 850억 달러, ASEAN 550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역내 국가들이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무역수지 흑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 지향적 수출 증대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전체 교역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0.4%, 한국 1.1%, 중국 4.1%, ASEAN 5.8%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농산물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ASEAN의 경우 농산물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 비중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표 2. 동아시아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국가	구분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전체 상품	수출액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2,029
		수입액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1,864
	농산물	수출액	19	19	20	22	24	25	21
		수입액	69	69	78	85	95	101	83
중국	전체 상품	수출액	2,492	2,661	3,256	4,382	5,933	7,620	4,391
		수입액	2,251	2,436	2,952	4,128	5,612	6,601	3,997
	농산물	수출액	126	129	145	173	184	221	163
		수입액	82	84	88	137	194	193	130
일본	전체 상품	수출액	4,793	4,030	4,163	4,713	5,658	5,969	4,888
		수입액	3,799	3,490	3,374	3,833	4,553	5,177	4,037
	농산물	수출액	17	28	20	19	20	22	21
		수입액	353	383	385	386	406	424	390
ASEAN	전체 상품	수출액	4,280	3,849	4,054	4,579	5,433	6,506	4,783
		수입액	3,634	3,382	3,538	3,997	4,913	5,932	4,233
	농산물	수출액	214	209	246	287	329	372	276
		수입액	156	159	168	177	208	240	185

자료: FAOSTAT(<http://faostat.fao.org>)

표 3. 동아시아 국가별 농산물 교역비중

단위: %

구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총수출 대비 농산물 수출비중	한국	1.09	1.27	1.20	1.11	0.94	0.89	1.08
	중국	5.05	4.84	4.46	3.95	3.10	2.90	4.05
	일본	0.35	0.70	0.48	0.40	0.35	0.36	0.44
	ASEAN	4.99	5.43	6.08	6.26	6.06	5.72	5.76
총수입 대비 농산물 수입비중	한국	4.30	4.89	5.12	4.76	4.21	3.85	4.52
	중국	3.65	3.46	2.97	3.31	3.46	2.92	3.30
	일본	9.30	10.98	11.42	10.06	8.91	8.19	9.81
	ASEAN	4.30	4.72	4.75	4.42	4.24	4.04	4.41

자료: FAOSTAT(<http://faostat.fao.org>)

국가 전체 수입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와 다르게 일본, 한국 등 경제 발전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수입에서 농산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000~05년 평균 9.8% 수준이다. 전체 수입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4.5%, ASEAN 4.4%, 중국 3.3% 등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수입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적자와 흑자 국가로 양분된다.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국은 한국과 일본, 흑자국은 중국과 ASEAN이다. 2000~05년 한국과 일본의 연평균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각각 60억 달러와 370억 달러이다. 이 기간에 중국과 ASEAN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각각 33억 달러와 91억 달러이다. 따라서 역내 전체 농산물 무역수지는 약 300억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ASEAN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국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역내 교역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역내 교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2005년 수입의 40%, 수출의 43%가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이다. 2000~05년 평균으로 볼 때 한국의 역내 수출 비중은 36.4%, 수입 비중은 41.8%이다. 한국의 역내 교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수출의 경우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경우 대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일본 교역 의존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ASEAN에 대한 교역비중은 수출과 수입 각각 10% 수준으로 미미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역내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2005년 기준 역내 수출 비중은 36.5%, 수입 비중은 38.3%이다. 역내에서 일본의 교역 의존

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2000~05년 평균 수출 13.6%, 수입 18.4%이며, 대중국 교역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ASEAN에 대한 교역 비중이 높다. 일본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수출 비중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역내 교역 의존도는 2000~05년 평균 수출 26%, 수입 38.5%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역내 수입 의존도가 수출보다 높기 때문에 2000~05년 기간에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다른 나라의 경우 5% 포인트 이내의 차이를 보임). 중국의 역내 국가별 교역 비중이 높은 순위는 일본, ASEAN, 한국이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으로 4.6%이며, 대한국 수입 비중 11.6%에 비하면 7%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000~05년 기간에 연평균 200억 달러를 넘는다.

ASEAN의 역내 교역 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수출 25%, 수입 27%이다. ASEAN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낮은 것이 역내 교역 의존도를 낮추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ASEAN의 대한국 교역 의존도는 수출입 모두 4~5%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SEAN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증가하는 반면 대일본 수입 의존도는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과 수입 모두 역내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ASEAN은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수입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 비중은 38~39%로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역내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2000년 34.3%와 39.1%에서 2005년 39.9%와 43.3%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은 2000년 28.2%에서 2005년 22.9%로 낮아졌다. 이 기간에 일본은 역내 수출 비중을 28.3%에서 36.5%로 8% 포인트 높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2005년 기준으로 역내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수출 1,747억 달러, 수입 2,524억 달러이고, 다음이 일본으로 수출 2,181억 달러, 수입 1,984억 달러이다. 역내 수출은 일본이 중국보다 많고 수입은 중국이 많다. 따라서 일본은 역내 교역에서 2000~05년 기간에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중국은 4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수출입이 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ASEAN의 역내 교역은 2000년 6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2005년 143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역내 교역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2000~05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수출 29.8%, 수입 38.1%이다. 중국의 역내 교역 규모는 2000년에 일본, ASEAN 다음이었으나 2005년에는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다음으로 교역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수출 18.4%, 수입 16%이다. ASEAN은 수입 증가율은 역내에서 가장 낮았으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일본보다 높은 15.5%를 기록하여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ASEAN의 역내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60억 달러 수준이다.

표 4. 동아시아 역내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시장	국가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ASEAN	수출액	201	165	184	203	240	274	211
		수입액	182	159	168	185	224	261	196
	일본	수출액	205	165	151	173	217	240	192
		수입액	318	266	299	363	461	484	365
	중국	수출액	185	182	238	351	498	619	345
		수입액	128	133	174	219	296	386	223
	역내총 교역액	수출액	591	512	573	726	955	1,134	748
		수입액	628	559	640	767	981	1,131	784
중국	ASEAN	수출액	173	186	236	309	429	555	315
		수입액	222	232	312	474	630	750	437
	한국	수출액	113	125	155	201	278	351	204
		수입액	232	234	286	432	622	769	429
	일본	수출액	416	451	485	595	735	841	587
		수입액	415	428	535	742	942	1,005	678
	역내총 교역액	수출액	702	762	876	1,105	1,442	1,747	1,106
		수입액	869	894	1,133	1,647	2,193	2,524	1,543

36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표 4 계속)

시장	국가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본	ASEAN	수출액	624	555	584	590	658	692	617
		수입액	566	583	573	602	646	707	613
	한국	수출액	318	266	299	363	461	484	365
		수입액	192	182	169	180	208	235	194
	중국	수출액	415	428	535	742	942	1,005	678
		수입액	517	612	673	760	888	1,042	749
	역내총 교역액	수출액	1,358	1,250	1,417	1,695	2,061	2,181	1,660
		수입액	1,276	1,377	1,415	1,542	1,742	1,984	1,556
A S E A N	한국	수출액	182	159	168	185	224	261	196
		수입액	201	165	184	203	240	274	211
	중국	수출액	222	232	312	474	630	750	437
		수입액	173	186	236	309	429	555	315
	일본	수출액	535	548	536	559	599	654	572
		수입액	624	555	584	590	658	692	617
	역내총 교역액	수출액	938	939	1,015	1,217	1,452	1,664	1,204
		수입액	999	906	1,004	1,102	1,327	1,521	1,143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표 5. 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

단위: %

시장	국가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ASEAN	수출액	11.7	10.9	11.3	10.4	9.5	9.6	10.6
		수입액	11.3	11.3	11.0	10.3	10.0	10.0	10.6
	일본	수출액	11.9	11.0	9.3	8.9	8.5	8.4	9.7
		수입액	19.8	18.9	19.6	20.3	20.6	18.5	19.6
	중국	수출액	10.7	12.1	14.6	18.1	19.6	21.8	16.2
		수입액	8.0	9.4	11.4	12.3	13.2	14.8	11.5
	역내총 교역액	수출액	34.3	34.0	35.3	37.5	37.6	39.9	36.4
		수입액	39.1	39.6	42.1	42.9	43.7	43.3	41.8
중국	ASEAN	수출액	7.0	7.0	7.2	7.1	7.2	7.3	7.1
		수입액	9.9	9.5	10.6	11.5	11.2	11.4	10.7
	한국	수출액	4.5	4.7	4.8	4.6	4.7	4.6	4.6
		수입액	10.3	9.6	9.7	10.5	11.1	11.6	10.5
	일본	수출액	16.7	16.9	14.9	13.6	12.4	11.0	14.3
		수입액	18.4	17.6	18.1	18.0	16.8	15.2	17.4
	역내총 교역액	수출액	28.2	28.6	26.9	25.2	24.3	22.9	26.0
		수입액	38.6	36.7	38.4	39.9	39.1	38.2	38.5
일본	ASEAN	수출액	13.0	13.8	14.0	12.5	11.6	11.6	12.8
		수입액	14.9	16.7	17.0	15.7	14.2	13.7	15.4
	한국	수출액	6.6	6.6	7.2	7.7	8.2	8.1	7.4
		수입액	5.1	5.2	5.0	4.7	4.6	4.5	4.8
	중국	수출액	8.7	10.6	12.8	15.7	16.6	16.8	13.6
		수입액	13.6	17.5	20.0	19.8	19.5	20.1	18.4
	역내총 교역액	수출액	28.3	31.0	34.0	36.0	36.4	36.5	33.7
		수입액	33.6	39.5	41.9	40.2	38.3	38.3	38.6
ASEAN	한국	수출액	4.2	4.1	4.1	4.0	4.1	4.0	4.1
		수입액	5.5	4.9	5.2	5.1	4.9	4.6	5.0
	중국	수출액	5.2	6.0	7.7	10.3	11.6	11.5	8.7
		수입액	4.8	5.5	6.7	7.7	8.7	9.3	7.1
	일본	수출액	12.5	14.2	13.2	12.2	11.0	10.0	12.2
		수입액	17.2	16.4	16.5	14.8	13.4	11.7	15.0
	역내총 교역액	수출액	21.9	24.4	25.0	26.6	26.7	25.6	25.0
		수입액	27.5	26.8	28.4	27.6	27.0	25.6	27.1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농산물 교역

2005년 기준 ASEAN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612억 달러(수출 372억 달러, 수입 240억 달러)로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농산물 교역 규모가 가장 크다. 일본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446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수입이 424억 달러, 수출이 22억 달러로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이 가장 심하다. 중국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414억 달러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0년 중국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일본의 56%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126억 달러이다<표 2>.

2000~2005년 연평균 농산물 교역 증가율은 중국 19.8%, ASEAN 13.1%, 한국 8.6%, 일본 4.1% 등으로 중국과 ASEAN이 국제 시장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은 농산물 무역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5년 적자 규모는 일본 402억 달러, 한국 76억 달러이다. 중국과 ASEAN은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중국 28억 달러, ASEAN 132억 달러 수준이다.

2000~05년 평균으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역내 농산물 교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수출의 55%, 수입의 24%를 역내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으로 역내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수출의 52%, 수입의 7%를 역내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많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역내 농산물 수출 의존도가 수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SEAN과 일본의 역내 농산물 교역 의존도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일본의 역내 농산물 교역 의존도는 수출 17%, 수입 18% 수준이다. ASEAN의 역내 농산물 교역 의존도는 수출 12%, 수입 8%로 일본보다 낮다.

한국의 역내 농산물 수출 의존도는 감소하고 수입 의존도는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한국의 역내 수출 의존도 감소는 대일본 수출 비중의 감소 때문이다. 한국의 대일본 농산물 수출 비중은 2000~05년 기간에 16% 포인트 감소하여 대중국 수출 비중 증가(6%)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역내 수입 비중 증가는 중국과 ASEAN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역내 국가 가운데 대중국 농산물 교역의존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중국 농산물 수출 의존도는 2000년 3.7%에서 2005년 9.3%로 2.5배 높아졌다. 대중국 농산물 수입 의존도는 같은 기간에 14.5%에서 17.4%로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의 대일본 농산물 교역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다. 대일본 농산물 수출 의존도는 2000년 51.8%에서 2005년 36.4%로 감소하였으나 대일본 수출 편중 현상은 아직도 심각한 편이다. 한국의 ASEAN에 대한 농산물 교역 의존도는 수출의 경우 6%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수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은 2000년 55.5%에서 2005년 48.9%로 감소하였으나 수입 비중은 5.4%에서 8.7%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 감소는 주로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의 감소 때문이다. 중국의 역내 수입 비중 증가는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일본 농산물 수출 비중은 2000년 35.3%에서 2005년 29.8%로 감소하였으나 2000~05년 평균 3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중국의 대한국 및 대 ASEAN 수출 비중은 각각 9%와 1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농산물 수입 비중은 각각 0.4%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러나 대한국 수입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일본 수입 비중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ASEAN 농산물 수입 비중은 2000년 4.5%에서 2005년 7.8%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역내 교역 의존도는 수출이 52%(2000~05년 평균)인 데 비해 수입은 7.4%로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역내 농산물 무역은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비중은 미미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수출과 수입 역내 의존도는 각각 21%와 20%에서 2005년에는 1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일본의 한국과 ASEAN에 대한 교역 비중은

매우 낮다. 특히 일본의 ASEAN에 대한 농산물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0.1%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일본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7.7%)보다 중요하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16% 수준이다. 일본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 1위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역내 농산물 교역, 특히 수입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나 역내 농산물 수입 의존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역내 국가들이 증가하는 일본의 농산물 수입수요 가운데 곡물과 축산물에 대한 수출 잠재력이 낮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한국 및 대중국 수입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대상은 주로 한국과 중국으로 볼 수 있다.

ASEAN의 역내 농산물 교역 비중은 수출 14.5%(2005년 기준), 수입 8.3%로 매우 낮다. ASEAN은 중국에 대한 농산물 교역 의존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으나 한국 및 일본과의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다. ASEAN의 대일본 농산물 교역 비중은 0.1% 수준이다. ASEAN의 대한국 농산물 교역도 비중이 높지 않다. ASEAN의 2005년 기준 대중국 농산물 교역 비중은 수출 12%, 수입 7.8%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05년 기간 ASEAN의 연평균 대중국 수출 비중은 9.5%, 수입 비중은 7.5%이다. ASEAN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 비중은 3%를 넘지 않으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국 수입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6. 동아시아 국가별 역내 농산물 교역비중

단위: %

국가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ASEAN	수출	6.5	7.9	6.6	6.2	5.8	6.5	6.6
		수입	6.7	6.5	6.8	7.6	7.4	7.5	7.1
	일본	수출	51.8	44.6	40.2	39.3	39.5	36.4	41.9
		수입	2.4	2.1	2.1	2.1	1.9	1.7	2.1
	중국	수출	3.7	4.3	5.9	7.2	8.1	9.3	6.4
		수입	14.5	10.1	14.9	18.7	11.4	17.4	14.5
	합계	수출	61.9	56.8	52.7	52.7	53.4	52.2	54.9
		수입	23.6	18.7	23.8	28.3	20.7	26.7	23.6
중국	ASEAN	수출	10.3	9.3	12.3	12.0	10.2	10.1	10.7
		수입	4.5	5.1	6.4	7.4	8.1	7.8	6.6
	한국	수출	9.9	7.3	9.5	10.7	7.1	9.0	8.9
		수입	0.3	0.3	0.4	0.5	0.4	0.5	0.4
	일본	수출	35.3	36.4	31.4	28.4	32.7	29.8	32.3
		수입	0.6	0.5	0.4	0.4	0.4	0.4	0.4
	합계	수출	55.5	53.0	53.3	51.2	50.0	48.9	51.9
		수입	5.4	5.9	7.3	8.2	8.8	8.7	7.4
일본	ASEAN	수출	0.1	0.1	0.1	0.1	0.1	0.1	0.1
		수입	0.1	0.1	0.1	0.1	0.1	0.1	0.1
	한국	수출	12.2	7.0	9.7	10.9	11.0	9.2	10.0
		수입	2.6	2.4	2.2	2.2	2.2	2.1	2.3
	중국	수출	8.7	4.3	5.7	6.4	7.6	7.7	6.8
		수입	17.3	17.7	17.4	14.7	13.8	14.9	16.0
	합계	수출	21.1	11.4	15.6	17.4	18.7	17.0	16.9
		수입	20.0	20.2	19.8	17.0	16.1	17.1	18.4
ASEAN	한국	수출	2.7	2.9	2.6	2.6	2.6	2.3	2.6
		수입	0.6	0.7	0.6	0.6	0.5	0.6	0.6
	중국	수출	5.8	6.7	8.1	11.0	13.6	12.0	9.5
		수입	6.5	5.9	8.6	9.2	7.2	7.8	7.5
	일본	수출	0.2	0.2	0.2	0.2	0.1	0.1	0.2
		수입	0.0	0.0	0.0	0.0	0.0	0.0	0.0
	합계	수출	8.7	9.8	10.9	13.7	16.3	14.5	12.3
		수입	7.1	6.6	9.3	9.8	7.8	8.3	8.1

표 7. 동아시아 국가별 역내 농산물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ASEAN	수출액	121	151	128	134	138	164	139
		수입액	569	607	627	753	850	866	712
	일본	수출액	973	851	785	847	941	917	886
		수입액	207	198	193	207	218	200	204
	중국	수출액	70	82	116	156	194	234	142
		수입액	1,243	938	1,383	1,854	1,307	1,998	1,454
중국	ASEAN	수출액	1,292	1,192	1,793	2,082	1,870	2,222	1,742
		수입액	1,162	1,356	1,685	2,488	3,517	3,444	2,275
	한국	수출액	1,243	938	1,383	1,854	1,307	1,998	1,454
		수입액	70	82	116	156	194	234	142
	일본	수출액	4,440	4,689	4,561	4,924	6,030	6,591	5,206
		수입액	147	121	114	121	151	168	137
일본	ASEAN	수출액	2	3	3	3	2	2	3
		수입액	39	44	48	48	47	52	46
	한국	수출액	207	198	193	207	218	200	204
		수입액	973	851	785	847	941	917	886
	중국	수출액	147	121	114	121	151	168	137
		수입액	4,440	4,689	4,561	4,924	6,030	6,591	5,206
ASEAN	한국	수출액	569	607	627	753	850	866	712
		수입액	121	151	128	134	138	164	139
	중국	수출액	1,162	1,356	1,685	2,488	3,517	3,444	2,275
		수입액	1,292	1,192	1,793	2,082	1,870	2,222	1,742
	일본	수출액	39	44	48	48	47	52	46
		수입액	2	3	3	3	2	2	3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품목별 교역

■ 한 국

한국은 곡물의 순수입국으로 수출 실적은 거의 없으나 수입 규모는 매우 크다.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는 곡물은 쌀, 밀, 대두, 옥수수 등이다. 쌀은 ASEAN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옥수수와 대두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한국이 ASEAN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2000~05년 기간에 각각 연평균 5백만 달러와 3천만 달러⁵ 수준이다. 2000~05년 기간에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밀과 대두는 각각 연평균 4,100만 달러와 1,100만 달러 규모이다. 한국의 대중국 옥수수 수입 규모는 작제는 3억 달러에서 많게는 9억 달러까지 변화가 크다. 2000~05년 기간 한국의 대중국 옥수수 수입 규모는 연평균 6억 달러 수준이다.

과일은 식물검역 조치로 인해 교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과일은 사과, 배, 감귤 정도로 교역 규모는 크지 않다. 사과와 배는 주로 ASEAN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사과 30만 달러, 배 167만 달러(2000~05년 평균)에 불과하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등이며, 수출 규모는 사과 30만 달러, 배 40만 달러, 감귤 150만 달러 정도이다. 한국은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등 5대 과일을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한 실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바나나의 대ASEAN 수입 규모는 2000~05년 기간에 연평균 8,500만 달러이다. 한국의 대ASEAN 바나나 수입은 2000년 7,300만 달러에서 2005년 1억 1,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⁵ 국가별 수출입 자료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통계작성 방식, 적용 가격 등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음.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요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교역은 대 중국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고추로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고추, 마늘, 양파 수입은 2000~05년 기간에 각각 연평균 1,700만 달러, 600만 달러, 300만 달러 수준이다.

육류 가운데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은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0~05년 기간에 각각 연평균 1억 1,000만 달러와 200만 달러이다. 대ASEAN 돼지고기 수출 규모는 연평균 500만 달러 수준이다. 닭고기는 ASEAN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연평균 2,800만 달러와 400만 달러 정도 수입되고 있다.

표 8.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 주요 농산물 교역

단위: 천 달러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쌀	ASEAN	수출액	-	7	-	-	-	79	14
			수입액	9,076	3,749	-	4,666	11,968	3,755	5,536
		일본	수출액	1	8	2	-	-	-	2
			수입액	1	11	8	-	-	-	3
		중국	수출액	3	5	3	3	1	-	3
			수입액	37,014	18,337	21,727	36,027	37,636	33,453	30,699
	보리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38	30	-	294	377	613	225
	밀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	47	434	-	-	1,031	252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284	-	-	-	3	-	48
			수입액	4	37,495	58,400	94,259	56,578	626	41,227

(표 8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 국	대두	ASEAN	수출액	3	-	1	-	-	-	1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7	-	-	23	28	4	10
			수입액	27	26	17	40	16	12	23
		중국	수출액	109	67	48	88	107	8	71
			수입액	8,447	8,514	8,309	9,459	14,075	20,457	11,544
	감자	ASEAN	수출액	-	-	-	-	9	-	2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345	148	343	-	-	-	139
		중국	수출액	6	-	-	21	1	-	5
			수입액	-	-	-	-	-	-	-
	옥수수	ASEAN	수출액	-	-	-	-	15	-	3
			수입액	315	893	-	1,000	62,084	62	10,726
		일본	수출액	9	6	3	9	12	75	19
			수입액	-	78	-	-	-	-	13
		중국	수출액	-	-	-	4	8	-	2
			수입액	659,816	298,771	636,764	907,698	238,645	819,787	593,580
	사과	ASEAN	수출액	1,058	618	38	160	20	6	317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378	1,226	3	-	165	55	305
			수입액	8	135	11	-	-	-	26
		중국	수출액	4	45	-	-	-	-	8
			수입액	-	-	-	-	-	-	-
	배	ASEAN	수출액	1,933	1,973	2,490	1,869	931	840	1,673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626	772	321	59	499	306	431
			수입액	8	33	28	-	-	-	12
		중국	수출액	4	141	97	37	8	-	48
			수입액	-	-	-	-	-	-	-
	포도	ASEAN	수출액	8	55	59	72	112	94	67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56	9	-	2	1	11	13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2	2	2	8	3	-	3
			수입액	-	-	-	-	-	-	-

46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표 8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 국	감귤	ASEAN	수출액	67	119	93	84	380	287	172
			수입액	-	7	-	-	-	-	1
		일본	수출액	3,935	3,357	621	334	386	78	1,452
			수입액	1	2	-	-	-	-	1
		중국	수출액	-	6	-	105	8	-	20
			수입액	-	-	-	-	-	-	-
	오렌지	ASEAN	수출액	-	17	2	-	25	-	7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178	209	37	-	-	-	71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35	36	23	28	104	38
	복숭아	ASEAN	수출액	4	11	37	3	3	4	10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10	220	23	1	79	21	59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2	3	-	-	-	1
			수입액	-	-	-	-	-	-	-
	바나나	ASEAN	수출액	-	-	-	-	26	-	4
			수입액	73,082	69,993	78,196	90,681	86,650	114,596	85,533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19	-	-	-	-	3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13	2
	건고추	ASEAN	수출액	375	127	50	58	83	374	178
			수입액	-	1	32	12	25	26	16
		일본	수출액	4,638	2,937	2,583	3,405	3,821	4,365	3,625
			수입액	192	109	91	105	130	62	115
		중국	수출액	55	127	290	29	64	341	151
			수입액	10,367	13,960	12,066	17,095	29,451	17,786	16,788
	마늘	ASEAN	수출액	-	2,606	186	-	-	28	470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8	1	9	8	31	35	15
			수입액	1	-	-	-	-	-	0
		중국	수출액	-	7	61	6	124	12	35
			수입액	111	8,135	6,996	3,889	9,786	7,931	6,141

(표 8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양파	ASEAN	수출액	-	83	104	-	-	-	31
			수입액	-	-	-	607	4	99	118
		일본	수출액	387	448	9	-	-	6	142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8	-	-	-	5	7	3
			수입액	313	1,333	25	8,452	3,537	4,890	3,092
	쇠고기	ASEAN	수출액	1	-	-	-	-	-	0
			수입액	-	-	69	42	-	9	20
		일본	수출액	86	-	-	-	-	-	14
			수입액	148	206	-	17	-	-	62
		중국	수출액	-	-	-	-	2	-	0
			수입액	92	86	-	13	-	55	41
	돼지고기	ASEAN	수출액	986	11,790	4,405	6,647	3,986	2,276	5,015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62,871	13	-	161	3,659	83	11,131
			수입액	5,530	-	170	-	534	-	1,039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116	30	-	-	-	107	42
	닭고기	ASEAN	수출액	-	-	-	-	-	27	5
			수입액	20,257	40,385	41,771	56,336	10,525	35	28,218
		일본	수출액	367	1,461	3,819	2,596	608	4,277	2,188
			수입액	-	18	-	-	-	190	35
		중국	수출액	301	250	240	201	-	27	170
			수입액	6,153	10,243	1,880	3,973	959	21	3,872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 중국

중국은 곡물 가운데 쌀, 밀, 대두, 옥수수를 주로 동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쌀 수출은 ASEAN에 4,700만 달러, 한국에 2,600만 달러, 일본에 3,800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밀은 ASEAN과 한국에 각각 4,000만 달러와 3,900만 달러 정도 수출된다. 대두는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6,500만 달러), 한국과 ASEAN에도 수출된다. 곡물 가운데 수

출규모가 가장 큰 것은 옥수수로 한국에 5억 5,000만 달러, ASEAN에 2억 6,000만 달러 정도 수출된다. 수입 규모는 수출에 비해 크지 않다. 다만 쌀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주로 ASEAN에서 수입된다(1억 3,900만 달러).

중국의 과일류 수입 실적은 미미하다. ASEAN으로부터 바나나 수입이 5,800만 달러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과일류 수출은 사과, 포도, 감귤, 오렌지, 복숭아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SEAN에 대한 사과 수출 규모가 9,500만 달러를 넘고 있다. ASEAN에 대한 포도, 감귤, 오렌지, 복숭아 수출 실적은 각각 200만 달러, 100만 달러, 200만 달러, 6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배 수출 실적은 미미하다.

중국의 역내 채소류 교역은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건고추, 마늘 수출은 ASEAN, 한국, 일본 등으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건고추 수출 규모는 ASEAN 3,300만 달러, 한국 2,000만 달러, 일본 1,600만 달러 수준이다. 마늘은 ASEAN으로 1억 1,600만 달러, 한국으로 1,500만 달러, 일본으로 2,600만 달러 정도 수출된다. 양파의 대일본 수출은 4,000만 달러, 대한국 수출은 300만 달러이다.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대ASEAN 수출은 1,800만 달러 규모이다. 중국의 닭고기 수출은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ASEAN과 한국으로도 수출된다. 대일본 수출 규모는 1억 8,300만 달러, 대한국 수출은 400만 달러, 대ASEAN 수출은 1,900만 달러 수준이다.

표 9.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 주요 농산물 교역

단위: 천 달러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중국	쌀	ASEAN	수출액	133,004	22,839	67,010	37,180	11,563	10,416	47,002
			수입액	112,378	98,684	79,057	96,613	252,662	195,948	139,224
		한국	수출액	32,444	18,239	18,799	25,221	32,169	31,562	26,406
			수입액	-	-	-	2	4	-	1
		일본	수출액	24,963	32,042	28,605	37,246	50,991	53,501	37,891
			수입액	34	-	-	10	46	5	16

(표 9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중 국	보리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6	13	-	143	372	509	174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18	-	240	8	-	44
			수입액	-	-	-	-	-	3,396	566
	밀	ASEAN	수출액	21	7,968	15,399	131,085	53,923	30,714	39,852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36,930	53,503	98,225	46,154	38	39,142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70	121	2,779	6,118	2,375	1,911
			수입액	-	-	-	-	-	-	-
	대두	ASEAN	수출액	1,077	5,055	6,743	6,767	2,939	2,161	4,124
			수입액	69	-	4	22	-	-	16
		한국	수출액	8,610	10,773	8,843	11,168	15,996	25,937	13,555
			수입액	1	3	-	-	28	-	5
		일본	수출액	43,387	46,485	45,937	57,247	95,951	101,127	65,022
			수입액	3	22	-	-	11	41	13
	감자	ASEAN	수출액	2,969	5,860	9,867	17,404	23,441	32,619	15,360
			수입액	327	-	-	-	-	-	55
		한국	수출액	2	5	-	18	11	-	6
			수입액	4	-	-	1	11	-	3
		일본	수출액	57	80	36	18	26	23	40
			수입액	-	4	22	-	-	-	4
	옥수수	ASEAN	수출액	368,510	193,775	418,904	477,178	35,427	69,056	260,475
			수입액	5	2,032	399	4	189	371	500
		한국	수출액	601,070	314,683	611,875	868,150	171,928	749,159	552,811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10,946	44,630	32,213	145,269	97,831	110,081	73,495
			수입액	11	7	47	38	23	3	22
	사과	ASEAN	수출액	60,309	48,822	83,796	104,845	128,324	144,978	95,179
			수입액	7	6	-	57	-	-	12
		한국	수출액	21	232	104	167	12	51	98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134	43	34	30	61	671	162
			수입액	5	5	5	8	57	106	31

50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표 9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중 국	배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42	-	-	6	40	15
			수입액	-	39	-	-	-	-	7
		일본	수출액	-	4	-	-	5	-	2
			수입액	205	29	13	1	36	31	53
	포도	ASEAN	수출액	94	34	1,376	3,356	3,852	4,049	2,127
			수입액	17	14	48	13	17	-	18
		한국	수출액	-	-	-	5	-	-	1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23	4
	감귤	ASEAN	수출액	1,617	855	933	679	1,523	1,572	1,197
			수입액	-	-	-	-	-	469	78
		한국	수출액	-	16	-	-	-	-	3
			수입액	-	-	-	-	54	-	9
		일본	수출액	31	28	9	-	-	6	12
			수입액	-	43	26	12	15	10	18
	오렌지	ASEAN	수출액	141	159	123	2,434	2,740	7,485	2,180
			수입액	27	-	2	4	-	75	18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2	-	-	-	-	0
			수입액	-	-	-	-	-	-	-
	복숭아	ASEAN	수출액	501	538	360	527	639	901	578
			수입액	-	-	8	57	273	-	56
		한국	수출액	-	103	9	171	12	-	49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70	-	-	2	-	-	12
			수입액	-	2	2	3	-	-	1
	바나나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68,934	68,431	69,315	77,128	62,904	2,717	58,238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1,731	3,001	2,189	1,601	2,088	1,686	2,049
			수입액	-	-	2	-	-	-	0

(표 9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중 국	건고추	ASEAN	수출액	14,288	15,248	22,764	36,920	59,196	48,284	32,783
			수입액	180	41	90	60	59	125	93
		한국	수출액	9,821	17,934	19,474	23,239	33,305	18,114	20,315
			수입액	3	61	215	188	115	165	125
		일본	수출액	13,700	17,670	13,697	15,078	18,306	19,637	16,348
			수입액	98	145	223	230	383	441	253
	마늘	ASEAN	수출액	35,204	72,049	120,365	115,875	154,785	196,522	115,800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4,613	18,142	17,584	14,049	17,748	17,268	14,901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23,799	23,532	20,517	23,101	35,125	31,325	26,233
			수입액	26	27	3	8	2	93	27
	양파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812	571	45	8,203	2,836	5,256	2,954
			수입액	-	-	-	-	-	2	0
		일본	수출액	26,100	39,389	23,129	34,824	54,914	62,212	40,095
			수입액	-	-	-	-	-	-	-
	쇠고기	ASEAN	수출액	42	-	149	-	118	20	55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122	-	-	17	-	-	23
			수입액	15	41	-	-	-	-	9
	돼지고기	ASEAN	수출액	9,549	19,625	17,717	14,953	26,456	22,416	18,453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	41	1,201	2,390	9,583	2,203
			수입액	-	-	-	-	1	-	0
		일본	수출액	1	-	37	-	75	2	19
			수입액	-	-	-	-	-	-	-
	닭고기	ASEAN	수출액	25,282	34,656	36,004	16,105	1,239	507	18,966
			수입액	13,682	11,458	5,448	1,993	147	99	5,471
		한국	수출액	6,538	11,940	3,638	4,060	449	33	4,443
			수입액	1,016	782	95	-	-	-	316
		일본	수출액	423,102	356,380	198,168	108,951	10,959	70	182,938
			수입액	1,841	1,030	358	2,003	-	-	872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 일 본

일본은 곡물의 대량 수입국으로 수출 실적은 거의 없다.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수입하는 곡물은 쌀, 밀, 대두, 옥수수 등이며, 보리와 감자의 수입 실적은 미미하다. 쌀은 ASEAN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밀, 옥수수, 대두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일본이 ASEAN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2000~05년 기간에 각각 연평균 4,600만 달러와 3억 4,100만 달러 수준이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밀과 대두는 각각 연평균 2,100만 달러와 7,400만 달러 규모이다. 일본의 대중국 옥수수 수입 규모는 8,000만 달러이다.

일본은 ASEAN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고(연평균 1억 4,300만 달러), 한국으로부터 감귤을 수입하고(연평균 170만 달러) 있다. 일본은 ASEAN에 대하여는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연평균 100만 달러). 그밖에 과일류에 대한 역내 교역은 거의 없다.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요 채소류(건고추, 마늘, 양파) 교역은 대중국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시장에 대한 채소류 수출 실적은 미미하다. 일본의 대중국 건고추, 마늘, 양파 수입은 2000~05년 기간에 각각 연평균 1,900만 달러, 2,000만 달러, 3,300만 달러 수준이다.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건고추는 연간 300만 달러 규모이다.

육류 가운데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은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0~05년 기간에 각각 연평균 1,4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수준이다. 대ASEAN 닭고기 수입 규모는 연평균 2억 1,300만 달러이다.

표 10.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주요 농산물 교역

단위: 천 달러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본	쌀	ASEAN	수출액	391	330	215	233	1,875	1,670	796
			수입액	32,652	34,365	32,208	40,723	44,797	88,395	45,523
		한국	수출액	-	7	-	7	-	-	2
			수입액	-	-	-	-	-	2	0
		중국	수출액	29	-	-	10	40	3	14
			수입액	27,469	32,655	39,589	39,033	54,227	54,585	41,260
	보리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	-	3	-	-	0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4	267	7	-	46
	밀	ASEAN	수출액	6	-	-	2	-	-	1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16	19	-	-	-	6
			수입액	-	102	167	3,036	6,667	2,609	2,097
	대두	ASEAN	수출액	-	26	23	5	-	-	9
			수입액	149	-	3	10	20	79	43
		한국	수출액	-	17	11	44	18	39	21
			수입액	34	-	50	196	-	-	47
		중국	수출액	-	22	61	31	43	225	64
			수입액	52,386	57,814	58,769	64,936	101,781	110,375	74,343
	감자	ASEAN	수출액	3	2	4	-	-	-	1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362	145	378	18	-	-	151
			수입액	42	-	-	-	-	-	7
		중국	수출액	-	-	-	-	-	2	0
			수입액	41	7	11	-	3	35	16

54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표 10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 본	옥수수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2,033	1,938	1,772	1,948	2,153	2,011	1,976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35	20	-	9
			수입액	16,104	48,008	36,977	151,536	109,380	115,955	79,660
	사과	ASEAN	수출액	1,054	826	1,157	1,112	1,031	1,004	1,031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61	-	-	4	-	11
			수입액	228	1,068	2	-	5	-	217
		중국	수출액	-	-	-	-	143	513	109
			수입액	-	-	-	-	-	-	-
	배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15	-	-	58	-	12
			수입액	495	813	314	52	478	233	397
		중국	수출액	-	-	-	-	114	84	33
			수입액	-	-	-	-	-	-	-
	포도	ASEAN	수출액	-	-	-	-	40	85	21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15	7	7	2	-	-	5
		중국	수출액	-	-	-	-	4	-	1
			수입액	41	26	-	-	-	-	11
	감귤	ASEAN	수출액	57	33	84	53	65	73	61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6	-	-	-	-	1
			수입액	4,177	4,391	772	370	356	204	1,712
		중국	수출액	-	-	-	-	5	-	1
			수입액	-	11	-	-	12	-	4
	오렌지	ASEAN	수출액	-	-	9	-	-	-	2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7	-	-	-	-	-	1
			수입액	23	-	-	-	-	-	4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12	-	-	-	-	-	2

(표 10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 본	복숭아	ASEAN	수출액	-	-	-	-	7	15	4
			수입액	-	-	-	-	-	-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10	229	22	-	77	6	57
		중국	수출액	-	-	2	2	-	-	1
			수입액	-	-	-	-	-	-	-
	마나나	ASEAN	수출액	-	45	93	25	3	9	29
			수입액	178,774	167,816	164,077	170,789	178,644	1,235	143,556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2,805	4,522	3,271	2,318	2,797	2,150	2,977
	건고추	ASEAN	수출액	20	158	194	146	115	40	112
			수입액	828	325	147	153	952	1,770	696
		한국	수출액	160	107	91	104	103	33	100
			수입액	4,105	2,937	2,203	2,882	3,478	3,285	3,148
		중국	수출액	104	101	229	134	213	279	177
			수입액	17,024	21,085	17,912	17,103	18,984	20,931	18,840
	마늘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3	-	-	-	-	-	1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2	2	22	-	5
		중국	수출액	33	13	13	3	24	1,167	209
			수입액	18,707	20,825	17,937	18,610	19,882	22,997	19,827
	양파	ASEAN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	-	-	22	-	-	4
			수입액	35	143	70	-	62	102	69
중국		수출액	-	17	-	47	-	6	12	
		수입액	8,880	30,164	19,165	34,502	47,692	55,524	32,655	
쇠고기	ASEAN	수출액	211	375	45	62	147	1,733	429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209	69	-	-	-	-	46	
		수입액	146	-	-	-	-	-	24	
	중국	수출액	163	144	-	-	-	-	51	
		수입액	-	-	-	-	-	-	-	

(표 10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	돼지고기	ASEAN	수출액	-	-	-	-	2	7	2
			수입액	-	-	-	-	-	-	-
		한국	수출액	594	-	48	-	-	-	107
			수입액	78,737	-	-	-	3,672	-	13,735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본	닭고기	ASEAN	수출액	-	-	-	-	505	269	129
			수입액	205,772	278,492	408,015	355,405	30,235	5,021	213,823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411	1,640	4,532	2,827	415	4,288	2,352
		중국	수출액	101	94	345	427	122	-	182
			수입액	101	94	345	427	122	-	182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 ASEAN

ASEAN은 곡물 가운데 주로 쌀을 수출하고, 밀, 대두, 감자, 옥수수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ASEAN의 쌀 수출은 한국에 550만 달러, 일본에 4,600만 달러, 중국에 1억 3,900만 달러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쌀 수입 규모도 연간 4,7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쌀의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다. ASEAN의 대중국 밀, 대두, 감자, 옥수수 수입 규모는 각각 4,000만 달러, 400만 달러, 1,500만 달러, 2억 6,000만 달러이다.

ASEAN은 사과, 배, 포도, 감귤, 오렌지,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을 동아시아 역내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바나나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파인애플 등 기타 열대 과일의 동북아 국가에 대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ASEAN의 역내 채소류 교역은 건고추와 마늘의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 규모는 건고추 3,300만 달러, 마늘 8,500만 달러이다. ASEAN의 양념채소류 수출 실적은 미미하다.

ASEAN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닭고기는 역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으로는 주로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는 주로 수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표 11. ASEAN의 동아시아 역내 주요 농산물 교역

단위: 천 달러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A S E A N	쌀	한국	수출액	9,076	3,749	-	4,666	11,968	3,755	5,536
			수입액	-	7	-	-	-	79	14
		일본	수출액	32,652	34,365	32,208	40,723	44,797	88,395	45,523
			수입액	391	330	215	293	1,875	1,670	796
		중국	수출액	112,378	98,684	79,057	96,613	252,662	195,948	139,224
			수입액	133,004	22,839	67,010	37,180	11,563	10,416	47,002
	보리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밀	한국	수출액	-	47	434	-	-	1,031	252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6	-	-	2	-	-	1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21	7,968	15,399	131,085	53,923	30,714	39,852
	대두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11	3	-	1	-	-	3
		일본	수출액	149	-	3	10	20	79	43
			수입액	-	26	23	5	-	-	9
		중국	수출액	69	-	4	22	-	-	16
			수입액	1,077	5,055	6,743	6,767	2,939	2,161	4,124
	감자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9	-	2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3	2	4	-	-	-	1
		중국	수출액	327	-	-	-	-	-	55
			수입액	2,969	5,860	9,867	17,404	23,441	32,619	15,360

58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표 11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A S E A N	옥수수	한국	수출액	315	893	-	1,000	62,084	62	10,726
			수입액	-	-	-	-	-	15	3
		일본	수출액	2,033	1,938	1,772	1,948	2,153	2,011	1,976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5	2,032	399	4	189	371	500
			수입액	368,510	193,775	418,904	477,178	35,427	69,056	260,475
	사과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1,058	618	38	160	20	6	317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7	6	-	57	-	-	12
			수입액	60,309	48,822	83,796	104,845	128,324	144,978	95,179
	배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1,933	1,973	2,490	1,869	931	840	1,673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포도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8	55	59	72	112	94	67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40	85	21
		중국	수출액	17	14	48	13	17	-	18
			수입액	94	34	1,376	3,356	3,852	4,049	2,127
	감귤	한국	수출액	-	7	-	-	-	-	1
			수입액	67	119	93	84	380	287	172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57	33	84	53	65	73	61
		중국	수출액	-	-	-	-	-	469	78
			수입액	1,617	855	933	679	1,523	1,572	1,197
	오렌지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17	2	-	-	25	-	7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27	-	2	4	-	75	18
			수입액	141	159	123	2,434	2,740	7,485	2,180

(표 11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A S E A N	복숭아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4	11	37	3	3	4	10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7	15	4
		중국	수출액	-	-	8	57	273	-	56
			수입액	501	538	360	527	639	901	578
	바나나	한국	수출액	24,783	25,296	26,204	27,908	23,999	11	21,367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178,774	167,816	164,077	170,789	178,644	1,235	143,556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68,934	68,431	69,315	77,128	62,904	2,717	58,238
			수입액	-	-	-	-	-	-	-
	건고추	한국	수출액	-	1	32	12	25	26	16
			수입액	375	127	50	58	83	374	178
		일본	수출액	828	325	147	153	952	1,770	696
			수입액	20	158	194	146	115	40	112
		중국	수출액	180	41	90	60	59	125	93
			수입액	14,288	15,248	22,764	36,920	59,196	48,284	32,783
	마늘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2,606	186	-	-	28	470
		일본	수출액	3	-	-	-	-	-	1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52,592	73,793	84,132	77,642	102,967	118,392	84,920
	양파	한국	수출액	-	-	-	607	4	99	118
			수입액	-	83	104	-	-	-	31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쇠고기	한국	수출액	-	-	69	42	-	9	20
			수입액	-	-	-	-	-	-	-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211	375	45	62	147	1,733	429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42	-	149	-	118	20	55

60 역내 농산물 교역 유형

(표 11 계속)

국가	품목	시장	교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A S E A N	돼지고기	한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986	11,790	4,405	6,647	3,986	2,276	5,015
		일본	수출액	-	-	-	-	-	-	-
			수입액	-	-	-	-	-	-	-
		중국	수출액	-	-	-	-	-	-	-
			수입액	9,549	19,625	17,717	14,953	26,456	22,416	18,453
	닭고기	한국	수출액	20,257	40,385	41,771	56,336	10,525	35	28,218
			수입액	-	-	-	-	-	27	5
		일본	수출액	205,772	278,492	408,015	355,405	30,235	5,021	213,823
			수입액	-	-	-	-	2	7	2
		중국	수출액	13,682	11,458	5,448	1,993	147	99	5,471
			수입액	25,282	34,656	36,004	16,105	1,239	507	18,966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제 4 장

국가별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경쟁력 측정 방법

■ 비교우위

비교우위 이론은 국제 무역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제경쟁력에 대한 전통적 설명도 주로 리카도(Ricardo)와 헉셔-올린(Heckscher-Ohlin) 등에 의해 정립된 비교우위 이론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비교우위 이론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 하에서 어느 국가의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교우위나 국제경쟁력 등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비교우위가 없는 부문에 많은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투자를 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비교우위의 개념은 리카도(Ricardo, 1817)의 “정치경제와 조세 원론(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리카도에 의하면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단위당 상품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의 비율이며 절대적 노동투입량이 아니다. 상품 간의 노동 투입량 비율이 작을수록 비교우위가 높은 상품이라는 것이다. 리카도의 주장은 노동가치설에 의존한 것이며 어떠한 경제왜곡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또한 수요부문의 역할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공급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재화의 가격은 노동 투입량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 측면은 가격 형성과 무관한 것이 된다.

하벌러(G. Haberler)는 리카도의 여러 가지 비현실적 가정을 완화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비교우위를 설명하였다. 공급 측면만을 고려한 것은 리카도와 같으나 노동가치설의 비현실적 제약을 완화하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새롭게 적용한 것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은 어떤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비교우위

는 기회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회비용이 낮을수록 비교우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가격이 생산비와 일치한다고 가정(어떠한 경제왜곡 현상도 없음을 가정)하면 비교우위는 가격비로 나타낼 수도 있다. 두 재화 사이의 가격비가 낮을수록 비교우위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헥서와 올린(Heckscher-Ohlin)은 고전파 학자들이 규명하지 못했던 비교우위 결정의 결정적 요인인 노동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부존자원의 차이 또는 생산요소 집약도의 차이로 규명하였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비교우위 이론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 것으로 Ohlin이 197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비교우위는 경제왜곡이 없는 상황 하에서의 교역유형에 관한 이론이다. 경제왜곡이 없는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이때에 교역국간의 상대적 가격비 또는 생산비의 비율에 따라 비교우위는 결정된다. 이때 가격은 진정한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게 되며 폐쇄경제하의 가격비가 낮은 품목을 수출하게 된다. 비교우위는 절대가격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어느 산업의 절대 생산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더라도 그 산업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국제경쟁력

국제 경쟁력은 비교우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경쟁력은 비교우위와 같이 학문적으로 정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실 경제가 경제왜곡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 때 비교우위는 사실상 계측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비교우위 개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개념이다.

국제경쟁력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나 정확한 개념의 정립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김동환(1994)은 비교우위와 국제경쟁력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The

concep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elusive and multi-faceted. (중략) It is also confused with the theoretical concept of comparative advantage). 그는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은 일국의 기업 및 산업이 외국과 경쟁하여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의미하며 국가 간 교역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중략) 비교우위는 추상적인 국제교역 이론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으로 국제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원리이며 그것은 동일 국가 내에서 한 산업이 타 산업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생산의 우위성을 나타낸다.”

경쟁력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 경쟁력이란 재화 및 용역을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경쟁기업보다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같은 비용이라면 보다 우수한 품질로 생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국제경쟁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 하에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국제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정도 및 능력으로 요약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의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경쟁력은 동일 품질의 상품을 고려할 때 시장가격의 차이와 절대적 가격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구분하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으나,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다.

경쟁력에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경쟁의 주체에 따라서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쟁 대상에 따라서는 상품경쟁력, 자본경쟁력, 기술경쟁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Porter(1993)는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국제경쟁력 결정의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산업, 기업전략·구조·경쟁관계, 정부의 역할과 우발적 요인 등을 4대 요소로 제시하였다(다이아몬드형 경쟁력 결정 요인).

따라서 국제 경쟁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업 수준에서든 국가 수준에서든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국부가 경쟁력 강화·유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은 동태적 개념으로 국제시장에서 상대적 효율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국제경쟁력의 측정 방법

국제경쟁력은 주체에 따라서는 기업, 국가 등으로 구분되고 장소에 따라서는 국제 시장과 국내 시장으로 구분된다. 경쟁의 대상에 따라서는 상품, 자본,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국제경쟁력의 개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측정 목적에 의한 것이다. 국제경쟁력의 측정 방법에는 사후적 평가와 사전적 평가가 있다. 사후적 평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실현된 성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거시 경제적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후적 평가 방법으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와 시장 점유율이 있다. 사전적 평가 방법은 경쟁력 변화의 영향이 요소들과 관련된 것으로 미시 경제적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측정 방법으로는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기술경쟁력 등이 있다. 사후적 평가 방법이 사전적 평가 방법보다 포괄적이다. 그러나 사전적 평가 방법은 이용이 편리하고 간편하여 시기적절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사후적 평가 방법

가.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발라사(Balassa)에 의해 개발된 지수로 실현된 교역유형을 평가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지수는 측정하고자 하는 상품의 국제 시장 점유율을 측정하고자 하는 상품 수출국의 총 상품 국제 시장 점유율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상품이

특정 국가의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비교우위 개념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수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요소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자료의 입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입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 내 무역이 간과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산업내 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입구조를 어떠한 형태로든 지수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RCA 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CA = (X_{ij}/X_{wj})/(X_{it}/X_{wt})$$

여기서, X_{ij} = 특정국 i 의 j 상품 수출

X_{wj} = j 상품의 세계 전체 수출

X_{it} = 특정국 i 의 전체 상품 수출

X_{wt} = 세계 전체 상품 수출

따라서 지수가 1보다 클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수가 클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 현시경쟁우위 지수(RC)

현시경쟁우위 지수(Revealed Competitive Advantage: RC)는 수출국의 수입구조를 고려하여 RCA 지수를 보완한 것이다. RC 지수는 RCA 지수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빼거나 나눈 형태로 나타낸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을 나타내는 RCA 지수 계산식에 수출 대신 수입을 대체하여 구한다. RC 지수는 다음과 같다.

$$RC = RCA - (M_{ij}/M_{wj})/(M_{it}/M_{wt})$$

여기서, M 은 수입을 의미하며 아래 첨자들은 RCA 지수 계산식과 같다.

다. 국별 비교우위 지수(CAC)

RCA 지수와 RC 지수는 모두 어느 국가의 특정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들 지수는 수출국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의 특정 상품이 세계시장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가지는 경쟁력과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것이 국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y: CAC) 지수이다. CAC 지수는 RCA 지수 형태와 유사하거나 수출의 비중을 RCA 지수 계산시 사용된 국제 시장에서의 비중이 아닌 수출국에 대한 비중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CAC 지수는 수출국의 자료만 포함하고 있어 수입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CAC 지수는 다음과 같다.

$$CAC = (SX_{ij}/SX_{it})/(X_{ij}/X_{it})$$

여기서, SX_{ij} = 수입국 S에 대한 수출국 i의 j 상품 수출

SX_{it} = 수입국 S에 대한 수출국 i의 총수출

X_{ij} = 수출국 i의 j 상품 수출

X_{it} = 수출국 i의 전체 상품 수출

라.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 지수(CAI)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by Import Structure: CAI) 지수는 CAC 지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수입국의 수입구조를 지수 내에 포함하고 있다. CAI 지수는 다음과 같다.

$$CAI = (CAC)/(SM_{jt}/SM_t)/(M_{jw}/M_w)$$

여기서, SM_{jt} = 수입국 S의 j 상품 수입

SM_t = 수입국 S의 총수입

M_{jw} = 세계 전체의 j 상품 수입

M_w = 세계 전체의 총수입

마. 시장점유율(MS)

경쟁력의 사후적 평가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느 국가 또는 상품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은 어떤 절대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의 경우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MS_{ij} = (M_{ij} / \sum M_{ij}) * 100$$

여기서, M_{ij} = i 국으로부터의 j 상품 수입

사전적 평가방법

국제경쟁력의 사전적 평가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격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 PC) 분석이다. 어느 상품의 경쟁력은 가격과 비가격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경쟁력은 주로 생산의 효율성, 마케팅 능력, 조세정책, 환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제조원가, 생산성, 품질경쟁력 등을 사전적 경쟁력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비가격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과 상품 차별화의 정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그러나 비가격 요소는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시장가격은 여러 가지 경제왜곡이 반영된 가격이다. 여기에는 가격지지 정책, 유통 관련 정책, 보조금, 환율, 거래 관행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품질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경쟁력 측정은 이러한

드러난 가격의 비교에 의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상품에나 품질의 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는 국제경쟁력 측정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은 생산비, 국내 판매가격, 수출가격 등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비의 비교는 어느 상품의 경쟁력에서 마케팅 능력이 차지하는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별 국내 판매가격의 비교는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 운송, 통상 능력 등을 포함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평가를 위한 가격경쟁력 측정은 수출가격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격경쟁력을 지수화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경쟁국의 가격을 측정하고자 하는 수출국(i) 상품(j)의 가격으로 나누어 그 값이 1보다 크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PC = P_{cj}/P_{ij}$$

여기서, P_{cj} = 경쟁국 j 상품의 가격

P_{ij} = i 국 j 상품의 가격

■ 연구에 이용된 지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지수는 사후적 평가방법으로는 RCA지수, 시장점유율(MS) 등을 이용하였다. 수입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별 비교우위 지수(CAC)와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 지수(CAI)를 이용하였다. 사전적 평가방법 중에서는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가격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였다.

시장점유율

농산물의 국가별,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실적 관련 자료가 품목별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품목의 경우 동남아 국가와 동북아 국가 사이에 생산 및 수출 구조가 다르고 수출 품목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요 농산물 가운데 기존에 수출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분석하였다.

■ 한국

곡물

한국 수입 쌀 시장의 75% 정도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점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05년 기간에 평균 63.7%에 달한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별한 유형을 보이지는 않는다. ASEAN의 한국 수입 쌀 시장 점유율은 11% 수준이다. ASEAN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19.6%에서 2005년 7.3%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한국의 WTO 쌀 협상에서 국가별 쿼터제도가 도입되고 식탁용 쌀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태국 등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쌀 수입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리, 밀, 감자의 경우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없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리 수출 잠재력은 낮다. 중국은 한국의 수입 밀과 대두 시장에서 점유율이 각각 7%와 3% 수준이다. 한국은 옥수수 수입의 56%(2000~05 평균)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옥수

수 수입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작황, 가격 등의 요인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 여건은 쌀을 제외하고 대량의 곡물을 수출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 대두, 옥수수 등은 중국 내의 수급 및 유통 여건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농업의 여건은 한국의 곡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은 대두, 옥수수, 쌀 등 곡물 수입의 일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쌀 수입은 일부 ASEAN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수입 곡물 시장에서 중국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쌀과 옥수수로 볼 수 있으며 밀, 보리, 대두, 감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심하다.

표 12. 한국 수입 곡물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쌀	ASEAN	19.6	14.1	-	9.6	14.5	7.3	10.9
		일본	-	-	-	-	-	-	-
		중국	79.9	68.9	48.5	74.2	45.7	65.1	63.7
	보리	ASEAN	-	-	-	-	-	-	-
		일본	-	-	-	-	-	-	-
		중국	0.2	0.2	-	2.1	3.4	5.1	1.8
	밀	ASEAN	-	0.0	0.1	-	-	0.2	0.0
		일본	-	-	-	-	-	-	-
		중국	0.0	7.1	10.8	15.4	8.6	0.1	7.0
	대두	ASEAN	-	-	-	-	-	-	-
		일본	-	-	-	-	-	-	-
		중국	2.6	2.9	2.6	2.4	2.9	5.2	3.1
	감자	ASEAN	-	-	-	-	-	-	-
		일본	8.6	5.1	8.3	-	-	-	3.7
		중국	-	-	-	-	-	-	-
	옥수수	ASEAN	0.0	0.1	-	0.1	4.3	0.0	0.8
		일본	-	-	-	-	-	-	-
		중국	70.7	32.3	64.8	86.6	16.7	67.6	56.4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자료에서 계산

과일

동아시아 역내 과일 교역은 유해병해충 및 위생 조건 등 식물검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과, 배, 감귤 등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경우가 있으나 수입 규모는 매우 작다. 중국과 ASEAN은 한국 시장에 온대성 과일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ASEAN은 바나나 등 일부 열대성 과일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바나나 수입의 대부분을 ASEAN에 의존하고 있다(2000~05년 평균 99.5%). ASEAN은 한국의 파인애플과 바나나 수입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로 볼 때 온대성 과일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식물검역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소

채소류 가운데 일반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건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본과 ASEAN의 대한국 수출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건고추와 마늘의 경우 중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97%, 100%에 달한다. 중국은 한국 수입 양파 시장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로 볼 때 양념채소류의 경우 중국은 한국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타 ASEAN 및 일본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낮다.

표 13. 한국 수입 양념채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건고추	ASEAN	-	-	-	-	-	-	-
		일본	1.8	0.8	0.7	0.6	0.4	0.3	0.8
		중국	96.2	97.3	95.9	96.6	98.1	98.0	97.0
	마늘	ASEAN	-	-	-	-	-	-	-
		일본	-	-	-	-	-	-	-
		중국	98.2	100.0	100.0	100.0	100.0	100.0	99.7
	양파	ASEAN	-	-	-	3.6	-	-	0.6
		일본	-	-	-	-	-	-	-
		중국	42.9	99.1	23.4	50.4	36.7	94.3	57.8

자료: 표 12와 동일

육류

축산물 교역은 구제역 등 위생조건이 까다로워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국의 경우 대한민국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육류 가운데에서는 닭고기 정도가 교역되고 있다. 한국은 닭고기의 동아시아 역내 수입 비중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0~05년 기간의 한국 수입 닭고기 시장에서 ASEAN과 중국의 비중은 각각 35%와 5%이다. 한국의 닭고기 수입시장에서 ASEAN의 비중은 2000년 33.9%에서 2003년 63.6%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닭고기 수입은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의 비중은 2000년과 2001년 10% 수준에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입 닭고기 시장에서 중국은 ASEAN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과 ASEAN 모두 검역문제가 없을 경우 한국 수입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표 14. 한국 수입 육류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한국	쇠고기	ASEAN	-	-	-	-	-	-	-
		일본	0.0	0.0	-	-	-	-	0.0
		중국	0.0	0.0	-	0.0	-	0.0	0.0
	돼지고기	ASEAN	-	-	-	-	-	-	-
		일본	2.2	-	0.1	-	0.2	-	0.4
		중국	0.0	0.0	-	-	-	0.0	0.0
	닭고기	ASEAN	33.9	46.5	44.6	63.6	21.7	0.0	35.1
		일본	-	-	-	-	-	-	-
		중국	10.3	11.8	2.0	4.5	2.0	0.0	5.1

자료: 표 12와 동일

■ 중국

곡물

중국은 대두 등 일부 곡물의 순수입국이나 대부분의 곡물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곡물 수출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맥류 수출 잠재력은 매우 낮다. 그러나 쌀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곡의 역할을 하며 동아시아 역내 교역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중국은 쌀을 동아시아 역내에 수출하기도 하고, 역내에서 수입하기도 한다. 중국 수입 쌀 시장에서 ASEAN의 비중은 2000~05년 평균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ASEAN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2,659만 톤에 달하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로부터의 감자

수입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SEAN, 한국, 일본 등이 모두 중국 시장에 감자를 수출한 경우가 있으나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중국의 역내 국가들에 대한 감자 수입 비중이 5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감자 수입을 동아시아 국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양념채소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건고추와 마늘은 소규모로 수입하고 있으나 양파는 거의 수입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대중국 건고추, 마늘 수출실적은 연간 10~20만 달러 수준이나 시장점유율은 20~30%에 달한다. 중국의 수입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역내 국가들이 중국 양념채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중국 수입 양념채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시장	품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중국	건고추	ASEAN	30.3	-	-	-	-	6.1	6.1
		한국	-	-	19.4	27.2	9.8	8.1	10.8
		일본	16.5	14.3	20.1	33.3	32.7	21.6	23.1
	마늘	ASEAN	-	-	-	-	-	-	-
		한국	-	-	-	-	-	-	-
		일본	68.4	67.5	18.8	18.6	8.7	30.9	35.5
	양파	ASEAN	-	-	-	-	-	-	-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자료: 표 12와 동일

과일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배와 바나나를 수입하고 있으나 기타 사과, 복숭아, 포도, 감귤, 오렌지 등은 거의 수입하고 있지 않다. ASEAN은 중국 수입 바나나 시장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ASEAN의 중국 수입 바나나 시장 점유율은 2001년 92%, 2005년 2.7% 등 연도별로 편차가 심하다. 일본은 감귤을, ASEAN은 복숭아를 중국 시장에 수출한 경험이 있으나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육류

중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동아시아 수입 실적이 없다. 닭고기는 ASEAN, 한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경우가 있으나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 일본

곡물

일본은 쌀, 대두, 옥수수, 감자 등을 동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큰 품목은 쌀, 옥수수, 대두 등이다. ASEAN과 중국의 일본 수입 쌀 시장 점유율은 각각 17%와 16%로 시장점유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수입 대두와 옥수수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와 3%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16. 일본 수입 곡물류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본	쌀	ASEAN	12.3	17.4	15.1	16.6	13.1	27.3	17.0
		한국	-	-	-	-	-	-	-
		중국	10.3	16.5	18.5	15.9	15.8	16.9	15.7
	보리	ASEAN	-	-	-	-	-	-	-
		한국	-	-	-	-	-	-	-
		중국	-	-	-	-	-	-	-
	밀	ASEAN	-	-	-	-	-	-	-
		한국	-	-	-	-	-	-	-
		중국	-	0.0	0.0	0.3	0.6	0.2	0.2
	대두	ASEAN	0.0	-	-	-	-	-	0.0
		한국	0.0	-	0.0	0.0	-	-	0.0
		중국	4.3	4.9	4.8	4.3	5.7	7.7	5.3
	감자	ASEAN	-	-	-	-	-	-	-
		한국	-	-	-	-	-	-	-
		중국	-	-	-	-	-	-	-
	옥수수	ASEAN	0.1	0.1	0.1	0.1	0.1	0.1	0.1
		한국	-	-	-	-	-	-	-
		중국	0.9	2.5	1.9	6.3	3.7	4.5	3.3

자료: 표 12와 동일

양념채소

일본 수입 건고추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62%, 한국의 점유율은 10%, ASEAN의 점유율은 2% 등으로 일본은 건고추 수입의 3/4을 동아시아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 마늘 시장 점유율은 99%, 수입 양파 시장 점유율은 42%이다.

표 17. 일본 수입 양념채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본	건고추	ASEAN	2.9	1.0	0.5	0.6	2.9	5.2	2.2
		한국	14.4	9.0	8.0	10.6	10.7	9.6	10.4
		중국	59.9	64.6	65.3	63.0	58.6	61.2	62.1
	마늘	ASEAN	-	-	-	-	-	-	-
		한국	-	-	-	-	-	-	-
		중국	99.0	99.3	99.4	99.1	99.2	99.0	99.2
	양파	ASEAN	-	-	-	-	-	-	-
		한국	-	0.2	-	-	-	0.1	0.0
		중국	12.6	36.4	43.8	41.4	57.9	57.4	41.6

주: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자료를 이용함.

과일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온대성 과일은 거의 수입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한국에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을 소규모로 수입한 경향이 있으나 지속성과 규모 측면에서 경쟁력을 분석하기에는 미흡하다. 일본은 바나나 수입의 27%를 ASEAN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보다 ASEAN의 의존도가 매우 낮다.

표 18. 일본 수입 과일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본	사과	ASEAN	-	-	-	-	-	-	-
		한국	28.3	41.5	-	-	-	-	11.6
		중국	-	-	-	-	-	-	-
	배	ASEAN	-	-	-	-	-	-	-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	-	-	-	-	-	-

(표 18 계속)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일본	사과	ASEAN	-	-	-	-	-	-	-
		한국	28.3	41.5	-	-	-	-	11.6
		중국	-	-	-	-	-	-	-
	배	ASEAN	-	-	-	-	-	-	-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국	-	-	-	-	-	-	-
	포도	ASEAN	-	-	-	-	-	-	-
		한국	-	-	-	-	-	-	-
		중국	-	-	-	-	-	-	-
	감귤	ASEAN	-	-	-	-	-	-	-
		한국	27.9	24.4	5.6	3.0	2.6	1.4	10.8
		중국	-	-	-	-	-	-	-
	오렌지	ASEAN	-	-	-	-	-	-	-
		한국	-	-	-	-	-	-	-
		중국	-	-	-	-	-	-	-
	복숭아	ASEAN	-	-	-	-	-	-	-
		한국	10.5	59.2	39.9	-	36.6	6.4	25.4
		중국	-	-	-	-	-	-	-
	바나나	ASEAN	34.6	35.1	28.9	31.2	32.5	0.2	27.1
		한국	-	-	-	-	-	-	-
		중국	0.5	0.9	0.6	0.4	0.5	0.4	0.6

주: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자료를 이용함.

2.3.4. 육류

일본은 ASEAN으로부터 닭고기를 일부 수입하고 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ASEAN의 일본 수입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4.5%에서 2003년 47.9%까지 증가하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동아시아 교역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ASEAN

곡물

ASEAN은 중국으로부터 쌀, 감자,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아시아 역내 곡물 수입은 거의 없다. 중국의 ASEAN 수입 쌀 시장 점유율은 7% 수준이며,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기보다 연도별로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ASEAN의 중국 수입 감자와 옥수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52%이다. 감자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옥수수의 시장점유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표 19. ASEAN 수입 곡물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A S E A N	쌀	한국	-	-	-	-	-	-	-
		일본	0.0	0.1	0.0	0.0	0.3	0.4	0.2
		중국	16.7	4.1	8.0	5.6	1.8	2.7	6.5
	보리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	-	-	-	-	-	-
	밀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0.0	0.6	1.0	8.9	2.8	1.5	2.5
	대두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0.1	0.7	0.8	0.7	0.2	0.2	0.5
	감자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8.1	15.7	24.3	38.5	42.9	48.4	29.6
	옥수수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67.9	50.3	84.4	92.3	6.4	14.1	52.6

자료: 표 12와 동일

양념채소

ASEAN은 중국으로부터 건고추와 마늘은 소규모로 수입하고 있으나 양파는 거의 수입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ASEAN 수입 건고추, 마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5%와 75%이며 지속적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0. ASEAN 수입 양념채소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A S E A N	건고추	한국	0.7	0.2	0.1	0.1	0.1	0.4	0.3
		일본	0.0	0.3	0.3	0.2	0.1	0.0	0.2
		중국	26.9	28.6	36.7	61.6	61.7	55.5	45.2
	마늘	한국	-	2.9	0.2	-	-	0.0	0.5
		일본	-	-	-	-	-	-	-
		중국	72.5	83.3	78.0	64.2	80.6	69.1	74.6
	양파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	-	-	-	-	-	-

자료: 표 12와 동일

과일

ASEAN은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온대성 과일을 수입하고 있으나 교역 규모는 크지 않다. 중국의 ASEAN 수입 과일 시장 점유율은 사과 54%, 포도 3%, 감귤, 2%, 오렌지 3%, 복숭아 17% 등이다. 한국의 ASEAN 수입 배 시장 점유율은 2%이나 중국과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0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다.

표 21. ASEAN 수입 과일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A S E A N	사과	한국	0.7	0.4	0.0	0.1	0.0	0.0	0.2
		일본	-	-	-	-	-	-	-
		중국	37.3	31.2	47.9	51.3	73.7	84.8	54.4
	배	한국	3.5	3.2	3.2	2.5	1.3	1.0	2.4
		일본	-	-	-	-	-	-	-
		중국	-	-	-	-	-	-	-
	포도	한국	0.0	0.1	0.1	0.1	0.1	0.1	0.1
		일본	-	-	-	-	-	-	-
		중국	0.2	0.1	2.1	3.8	4.6	4.8	2.6
	감귤	한국	0.1	0.2	0.1	0.1	0.8	0.6	0.3
		일본	0.1	0.1	0.1	0.1	0.1	0.1	0.1
		중국	2.6	1.4	1.5	1.0	3.2	3.2	2.2
	오렌지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0.2	0.3	0.2	3.3	3.4	10.9	3.0
	복숭아	한국	0.1	0.4	1.2	0.1	0.1	0.1	0.3
		일본	-	-	-	-	-	-	-
		중국	17.5	17.8	11.6	15.7	16.0	20.4	16.5
	바나나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	-	-	-	-	-	-

자료: 표 12와 동일

육류

ASEAN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2%로 한국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 ASEAN 수입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은 한국 4%, 중국 13%이다. 중국의 ASEAN 수입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12%이다.

시장점유율로 판단할 때 ASEAN 수입 육류 시장에서 한국은 돼지고기, 일본은 쇠고기, 중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2. ASEAN 수입 육류 시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A S E A N	쇠고기	한국	-	-	-	-	-	-	-
		일본	1.2	2.4	0.3	0.3	0.7	9.5	2.4
		중국	0.2	-	0.9	-	0.6	0.1	0.3
	돼지고기	한국	0.8	10.2	3.5	4.5	2.6	1.3	3.8
		일본	-	-	-	-	-	-	-
		중국	7.7	16.9	14.2	10.2	17.1	12.8	13.2
	닭고기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중국	15.7	24.2	22.1	9.8	0.7	0.3	12.1

자료: 표 12와 동일

비교우위 지수 분석

■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분석 대상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가운데 동아시아의 주요 농산물 19개로 한정하였다. 국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수 가운데 하나인 현시비교우위(RCA) 지수가 1 이상인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RCA가 1 이상인 품목은 쌀, 옥수수, 사과, 배, 건고추, 마늘, 양파, 닭고기 등 8개 품목이다. 특히 건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RCA 지수가 각각 4, 9, 5.5 등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았다. 곡물류 가운데에서는 옥수수의 RCA가 1.9로 쌀의 1.1보다 높았다. 육류 가운데에

서는 닭고기의 RCA가 1.9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RCA는 0.3 이하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RCA가 1 이상인 품목이 배 하나로 나타났다. 일본은 RCA가 1 이상인 품목이 없다. ASEAN의 RCA가 1 이상인 품목은 쌀(5.1), 양파(1.1) 등 두 품목에 불과하여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CA 지수가 1에 가까운 품목은 바나나(0.9), 건고추(0.7) 등이다.

곡물류의 경우 분석 대상 품목은 국제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쌀, 보리, 밀, 옥수수, 대두, 감자로 한정하였다. 이들 품목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가 RCA 지수로 보았을 때 국제경쟁력을 갖춘 것은 쌀과 옥수수 정도에 불과하다. 쌀의 경우 중국과 ASEAN의 RCA 지수가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쌀에 대한 RCA 지수는 2000~05년 평균 1.1이며, 2000년 2.3에서 2005년 0.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ASEAN의 쌀에 대한 RCA는 2000~05년 평균 5.1로 중국보다 높다. ASEAN의 쌀에 대한 RCA는 증가하고 있어 ASEAN 국가들의 쌀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옥수수에 대한 RCA 지수는 2000~05년 평균 1.9이며,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쌀과 옥수수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력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리, 밀 등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중국과 ASEAN 국가들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념채소류 가운데 중국은 건고추, 마늘, 양파 모두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ASEAN은 건고추(2005년의 경우)와 양파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양념채소류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 없다. 건고추의 경우 중국의 RCA는 2000~05년 평균 4.1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EAN의 건고추 평균 RCA는 0.7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0.2에서 2005년 1.1로 높아져 최근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마늘 RCA는 평균 9.3으로 양념채소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국과 ASEAN의 양파 RCA는 각각 평균 5.5와 1.1로 중국의 경쟁력이 ASEAN에 비해 높았다.

표 23. 동아시아 국가의 곡물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품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한국	0.002	0.000	0.000	0.000	0.006	0.000	0.002
	중국	2.330	1.199	1.238	1.241	0.424	0.376	1.135
	일본	0.031	2.074	0.016	0.015	0.024	0.012	0.362
	ASEAN	4.747	4.453	5.080	5.146	6.240	5.090	5.126
보리	한국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중국	0.001	0.001	0.001	0.004	0.002	0.002	0.002
	일본	-	-	-	0.000	-	0.000	0.000
	ASEAN	0.004	0.004	0.001	0.001	0.002	0.001	0.002
밀	한국	0.001	-	-	-	0.000	-	0.000
	중국	0.000	0.074	0.091	0.286	0.089	0.029	0.095
	일본	0.000	0.000	0.000	0.000	0.000	-	0.000
	ASEAN	0.001	0.002	0.007	0.002	0.005	0.003	0.003
대두	한국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중국	0.201	0.180	0.149	0.102	0.148	0.158	0.156
	일본	0.016	0.016	0.015	0.012	0.015	0.017	0.015
	ASEAN	0.015	0.008	0.012	0.008	0.012	0.008	0.010
감자	한국	0.001	0.000	0.002	0.001	0.001	0.000	0.001
	중국	0.099	0.154	0.168	0.203	0.206	0.330	0.194
	일본	0.006	0.004	0.004	0.000	0.000	0.000	0.002
	ASEAN	0.103	0.096	0.093	0.073	0.062	0.090	0.086
옥수수	한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중국	3.069	1.622	2.350	2.735	0.424	1.332	1.922
	일본	-	-	0.000	0.000	0.000	0.002	0.000
	ASEAN	0.060	0.137	0.066	0.082	0.258	0.072	0.113

자료: 표 12와 동일

표 24. 동아시아 국가의 양념채소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품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건고추	한국	0.261	0.580	0.379	0.480	0.531	0.664	0.482
	중국	1.505	3.519	3.465	4.433	6.432	5.290	4.107
	일본	0.006	0.017	0.025	0.024	0.025	0.024	0.020
	ASEAN	0.244	0.520	0.569	0.588	0.930	1.124	0.662
마늘	한국	0.001	0.224	0.022	0.027	0.019	0.009	0.050
	중국	8.670	9.410	10.612	9.709	9.095	8.315	9.302
	일본	0.001	0.000	0.000	0.001	0.001	0.024	0.005
	ASEAN	0.347	0.387	0.410	0.327	0.329	0.327	0.355
양파	한국	0.188	0.349	0.072	0.009	0.008	0.002	0.105
	중국	-	-	7.061	13.118	9.459	3.572	5.535
	일본	0.060	0.051	0.120	0.037	0.010	0.001	0.046
	ASEAN	1.474	0.969	1.269	0.707	1.618	0.486	1.087

자료: 표 12와 동일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과일류에서 RCA가 1보다 높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과와 감의 경우 중국이 유일하게 RCA 지수 1.1 정도로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는 한국과 중국 모두 RCA 1 수준을 나타내 국제경쟁력의 한계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귤은 중국도 RCA가 0.6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나라들의 RCA는 0.1 이하로 경쟁력이 낮다. 복숭아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과일에 비해 RCA 지수가 낮았다. ASEAN은 바나나에 있어서 RCA가 2000~05년 평균 0.9로 국제경쟁력의 한계선에 있으나 연도별로 1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육류에서 RCA가 1보다 높은 경우는 중국의 닭고기 하나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RCA는 중국이 0.2로 가장 높았으나 1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RCA가 가장 높은 중국이 0.3 정도로 낮았다. 닭고기는 중국과 ASEAN의 2000~05년 평균 RCA가 각각 1.9와 0.8로 나타났으나 질병 발생으로 인한 교역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기에는 1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동아시아 국가의 과일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품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사과	한국	0.030	0.051	0.196	0.088	0.049	0.080	0.082
	중국	1.093	0.961	1.026	1.061	1.110	1.190	1.074
	일본	0.031	0.034	0.124	0.175	0.108	0.231	0.117
	ASEAN	0.048	0.037	0.034	0.028	0.023	0.034	0.034
배	한국	0.713	0.852	1.349	0.998	0.944	1.376	1.039
	중국	1.032	1.015	1.174	1.174	1.038	1.119	1.092
	일본	0.116	0.110	0.103	0.074	0.071	0.081	0.092
	ASEAN	0.078	0.063	0.043	0.031	0.034	0.033	0.047
포도	한국	0.001	0.005	0.003	0.004	0.002	0.009	0.004
	중국	0.002	0.003	0.017	0.032	0.035	0.041	0.022
	일본	0.001	0.001	0.003	0.004	0.005	0.008	0.004
	ASEAN	0.042	0.036	0.023	0.023	0.021	0.029	0.029
감귤	한국	0.126	0.171	0.152	0.087	0.101	0.062	0.117
	중국	0.831	0.618	0.626	0.539	0.612	0.605	0.638
	일본	0.040	0.054	0.047	0.037	0.034	0.031	0.041
	ASEAN	0.024	0.029	0.024	0.015	0.023	0.025	0.023
오렌지	한국	0.041	0.051	0.002	0.000	0.001	0.000	0.016
	중국	0.006	0.006	0.026	0.054	0.068	0.105	0.044
	일본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ASEAN	0.032	0.028	0.021	0.020	0.023	0.043	0.028
복숭아	한국	0.004	0.011	0.022	0.000	0.005	0.002	0.007
	중국	0.027	0.032	0.059	0.057	0.061	0.052	0.048
	일본	0.001	0.001	0.043	0.022	0.028	0.049	0.024
	ASEAN	0.004	0.003	0.003	0.004	0.005	0.004	0.004
바나나	한국	0.002	0.006	0.005	0.005	0.007	0.003	0.005
	중국	0.014	0.021	0.021	0.026	0.021	0.021	0.021
	일본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SEAN	0.913	1.009	0.976	1.228	1.237	0.033	0.899

자료: 표 12와 동일

표 26. 동아시아 국가의 육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품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쇠고기	한국	0.001	0.000	-	0.000	0.000	0.004	0.001
	중국	0.186	0.319	0.126	0.070	0.126	0.135	0.160
	일본	0.021	0.023	0.006	0.011	0.022	0.017	0.017
	ASEAN	0.001	0.001	0.002	0.003	0.001	0.002	0.002
돼지고기	한국	0.216	0.119	0.042	0.033	0.019	0.006	0.073
	중국	0.145	0.227	0.310	0.298	0.353	0.307	0.273
	일본	0.001	0.002	0.000	0.000	0.000	0.000	0.001
	ASEAN	0.032	0.059	0.050	0.034	0.034	0.035	0.041
닭고기	한국	0.011	0.014	0.028	0.017	0.006	0.020	0.016
	중국	4.209	3.044	2.158	1.362	0.412	0.406	1.932
	일본	0.006	0.005	0.006	0.005	0.002	0.003	0.005
	ASEAN	0.936	1.165	1.294	1.267	0.112	0.049	0.804

자료: 표 12와 동일

■ 국별비교우위 지수(CAC, CAI)

한국

우리나라의 CAC가 1 이상인 품목은 ASEAN 시장에서 사과, 배, 마늘, 돼지고기이다. 중국 시장에서는 CAC 1 이상을 나타내는 품목이 전무하며, 일본시장에서는 감귤, 건고추,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CAC 1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국의 수입구조가 반영된 지수로 사용된 CAI의 경우 사과가 ASEAN과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 사과, 배 등으로 볼 수 있다.

표 27. 한국 주요 품목의 국별 비교우위(CAC) 지수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보리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밀	ASEAN	0.0	-	-	-	0.0	-	0.0
	일본	0.0	-	-	-	0.0	-	0.0
	중국	0.0	-	-	-	0.0	-	0.0
대두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자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옥수수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사과	ASEAN	9.0	-	-	-	-	-	9.0
	일본	-	0.9	-	-	-	-	0.9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배	ASEAN	1.7	1.3	1.1	1.0	0.5	0.2	1.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포도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귤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1.6	1.4	-	-	-	-	1.5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오렌지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복숭아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표 27 계속)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바나나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건고추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1.5	1.1	1.6	1.7	1.8	1.9	1.6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마늘	ASEAN	-	11.9	-	-	-	1.8	6.9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양파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쇠고기	ASEAN	0.0	0.0	-	0.0	0.0	0.0	0.0
	일본	0.0	0.0	-	0.0	0.0	0.0	0.0
	중국	0.0	0.0	-	0.0	0.0	0.0	0.0
돼지고기	ASEAN	-	3.7	4.7	8.2	6.7	11.8	7.0
	일본	1.7	-	-	-	0.9	-	1.3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닭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	1.2	2.0	1.9	-	2.1	1.8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중국

중국의 CAC가 1 이상인 품목은 ASEAN 시장에서 쌀, 밀, 감자, 옥수수, 사과, 포도, 오렌지, 건고추, 마늘이고, 한국 시장에서 밀, 대두, 옥수수, 건고추이다. 일본시장에서는 대두, 양파, 바나나의 CAC가 1 이상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과일과 축산물이 한국과 일본에서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수입에 대한 위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CAI 지수로 볼 때 ASEAN 시장에서 돼지고기, 한국 시장에서 마늘, 일본 시장에서 대두 등이 경쟁력 높은 품목에 추가될 수 있다<부표 2>.

표 28. 중국 주요 품목의 국별 비교우위(CAC) 지수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ASEAN	2.2	0.7	1.4	0.6	0.5	0.5	1.0
	한국	0.6	0.7	0.5	0.5	1.9	1.5	0.9
	일본	0.1	0.2	0.2	0.3	0.7	0.8	0.4
보리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밀	ASEAN	-	1.9	1.8	4.1	4.7	8.3	4.2
	한국	-	10.9	8.0	3.4	5.8	-	7.0
	일본	-	-	-	0.0	0.2	0.2	0.1
대두	ASEAN	0.1	0.7	0.7	0.6	0.2	0.1	0.4
	한국	1.2	1.8	1.2	1.1	1.5	1.6	1.4
	일본	1.7	1.6	1.8	2.2	2.0	1.9	1.9
감자	ASEAN	5.9	6.6	5.8	6.6	7.7	7.1	6.6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옥수수	ASEAN	3.4	3.3	2.9	2.2	1.1	0.6	2.3
	한국	5.8	6.9	5.5	4.6	7.5	7.6	6.3
	일본	0.0	0.2	0.1	0.3	0.9	0.3	0.3
사과	ASEAN	6.1	5.2	4.5	4.2	4.6	4.7	4.9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포도	ASEAN	-	-	4.9	4.8	5.1	4.0	4.7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감귤	ASEAN	0.3	0.3	0.2	0.1	0.2	0.1	0.2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오렌지	ASEAN	-	-	-	2.7	2.2	4.0	3.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표 28 계속)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복숭아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바나나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1.8	1.8	1.3	0.8	1.0	0.8	1.2
견고추	ASEAN	2.8	2.5	2.5	2.8	3.8	3.5	3.0
	한국	2.0	3.7	2.8	2.0	3.0	1.5	2.5
	일본	0.8	0.7	0.6	0.5	0.4	0.5	0.6
마늘	ASEAN	2.5	3.8	2.8	2.7	3.6	3.5	3.2
	한국	0.3	1.2	0.5	0.4	0.6	0.3	0.6
	일본	0.5	0.3	0.2	0.2	0.3	0.2	0.3
양파	ASEAN	-	-	0.0	0.0	0.0	0.0	0.0
	한국	-	-	-	1.0	0.5	0.6	0.7
	일본	-	-	2.1	1.6	2.2	2.1	2.0
쇠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돼지고기	ASEAN	1.4	1.6	0.7	0.5	0.6	0.5	0.9
	한국	-	-	-	-	0.1	0.3	0.2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닭고기	ASEAN	0.2	0.4	0.4	0.2	0.1	-	0.3
	한국	0.1	0.2	0.1	0.1	-	-	0.1
	일본	1.1	1.0	0.9	0.6	0.1	-	0.7

자료: 표 27과 동일

일본

일본의 CAC가 1 이상인 품목은 ASEAN 시장에서 사과뿐이며, 한국과 중국시장에서 CAC가 1이상인 품목은 전무하다. 일본 농산물은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CAC와 CAI 지수가 0으로 나타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부표 3, 4>.

ASEAN

ASEAN 농산물 가운데 CAC가 1 이상인 품목은 한국 시장에서 옥수수, 바나나, 닭고기 등이다. 쌀은 한국 시장에서 CAC 지수나 CAI 지수로 볼 때 경쟁국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ASEAN 농산물은 쌀, 옥수수, 바나나, 건고추, 닭고기 등이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ASEAN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쌀의 경우 ASEAN 쌀이 중국 시장에서 CAC 지수가 1에 가까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나나는 CAI 지수로 볼 때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부표 5>.

표 29. ASEAN 주요 품목의 국별 비교우위(CAC) 지수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한국	0.2	0.1		0.1	0.1	0.1	0.1
	일본	8.8	8.6	8.2	11.3	9.7	23.7	11.7
	중국	0.9	0.9	0.5	0.6	1.4	1.2	0.9
보리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밀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대두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자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옥수수	한국	-	-	-	0.7	13.3	-	7.0
	일본	31.7	12.1	22.2	21.0	8.3	28.3	20.6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사과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표 29 계속)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배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포도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귤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오렌지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복숭아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바나나	한국	3.1	2.8	3.2	3.1	2.7	-	3.0
	일본	324.0	261.1	264.6	299.9	365.2	87.3	267.0
	중국	3.8	3.9	3.0	3.1	3.2	4.5	3.6
건고추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32.4	11.1	5.0	6.1	32.5	51.0	23.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마늘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양파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쇠고기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돼지고기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닭고기	한국	1.9	2.5	3.0	3.5	7.1	-	3.6
	일본	282.3	243.3	382.3	344.9	366.1	112.3	288.6
	중국	0.6	0.4	0.1	0.0	-	-	0.3

자료: 표 27과 동일

가격경쟁력

■ 곡 물

ASEAN의 경우 주요 회원국의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평균 가격은 국별 생산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개념이다. 쌀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가격이 ASEAN의 73%에 불과하다. 그러나 ASEAN의 경우 회원국별로 가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ASEAN 가운데 태국은 중국보다 쌀 가격이 낮고, 미얀마도 중국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는 쌀 가격이 일본보다도 높기 때문에 ASEAN의 평균 쌀 가격을 높인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쌀 가격이 가장 높아 중국보다 9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쌀 가격은 중국보다 6배 높다.

보리와 밀 가격은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보리 가격은 일본의 3배, 밀 가격은 2배 이상 높다. 보리와 밀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두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ASEAN(특히 미얀마), 중국 순이다. 한국의 대두 가격은 ASEAN의 10배, 중국의 7배 수준이다. 감자와 옥수수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다. 한국과 일본의 감자 가격은 중국보다 각각 6배와 10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옥수수 가격은 중국보다 8배 높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곡물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대두를 제외하고 다른 곡물에서 ASEAN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부 ASEAN 국가(특히 미얀마)의 경우 쌀, 감자, 옥수수 등의 가격경쟁력이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동아시아 국가별 곡물류 가격 비교

단위: 원/kg

항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쌀	한국	2,032	2,004	1,981	2,028	2,064	1,858	1,798	1,966
	중국	277	353	339	265	343	331	398	330
	일본 ¹⁾	3,001	3,002	2,781	2,865	3,037	3,317	2,945	2,993
	ASEAN 평균 ²⁾	406	401	437	440	461	458	557	451
	미얀마	193	236	319	339	365	401	666	366
	필리핀	452	452	450	405	389	389	402	420
	태국	322	304	307	327	337	325	339	323
	말레이시아	3,272	3,046	3,046	3,046	3,517	3,360	3,360	3,235
보리	한국	1,308	1,244	1,200	1,182	1,133	1,130	1,160	1,194
	중국 ³⁾	191	212	177	192	162	132	125	170
	일본 ⁵⁾	384	352	324	368	414	439	387	381
	ASEAN 평균	470	470	470	470	548	548	667	521
	말레이시아	470	470	470	470	548	548	667	521
밀	한국 ⁴⁾	1,093	1,000	965	950	911	908	933	966
	중국 ³⁾	165	181	166	166	215	189	173	179
	일본 ⁵⁾	461	412	371	419	466	492	420	434
	ASEAN 평균	226	323	364	412	469	466	504	395
	미얀마	226	323	364	412	469	466	504	395
콩	한국	3,236	2,385	2,606	3,290	4,989	3,739	2,410	3,236
	중국	335	439	443	461	509	404	402	428
	일본	4,161	3,310	3,052	6,511	10,977	4,211	3,712	5,133
	ASEAN 평균	363	358	374	370	427	343	128	337
	미얀마	154	211	250	271	292	284	365	261
	필리핀	328	400	288	286	401	389	392	355
	태국	429	420	434	431	500	374	-	431
감자	한국	438	529	556	881	1,197	667	700	710
	중국	101	113	148	99	96	117	133	115
	일본	1,607	1,296	1,013	1,425	1,112	1,136	1,019	1,230
	ASEAN 평균	199	240	210	220	239	207	230	221
	미얀마	60	68	96	155	162	151	164	122
	필리핀	577	658	526	465	550	410	507	527
	태국	326	518	427	316	378	318	347	376

(표 30 계속)

항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옥수수	한국		1,314	1,150	1,300	1,298	1,310	1,532	1,317
	중국 ³⁾	131	177	154	160	179	152	156	158
	ASEAN 평균	196	187	181	175	202	175	206	189
	미얀마	98	129	136	154	172	182	182	150
	필리핀	204	194	188	179	206	174	210	193

주 1) 일본의 쌀가격은 미국의 유통·가격·수요정보(www.komenet.jp) 자료를 이용하였음.

2) ASEAN 국가들의 가격 평균은 생산량(faostat.fao.org)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였음.

3) 중국의 보리, 밀, 옥수수는 중국정주식량도매시장(www.czgm.com) 자료를 이용하였음.

4) 우리밀 수매가격(농협)을 보리 수매/도매가격 비율을 적용하여 도매가격 산출함.

5) 일본의 밀과 보리의 도매가격은 경락가격을 쌀의 수매가격과 도매가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 중국, 일본의 도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ASEAN의 경우는 KOTRA에 해외시장조사를 의뢰한 결과자료를 활용하였음.

■ 양념채소류

건고추의 가격경쟁력은 ASEAN이 가장 높다(말레이시아 건고추는 중국보다 비싸고 필리핀의 건고추 가격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얀마의 가격이 매우 낮아 ASEAN 평균 가격이 낮게 나타남). 한국의 건고추 가격은 ASEAN의 13배, 중국의 5.5배 수준이다.

마늘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다. 중국의 마늘 가격은 일본의 2%, 한국의 15% 수준이다. ASEAN의 마늘 가격은 중국보다 3배 정도 비싸게 나타났으며, 특히 필리핀과 태국의 마늘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파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일본의 13%, 한국의 23%, ASEAN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ASEAN 국가 가운데 미얀마의 양파 가격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양파의 국가별 가격 차이는 마늘에 비해 적었다.

마늘과 양파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고, 건고추의 가격경쟁력은 ASEAN이 가장 높다. 특히 미얀마는 건고추, 양파 등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ASEAN 국가의 양념채소 가격은 회원국 간에 격차가 크고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경우 마늘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고, 태국과 필리핀의 양파 가격 또한 한국보다 비싸게 나타났다.

표 31. 동아시아 국가별 양념채소류 가격 비교

단위: 원/kg

항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건고추	한국	6,665	7,432	5,914	7,143	9,045	7,551	7,859	7,373
	중국	1,206	1,146	1,011	1,215	2,053	1,168	1,612	1,344
	ASEAN 평균	526	567	598	563	560	550	623	570
	미얀마	308	376	409	379	380	372	435	380
	말레이시아	2,331	2,385	2,226	2,020	2,251	2,000	1,965	2,168
	필리핀	1,278	1,330	1,201	1,168	1,065	1,075	1,176	1,185
마늘	한국	1,451	1,472	1,753	1,949	2,266	1,948	1,890	1,818
	중국	167	321	275	166	239	313	533	288
	일본	16,486	14,752	13,545	17,606	20,855	18,893	14,552	16,670
	ASEAN 평균	827	751	886	819	811	726	1,020	834
	미얀마	234	244	333	479	474	484	565	402
	말레이시아	649	818	773	622	665	642	882	722
	필리핀	2,770	2,336	2,190	1,692	1,386	1,772	2,438	2,083
	태국	927	888	1,195	1,080	1,090	831	1,382	1,056
양파	한국	495	397	344	820	549	489	689	540
	중국	135	103	117	170	135	66	147	125
	일본	1,151	1,065	616	989	1,125	1,139	842	990
	ASEAN 평균	391	523	453	518	464	396	459	458
	미얀마	53	63	148	127	264	121	181	137
	필리핀	599	878	538	679	504	584	612	628
	태국	521	628	672	747	624	484	585	609

자료: 한국, 중국, 일본의 도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ASEAN의 경우는 KOTRA에 해외시장조사를 의뢰한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음.

[illegible]

(표 32 계속)

항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포도	한국	1,960	2,080	2,685	3,400	4,132	3,465	3,732	3,065
	일본	12,673	11,919	7,272	14,878	6,892	13,427	-	11,177
	ASEAN 평균	1,136	1,018	1,117	1,052	917	1,112	1,237	1,084
	미얀마	154	258	330	379	437	466	522	364
	태국	1,136	1,018	1,117	1,052	917	1,112	1,237	1,084
감귤	한국	1,021	1,299	1,223	1,019	1,478	1,957	1,570	1,367
	중국	381	538	-	332	195	178	368	332
	일본	2,557	3,567	2,531	2,766	2,346	-	-	2,753
	ASEAN 평균	497	577	608	573	419	352	571	514
	말레이시아	747	861	753	732	709	663	667	733
	필리핀	396	323	601	322	378	287	258	366
	태국	500	585	608	581	420	354	583	519
오렌지	중국	-	1,167	1,257	546	-	-	-	990
	ASEAN 평균	1,040	929	838	608	618	563	526	732
	미얀마	185	282	409	488	562	642	704	467
	필리핀	1,040	929	838	608	618	563	526	732
파인애플	ASEAN 평균	95	107	106	100	83	74	65	90
	미얀마	463	757	853	943	968	978	1,043	858
	필리핀	192	207	188	179	149	133	124	167
	태국	28	29	29	29	28	25	25	28
바나나	중국	571	639	674	442	343	297	356	475
	ASEAN 평균	124	129	138	119	126	113	115	123
	미얀마	95	109	149	218	248	228	226	182
	필리핀	124	129	138	119	126	113	115	123

주 : 미얀마의 경우 포도, 오렌지, 바나나의 생산량이 미비하여 FAO의 생산량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ASEAN 가격평균시 제외시켰음.

자료: 한국, 중국, 일본의 도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ASEAN의 경우는 KOTRA에 해외시장조사를 의뢰한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음.

■ 육류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다. ASEAN의 쇠고기 가격은 중

국보다 30%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얀마의 쇠고기 가격은 중국의 43% 수준이다. ASEAN의 평균 쇠고기 가격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필리핀과 태국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쇠고기 가격은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돼지고기의 국가별 가격 차이는 쇠고기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ASEAN 평균보다 높으나 미얀마보다는 낮고 태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필리핀의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ASEAN 평균 가격이 높아졌다. 일본의 돼지고기 가격은 한국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한국의 45%, 일본의 22% 수준이다.

중국의 닭고기 가격은 한국과 일본의 50%, ASEAN의 75% 수준이다. ASEAN 국가 가운데 미얀마의 닭고기 가격이 가장 낮아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육류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ASEAN에 비해 쇠고기 가격은 75%, 돼지고기 가격은 33%, 닭고기 가격은 75% 수준이다. 한국은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이 ASEAN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쇠고기 가격은 한국의 2.8배, 돼지고기 가격은 2배 비싸다. 그러나 닭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이다.

표 33. 동아시아 국가별 육류 가격 비교

단위: 원/kg

항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쇠고기	한국	7,687	8,842	9,510	9,446	8,703	10,898	10,915	9,429
	중국	1,373	1,875	2,021	2,077	2,055	1,676	1,998	1,868
	일본	27,630	28,459	29,741	28,451	26,995	25,408	21,557	26,892
	ASEAN평균	2,202	2,435	2,422	2,450	2,629	2,445	2,473	2,437
	미얀마	301	381	518	951	1,184	1,138	1,186	808
	필리핀	3,188	3,408	3,341	3,110	3,310	3,247	3,346	3,279
	태국	2,239	2,641	2,648	2,614	2,715	2,443	2,419	2,531

(표 33 계속)

항목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돼지고기	한국	2,499	2,599	2,645	2,444	3,479	3,730	3,296	2,956
	중국	1,205	1,463	1,296	1,380	1,576	1,189	1,225	1,334
	일본	6,309	6,211	6,689	5,966	6,384	5,459	4,679	5,957
	ASEAN평균	2,027	2,117	2,097	2,187	2,189	2,087	2,077	3,924
	미얀마	367	442	665	1,021	1,171	1,180	1,288	876
	필리핀	2,612	2,801	2,665	23,858	2,703	2,591	2,591	5,689
	태국	1,216	1,315	1,353	1,212	1,549	1,480	1,369	1,356
닭고기	한국	2,356	2,528	2,149	1,854	2,481	2,469	2,162	2,286
	중국	948	1,168	994	1,112	1,248	940	1,070	1,069
	일본	2,603	2,644	2,487	2,571	2,682	2,319	2,006	2,473
	ASEAN평균	1,297	1,342	1,310	1,374	1,550	1,491	1,549	1,416
	미얀마	401	519	702	1,162	1,340	1,319	1,384	975
	필리핀	1,662	1,704	1,602	1,502	1,695	1,639	1,692	1,642

자료: 한국, 중국, 일본의 도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ASEAN의 경우는 KOTRA에 해외시장조사를 의뢰한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음.

종합적 경쟁력 평가

쌀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ASEAN의 경우 국가별로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국가도 있다. 역내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ASEAN에 비해 높으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RCA 지수는 ASEAN이 중국보다 높다. 역내 국가별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지수 분석에 의하면 ASEAN은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고, 중국은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EAN과 중국은 장립종과 중·단립종으로 분리된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단립종 시장에서는 중국이 ASEAN보다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동아시아 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보리 수출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리 경쟁력은 중국보다 낮다. 중국은 한국과 ASEAN 시장에 밀을 수출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밀 경쟁력은 국제 시장에서는 낮지만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두의 경우 동아시아 역내에서 ASEAN의 가격경쟁력은 가장 높지만 수출 잠재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대두에 있어서 ASEAN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우위 지수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자는 식물검역법에 의한 교역 규제가 많은 품목으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이 활발하지 못하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감자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특히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옥수수의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중국은 역내 국가들 가운데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으며, 한국과 ASEAN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50% 이상이다. 비교우위 지수로 평가할 때에도 국제시장에 대한 경쟁력은 물론 한국과 ASEAN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일은 식물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품목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가운데 교역이 가능한 국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온대성 과일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는 ASEAN으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열대성 과일의 경우 ASEAN이 동북아 국가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간의 온대성 과일 교역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상호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중국과의 교역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 및 검역 등 제도적 여건에 따라 온대성 과일은 동북아 국가들이 ASEAN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열대성 과일은 ASEAN 국가들이 동북아 국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중국은 온대성 과일의 가격경쟁력이 한국과 일본보다 높으나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제한되어 있어 잠재적

경쟁력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한국과 중국의 배, 중국의 사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ASEAN의 바나나도 RCA 지수는 1 이하이다. 감귤은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건고추의 가격 경쟁력은 ASEAN이 중국보다 높으나 시장 점유율 및 비교우위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 중국이 ASEAN보다 앞서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ASEAN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고, 한국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ASEAN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 마늘과 양파의 국제 경쟁력이 높은 역내 국가는 중국이다.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가격경쟁력 정도에 불과하다.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역내 국가는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쇠고기를 역내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역내에서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 및 ASEAN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보다 2배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위생조건에 의한 교역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닭고기의 경쟁력은 ASEAN이 중국보다 높다. ASEAN은 특히 일본 닭고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표 34. 주요품목별 동아시아 국가의 경쟁력 비교

품목	국가	가격경쟁력 (원/kg)	시장점유율(%)				RCA	CAC				CAI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쌀	한국	1,966		63.7	0.0	10.9	0.002		0.0	0.0	0.0		0.0	0.0	0.0
	중국	330	0.0		0.0	42.2	1.135	0.9		0.4	1.0	1.7		0.6	0.3
	일본	2,993	0.0	15.7		17.0	0.362	0.0	0.0		0.0	0.0	0.0		0.0
	ASEAN	451	0.0	6.5	0.2		5.126	0.1	0.9	11.7		0.2	0.4	18.3	
보리	한국	1,194		1.8	0.0	0.0	0.000		0.0	0.0	0.0		0.0	0.0	0.0
	중국	170	0.0		0.1	0.0	0.002	0.0		0.0	0.0	0.0		0.0	0.0
	일본	381	0.0	0.0		0.0	0.000	0.0	0.0		0.0	0.0	0.0		0.0
	ASEAN	521	0.0	0.0	0.0		0.002	0.0	0.0	0.0		0.0	0.0	0.0	
밀	한국	966		7.0	0.0	0.0	0.000		0.0	0.0	0.0		0.0	0.0	0.0
	중국	179	0.0		0.0	0.0	0.095	7.0		0.1	4.2	2.7		0.1	1.2
	일본	434	0.0	0.0		0.0	0.000	0.0	0.0		0.0	0.0	0.0		0.0
	ASEAN	395	0.0	2.5	0.0		0.003	0.0	0.0	0.0		0.0	0.0	0.0	
대두	한국	3,236		3.1	0.0	0.0	0.000		0.0	0.0	0.0		0.0	0.0	0.0
	중국	428	0.0		0.0	0.0	0.156	1.4		1.9	0.4	0.7		1.1	0.2
	일본	5,133	0.0	5.3		0.0	0.015	0.0	0.0		0.0	0.0	0.0		0.0
	ASEAN	337	0.0	0.5	0.0		0.010	0.0	0.0	0.0		0.0	0.0	0.0	

(표 34 계속)

품목	국가	가격경쟁력 (원/kg)	시장점유율(%)				RCA	CAC				CAI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감자	한국	710		0.0	3.7	0.0	0.001		0.0	0.0	0.0		0.0	0.0	0.0
	중국	115	0.0		0.0	0.0	0.194	0.0		0.0	6.6	0.0		0.0	7.0
	일본	1,230	0.0	0.0		0.0	0.002	0.0	0.0		0.0	0.0	0.0		0.0
	ASEAN	221	0.0	29.6	0.0		0.086	0.0	0.0	0.0		0.0	0.0	0.0	
옥수수	한국	1,317		56.5	0.0	0.8	0.000		0.0	0.0	0.0		0.0	0.0	0.0
	중국	158	0.0		0.0	0.1	1.922	6.3		0.3	2.3	0.8		0.1	1.4
	일본	-	0.0	3.3		0.1	0.000	0.0	0.0		0.0	0.0	0.0		0.0
	ASEAN	189	0.0	52.6	0.0		0.113	7.0	0.0	20.6		0.8	0.0	6.0	
사과	한국	3,350		0.0	16.7	0.0	0.082		0.0	0.9	9.0		0.0	60.7	3.5
	중국	393	0.0		0.1	0.1	1.074	0.0		0.0	4.9	0.0		0.0	2.3
	일본	4,514	11.6	0.0		0.0	0.117	0.0	0.0		50.9	0.0	0.0		22.3
	ASEAN	809	0.2	54.4	0.0		0.034	0.0	0.0	0.0		0.0	0.0	0.0	
배	한국	2,154		0.0	0.0	0.0	1.039		0.0	0.0	0.0		0.0	0.0	0.4
	중국	231	0.0		0.0	0.0	1.092	0.0		0.0	0.0	0.0		0.0	0.0
	일본	2,530	100	0.0		0.0	0.092	0.0	0.0		0.0	0.0	0.0		0.0
	ASEAN	2,260	2.4	0.0	0.0		0.047	0.0	0.0	0.0		0.0	0.0	0.0	

(표 34 계속)

품목	국가	가격경쟁력 (원/kg)	시장점유율(%)				RCA	CAC				CAI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포도	한국	3,065		0.0	0.0	0.0	0.004		0.0	0.0	0.0		0.0	0.0	0.0
	중국	-	0.0		0.0	0.1	0.022	0.0		0.0	4.7	0.0		0.0	5.7
	일본	11,177	0.0	0.0		0.0	0.004	0.0	0.0		0.0	0.0	0.0		0.0
	ASEAN	1,084	0.1	2.6	0.0		0.029	0.0	0.0	0.0		0.0	0.0	0.0	
감귤	한국	1,367		0.0	0.0	0.0	0.117		0.0	1.5	0.0		0.0	8.1	0.0
	중국	332	0.0		0.8	0.0	0.638	0.0		0.0	0.2	0.0		0.0	0.2
	일본	2,753	10.8	0.0		0.0	0.041	0.0	0.0		0.0	0.0	0.0		0.0
	ASEAN	514	0.3	2.2	0.1		0.023	0.0	0.0	0.0		0.0	0.0	0.0	
오렌지	한국	-		0.0	0.0	0.0	0.016		0.0	0.0	0.0		0.0	0.0	0.0
	중국	990	0.0		0.0	0.0	0.044	0.0		0.0	3.0	0.0		0.0	3.1
	일본	-	0.0	0.0		0.0	0.000	0.0	0.0		0.0	0.0	0.0		0.0
	ASEAN	732	0.0	3.0	0.0		0.028	0.0	0.0	0.0		0.0	0.0	0.0	
복숭아	한국	-		0.0	0.0	0.0	0.007		0.0	0.0	0.0		0.0	0.0	0.0
	중국	-	0.0		1.0	16.2	0.048	0.0		0.0	0.0	0.0		0.0	0.0
	일본	-	25.4	0.0		0.0	0.024	0.0	0.0		0.0	0.0	0.0		0.0
	ASEAN	-	0.3	16.5	0.0		0.004	0.0	0.0	0.0		0.0	0.0	0.0	

(표 34 계속)

품목	국가	가격경쟁력 (원/kg)	시장점유율(%)				RCA	CAC				CAI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바나나	한국	-		0.0	0.0	99.5	0.005		0.0	0.0	0.0		0.0	0.0	0.0
	중국	475	0.0		0.0	59.4	0.021	0.0		1.2	0.0	0.0		0.9	0.0
	일본	-	0.0	0.6		27.1	0.000	0.0	0.0		0.0	0.0	0.0		0.0
	ASEAN	123	0.0	0.0	0.0		0.899	3.0	3.6	267.0		2.8	4.5	182.9	
건고추	한국	7,373		97.0	0.8	0.0	0.482		0.0	1.6	0.0		0.0	1.7	0.0
	중국	1,344	10.8		23.1	6.1	4.107	2.5		0.6	3.0	1.1		0.7	0.7
	일본	-	10.4	62.1		2.2	0.020	0.0	0.0		0.0	0.0	0.0		0.0
	ASEAN	570	0.3	45.2	0.2		0.662	0.0	0.0	23.0		0.0	0.0	24.0	
마늘	한국	1,818		99.7	0.0	0.0	0.050		0.0	0.0	6.9		0.0	0.0	1.1
	중국	288	0.0		35.5	0.0	9.302	0.6		0.3	3.2	3.0		0.5	0.5
	일본	16,670	0.0	99.2		0.0	0.005	0.0	0.0		0.0	0.0	0.0		0.0
	ASEAN	834	0.5	74.6	0.0		0.355	0.0	0.0	0.0		0.0	0.0	0.0	
양파	한국	540		57.8	0.0	0.6	0.105		0.0	0.0	0.0		0.0	0.0	0.0
	중국	125	0.6		0.0	0.0	5.535	0.7		2.0	0.0	0.2		0.2	0.0
	일본	990	0.0	41.6		0.0	0.046	0.0	0.0		0.0	0.0	0.0		0.0
	ASEAN	458	0.0	0.0	0.0		1.087	0.0	0.0	0.0		0.0	0.0	0.0	

110 국가별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표 34 계속)

품목	국가	가격경쟁력 (원/kg)	시장점유율(%)				RCA	CAC				CAI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한국	중국	일본	ASEAN
쇠고기	한국	9,429		0.0	0.0	0.0	0.001		0.0	0.0	0.0		0.0	0.0	0.0
	중국	1,868	0.0		0.0	0.0	0.160	0.0		0.0	0.0	0.0		0.0	0.0
	일본	26,892	0.0	0.0		0.0	0.017	0.0	0.0		0.0	0.0	0.0		0.0
	ASEAN	2,437	0.0	0.3	2.4		0.002	0.0	0.0	0.0		0.0	0.0	0.0	
돼지고기	한국	2,956		0.0	0.4	0.0	0.073		0.0	1.3	7.0		0.0	0.3	19.1
	중국	1,334	0.0		0.0	0.0	0.273	0.2		0.0	0.9	0.1		0.0	2.3
	일본	5,957	0.0	0.0		0.0	0.001	0.0	0.0		0.0	0.0	0.0		0.0
	ASEAN	3,924	3.8	13.2	0.0		0.041	0.0	0.0	0.0		0.0	0.0	0.0	
닭고기	한국	2,286		5.1	0.0	35.1	0.016		0.0	1.8	0.0		0.0	0.9	0.0
	중국	1,069	0.0		0.1	0.5	1.932	0.1		0.7	0.3	0.1		0.4	0.3
	일본	2,473	0.3	0.0		26.3	0.005	0.0	0.0		0.0	0.0	0.0		0.0
	ASEAN	1,416	0.0	12.1	0.0		0.804	3.6	0.3	288.6		4.9	0.0	165.9	

주: 가격경쟁력은 도매가격기준 2000~06년 평균이며, 시장점유율, RCA, CAC, CAI는 2000~05년 평균임.

제 5 장

국가별 농산물 관세구조 분석

분석 대상국 및 방법

FTA 협상은 주로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지며 상품개방과 관련하여 중심을 이루는 협상 분야는 관세철폐이다. 시장개방 분야 협상은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Request)과 각각의 요청에 대한 제안(Offer)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국은 협상 대상국의 관세구조를 파악하고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고율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요청서를 작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여기서는 연구 대상국들의 농산물 관세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장개방 협상에 있어 국가별, 품목별 취약분야와 경쟁력 분야를 파악하고, 다음 장에서 논의할 시장개방 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국가는 이 연구에서 다루는 ASEAN+3 즉, 한국, 중국, 일본과 ASEAN 10개국으로 하였다. 관세율 자료는 한국과 ASEAN 10개국의 경우는 2007년에 나온 자료를 이용하였고, 중국과 일본은 2004년 기준 관세율표를 이용하였다. WTO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관세율표는 HS 6단위 또는 8단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별 관세율표를 입수하여 국가별로 그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를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HS10단위 수준의 관세율표가 이용되었다. 분석은 국가별로 입력된 자료를 엑셀에 의해 제표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균, 분포, 품목 수, 관세율 적용 방법 등을 계산하거나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장개방 협상이나 교역 등과 관련하여서는 HS 6단위 이하의 세분된 분석이 필요하나 HS 6단위 이하로 분류된 품목은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 관세율, 품목분류 등은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HS 6단위 이하에 대한 내용은 국가별 관세율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가별 관세체계

■ 한국

시장개방 추세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한-미 통상협상 타결 이후이다. 한-미 통상협상 결과로 한국은 1989~91년 기간에 243개 농림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조치를 취했다. 1989년 우리나라는 GATT와의 협의에서 GATT 18조 B항의 원용 중단에 합의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1992년부터 1997년까지 6년간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 품목(273 품목, 일명 BOP 품목)을 2차에 걸쳐 자유화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게 되었다. 1차 예시계획 이행 기간(1992~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차 예시계획에 포함되었던 품목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를 따르게 되었다.

단계적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의해 농림수산부문의 수입자유화율은 크게 높아졌다. 한-미 통상협상에 의한 1989~91년 예시계획에 의해 농림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1989년 76.1%에서 1991년 84.7%로 증가하였다. BOP 조항 원용중단에 의한 1992~94년 예시계획으로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율은 92.1%로 증가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 이행 이전인 1994년 우리나라의 농림산물 수입자유화율은 93.7%가 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은 UR 협상의 타결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림산물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되었다. 1995년도 농림산물 품목 수는 1,513개이며, 이 가운데 수입자동승인 품목은 1,446개

로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은 95.6%가 되었다. 1996년과 1997년에 일부 과채류와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1998년 수입자유화율은 98.5%로 증가하였다. 1998년도 농산물 품목 수는 1,644개로 이 가운데 수입자동승인 품목이 1,620개이다. 수입자동승인 품목이 아닌 24개 품목은 쌀과 쇠고기 관련 품목이다. 2001년에 쇠고기가 수입 자유화됨에 따라 수입 자동승인 품목이 아닌 것은 쌀 관련 16개 품목뿐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 한국의 농림산물 수입자유화율은 99.1%를 유지하고 있다.

BOP 품목⁶으로 UR 협상에 의해 새로운 양허세율을 설정한 품목은 108개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들의 관세율은 9.0~887.4%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유제품, 양념채소, 과실류, 견과류, 유지작물, 매니옥 등이 여기에 속한다. BOP 품목은 양허품목의 경우 일정 기간의 수입쿼터제도 유지와 관세율 인상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양허가 안 된 품목은 상한설정(Ceiling Binding) 관세설정 방식으로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한국은 UR 농업협상의 이행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로 관세는 1995년부터 10년간 평균 24%(선진국의 2/3 수준)를 감축하였다. 한국은 UR 협상에서 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Mark-up) 대상 품목을 97개로 확대하고 종량세 부과 대상 품목 63개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농산물의 UR 양허관세율은 0%에서 887.4%까지 분포의 폭이 넓고 관세화 과정에서 다양한 관세율이 설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UR 협상에서 종량세 도입을 인정받아 2008년 현재 76개 품목의 양허관세에 대하여 종가종량선택세를 시행하고 있다. 종가종량선택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세액이 높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로 주요 대상 품목은 버섯류, 채소류, 견과류, 양념채소(건고추, 마늘, 생강 등), 참깨, 대두, 보리, 당면, 도토리 등 부피가 크거나 저품질의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⁶ UR 협상 타결 이전에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들로, 1989년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GATT 18조 B항)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했던 품목들을 말한다.

UR 협상에서 관세화에 의해 양허관세가 설정된 품목은 118개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0~853.6%이며 곡물류(전분 포함)와 인삼, 농업용 종자 등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던 품목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양허관세율은 대부분 기본세율보다 높다. UR 협상에서 관세화로 전환된 품목은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농산물의 경우 밀과 곡물박류, 종자를 제외하고는 중심세율인 8% 이하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양허관세율이 200% 이상 적용되는 품목은 대부분의 곡물류와 양념채소류, 분유, 참깨 등이다. 특히 곡물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매우 낮으나 양허관세율은 수백 %에 달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 낮은 20~60%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과자류, 면류, 베이커리제품, 설탕과자, 장류 및 소스 등 비교적 고차가공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비교적 낮은 양허관세율인 10%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즙음료 정도이다. 반면 6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두부, 조제육류, 일부 주류, 일부 과실주스 등으로 국내 원료농산물의 생산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관세제도

한국은 1,452개 농산물 가운데 1,376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 76개 품목은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서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선택세를 사용하고 있다.

농산물 관세율

한국의 농산물 품목 수는 1,452개이다. HS 2단위로 볼 때 품목 수가 많은 것은 2류(육류, 94개 품목), 7류(채소, 131개 품목), 8류(과실 및 견과류, 78개 품목), 12류(유지작물 등, 92개 품목), 15류(동물성 유지, 91개 품목) 등이다. 반면 동물 생산품, 기타 식물성 생산품, 산수목, 식물성 엑스, 코코아 등의 품목 분류는 비교적 단순하다.

한국의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율은 63.2%이다. 품목류별로 평균 관세율이 100% 이상 되는 고관세 품목으로 채소류(HS 07류, 평균 123.5%), 곡류(HS 10류, 평균 218.0%), 맥아·전분·아눌린 등의 제분공업 생산품(HS 11류, 평균 314.8%), 채유용종자·과실·각종종자(HS 12류, 평균 117.9%) 등이 있다.

표 35. 한국의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수 및 평균 관세율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	구분	품목수	평균 관세율 (%)
전체	1,452	63.2	18류	33	27.4
01류	48	18.8	19류	50	33.7
02류	94	22.5	20류	108	42.7
04류	51	63.6	21류	64	63.7
05류	53	14.4	22류	52	32.8
06류	74	20.9	23류	44	17.9
07류	131	123.5	24류	25	59.2
08류	78	81.8	29류	2	17.8
09류	36	76.9	33류	30	40.2
10류	32	218.0	35류	28	87.7
11류	45	314.8	38류	2	15.5
12류	92	117.9	41류	28	5.3
13류	25	107.0	43류	12	15.3
14류	21	9.1	50류	16	25.7
15류	91	28.5	51류	11	2.0
16류	24	56.8	52류	10	2.0
17류	33	31.2	53류	9	2.0

주: 평균 관세율은 종가세 기준이며, 선택세의 종가세도 포함한 것임.

자료: 한국, 농림축산식품품분류 및 관세율, 2007.

HS 4단위 수준에서 평균 관세율이 100%를 넘는 품목은 모두 27개이다 <부표 6>. 산동물, 육류, 화훼류, 전분을 제외한 가공식품에 속하는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100%를 넘지 않는다. 축산물 가운데 분유와 연유(HS 0402), 천연꿀(HS 0409)이 각각 141%와 243%의 고율관세를 나타냈다. 채

소(HS 07류) 가운데에서는 매니옥과 고구마를 포함하는 0714호의 평균 관세율이 437%로 가장 높다. 그밖에 채소류 가운데 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감자(HS 0701) 304%, 마늘/양파(HS 0703) 156%, 녹두/팥 등(HS 0713) 177% 등이다. 과일류에 있어서는 밤과 잣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속해있는 0802호의 평균 관세율이 137%에 달하며, 0813호의 관세율은 대추의 관세율이 611.5%나 되기 때문에 평균 관세율이 129%로 높다.

09류(차/향신료/커피) 가운데 평균 관세율이 100%를 넘는 품목은 녹차/홍차(HS 0902) 287%, 건고추/후추(HS 0904) 145% 등이다. 한국은 곡물의 관세율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곡물(HS 10류)과 곡물 가공품(HS 11류)에 속하는 품목은 평균 관세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많다. 보리(HS 1003), 귀리(HS 1004), 옥수수(HS 1005), 쌀(HS 10067), 수수(HS 1007), 메밀(HS 1008) 등 밀을 제외한 주요 곡물류에는 100%를 넘는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11류 가운데 평균 관세율이 100%가 안 되는 품목은 밀가루(HS 1101) 등 일부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12류(유지작물/인삼) 가운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두(HS 1201) 487%, 땅콩(HS 1202) 231%, 인삼(HS 1211) 242% 등이다. 13류(식물성 엑스) 이하의 품목 가운데 평균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은 1302호(인삼 엑스 등)와 3505호(전분 등)로 국한되어 있다.

비종가세 현황

한국은 비종가세 가운데 선택세를 운용하고 있다. 농산물 1,452개 세번 중에서 76개가 선택세이다. 이에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천연꿀, 버섯류, 임산물과 생사 등이 있다.

⁷ 쌀은 관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허관세율을 알 수 없다. 다만, 쌀의 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관세율은 100%를 상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평균 관세율을 100%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표 36. 한국의 선택세 품목 현황

품목	개수	품목	개수
0409	1	1003	2
0703	3	1201	2
0709	11	1207	1
0710	1	1515	1
0711	6	1701	2
0712	18	1902	1
0714	1	2003	3
0802	6	2103	1
0810	1	2306	1
0813	2	2308	1
0904	2	5001	1
0910	1	5002	7
계		76	

자료: 한국, 농림축산물품분류 및 관세율, 2007.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한국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10% 미만과 20~5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관세율 10% 미만인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49%인 701개이고, 20~50% 미만인 관세 품목은 33%로 470개이다. 한국은 2014년까지 쌀 관련 16개 세번에 대하여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다.

■ 중국

관세제도

해관총서(CGA)가 관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17%의 증치

세(부가가치세)도 징수한다. 관세의 종류는 현재 일반관세와 최소관세 또는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관세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관행에 따라 국가 그룹별로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중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ASEAN 개도국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였다.

관세평가는 2002년에 수출입관세법을 개정해 이전의 최소가격 방식에서 WTO 협정이 제시하는 거래가격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소가격 방식은 신고된 수입가격을 관세최소가격 데이터베이스 상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해 수입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 관세 평가방식은 투명하지 않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새로운 관세 평가방식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용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율을 감축하고 있다.⁸ 가입 첫해인 2002년에 관세품목의 73%에 해당하는 5,300개 품목에 대해 3%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져 관세율 평균이 12%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WTO 가입할 때에 40~60%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까지 낮추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곡물, 면화, 식용유, 양모,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Traffic Rate Quota: TRQ)으로 양허했다. TRQ 품목의 쿼터 내 관세율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편이다.

중국은 WTO 가입 협상에서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하여 TRQ 물량을 설정하였다. 관세할당 물량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품목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배정하고, 국영기업이 쿼터 물량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목별 TRQ 물량은 다음과 같다. ① 밀: 730만 톤(2000년)에서 960만 톤으로 확대(2005년), ② 쌀: 266만 톤에서 532만 톤으로 확대, ③ 옥수수: 450만 톤에서 720만 톤으로 확

⁸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201/07/eng20020107_88176.shtml.

대, ④ 대두유: 170만 톤에서 730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TRQ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점차 시장기능이 강화된다. ① 밀은 국영무역 비율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90% 수준 유지, ② 옥수수는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 75%에서 2004년 60%로 축소, ③ 쌀은 국영무역 비중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0% 수준 유지, ④ 대두유의 국영무역 비중은 2000년 50%에서 2004년 10%로 축소되었다.

중국은 대부분의 농산물에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전체의 99.6%인 1,759개 품목이다. 종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15.9%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비종가세는 주로 종량세 형태이며 육류(HS 0207, 5개), 동물의 장기(HS 0504, 1개), 맥주(HS 2203 1개) 등이다.

농산물 관세율

품목류(HS 2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음)별로 볼 때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육류(HS 2류, 평균 18.9%), 과일 및 견과류(HS 8류, 평균 18.0%), 곡물(HS 10류, 평균 33.6%), 밀가루 및 전분(HS 11류, 평균 27.1%), 동물성유지(HS 15류, 평균 19.0%), 당류(HS 17류, 평균 32.2%), 곡물 및 곡분의 조제품(HS 19류, 평균 19.6%), 채소 및 과실의 조제품(HS 20류, 평균 20.5%), 기타 조제식료품(HS 21류, 평균 22.2%), 음료 및 주류(HS 22류, 평균 27.6%), 담배(HS 24류, 평균 32.3%) 등이다. 특히 높은 과세율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곡물, 당류, 담배 등으로 평균 관세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품목류별 관세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중국의 관심품목은 육류, 밀가루 및 전분, 곡물, 당류, 조제식품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담배, 주류 등은 자국 산업보호 이외에도 국민 건강이나 사치품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품목은 산동물(HS 01류, 평균 6.2%), 화훼류(HS 06류, 평균 7.6%), 식물성 생산품 또는 조제품(HS 12류, 14류), 조제사료(HS 23류, 평균 5.3%) 등이다.

표 37. 중국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 체	15.90	18류	12.69
01류	6.22	19류	19.59
02류	18.89	20류	20.46
04류	15.67	21류	22.23
05류	11.02	22류	27.58
06류	7.58	23류	5.34
07류	11.74	24류	32.31
08류	18.03	29류	11.00
09류	14.23	33류	19.15
10류	33.60	35류	10.79
11류	27.11	38류	12.00
12류	9.52	41류	8.16
13류	14.07	43류	19.64
14류	10.36	50류	8.40
15류	19.03	51류	13.09
16류	13.19	52류	16.00
17류	32.19	53류	5.67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China, Customs Tariff, 2004.

축산물 가운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육과 식용 설육, 비계 등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등도 전체 평균 관세율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어 품목간 관세격차가 크지 않다. 낙농품 가운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조란과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각각 20.0%와 19.2%이다. 밀크와 크림, 변성유장, 버터 등도 전체 평균 관세율과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화훼류의 관세율은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8% 포인트 정도 낮다. 특히 수목과 묘목은 평균 관세율이 6%로 매우 낮다. 화훼류 가운데에서는 절화

(HS 0603)가 16.5%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식물의 잎이나 가지(HS 0604)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14.3%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여 비교적 평이한 관세가 부과된다.

채소류는 대부분의 품목(예: 건고추, 마늘, 양파, 파, 토마토, 배추, 무, 버섯, 오이, 당근, 상치 등)에 10~13%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건조한 채두류(HS 0713)의 경우 3.0%의 매우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과실류(HS 08류)의 경우 평균 관세율은 18.0%로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품목(또는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 분포는 11~30%로서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냉동과실과 견과류(HS 0811)와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HS 0812)로 평균 관세율은 30%이며 신선 과일에 비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국제적으로 교역 비중이 높은 사과, 배, 오렌지, 자두,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의 관세율은 대부분 동일하다.

곡물류의 평균 관세율은 전체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고 품목간 관세율 차이도 매우 크다. 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쌀로 평균 관세율이 45%이다. 다음으로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밀과 메슬린, 옥수수로 각각 44.7%와 29.8%이다. 중국 농업에 있어 쌀은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그밖에 수수, 귀리 등은 1%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곡분, 전분(HS 11류)의 평균 관세율은 27.1%로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특히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에 대해서는 46%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주류(HS 22류)의 평균 관세율은 27.6%이나 품목간 관세 격차가 크다.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베르못으로 평균 관세율은 65%이다. 다음으로 기타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 등)도 53.6%의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제조담배(HS 2403)의 경우 57%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HS 2401)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부표 7>.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중국의 미소관세(10%

미만의 관세)품목은 전체의 23.3%인 410개이다. 중국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10~50% 미만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해보면 관세율 10~20% 사이에 있는 품목이 748개로 전체의 42.5%에 달한다. 관세율 20~50% 미만 구간에 분포하는 품목도 539개(전체의 30.7%)이다. 따라서 관세율 10~50% 미만 구간에 분포하는 농산물은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100%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은 없고, 50~100% 미만의 비교적 높은 관세부과 대상 농산물은 전체의 3.5%인 62개 품목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하여 50% 미만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0%이상의 높은 관세 품목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 관세율은 0%에서 71%까지 다양하다. 10% 이내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산동물과 화훼 및 산수목, 채유용 종자, 조제사료 등이다. 농산물 전체 가운데 42.5%에 해당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10~20% 사이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육류, 낙농품, 산수목 및 화훼, 채소류, 과일류, 육·어류 조제품 등이다.

비교적 높은 관세율로 볼 수 있는 20~50%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모두 539개로 전체의 1/3이 된다. 역기에 속하는 품목은 육류, 낙농품, 과일, 밀가루 및 전분, 채소 및 과실의 조제품, 동물성 유지 등이다. 관세율이 50~100% 사이에 있는 품목은 62개로 전체의 3.5% 수준이다. 여기에 속하는 품목은 곡물, 당류, 담배, 주류 등이다.

■ 일 본

관세제도

일본은 관세법과 관세 정률법을 근간으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적용하는 관세율 종류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관세 정률법이 정한 세율로서 관세행정에서 기본이 되며, 장기간

적용된다. ② 잠정세율: 잠정세율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정한 세율로 단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③ 협정세율: 협정세율은 WTO 협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따라 양허한 세율로 잠정세율이나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나 UR 협상에서 수입부과금(Mark-up)이 인정된 품목은 잠정이나 기본보다 우선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④ 특혜세율: 특혜세율은 개도국이나 개도국 지역이 원산지인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혜세율의 수준은 보통 선진국 물품에 징수하는 세율보다 낮다. 특혜세율은 잠정관세조치법(TTML) 제8조 2항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세율이다.

이러한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 순서이다. 관세율표는 1988년부터 일본,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HS 조약’ 또는 ‘상품의 명칭 및 분류를 통일하는 국제조약’에 기초한다. 관세 평가제도 하의 과세가격은 도매가격에 운반비와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이 된다.

특혜관세 제도는 개도국이나 개도국이 속한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소득 증대, 공업화 촉진, 경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혜세율은 보통 최혜국(MFN)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다. 농수산물(HS 1~24류)에 대해서는 ‘특혜세율 적용 목록(positive list)’ 방식에 따라 73개 품목(HS 4단위 기준)을 선정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실행세율보다 10~100% 인하된 수준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특혜세율 공여는 면책조항(escape clause)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특정시기에 특정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해 일본의 국내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에는 특혜 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관세율을 설정해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첫째, 종가세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관세율의 형태로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종가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 간 품질 격차가 크거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 품목들이다. 일본의 양허 관세율표에 따르면 종가세 적용대상 품목의 비중은 83%이다. 둘째, 종량세는 수입

품의 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과 수입가격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종량세의 대상 품목은 주로 상품 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셋째,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친 것으로 선택세와 복합세로 나뉜다. 선택세는 같은 품목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정해 이 가운데 보통 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다. 넷째, 차액관세는 수입품목의 가격과 정해진 기준가격 사이의 차액을 세액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돼지고기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섯째, 슬라이드(slide) 관세는 국제시황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큰 품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적절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바나나, 오렌지, 자몽, 포도 등 과실류에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 부과 형태

일본의 농산물 품목 수는 1,832개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종가세 부과 대상 농산물 1,523개의 평균 관세율은 10.7%이다. 비종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파악할 수 없다(비종가세를 종가세로 환산하여 추정할 경우 24.1%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⁹). 비종가세 부과 형태는 종량세가 170개로 가장 많고 복합관세, 선택세는 각각 58개, 51개이고, 특수 형태의 관세는 계절관세, 차액관세, 면세 등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30개 품목이 해당된다.

일본은 낙농제품, 쌀과 기타 곡물, 채소 및 서류, 생사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 탈지분유의 경우 비슷한 지방 함유율의 제품이라도 급식용, 사료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쿼터가 적용된다.

⁹ 최세균 외,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448. 2002.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0~35% 정도의 종가세 형태로 결정되며, 여기에다가 kg당 400~1,200엔 정도의 종량세를 더해 쿼터 초과 관세율을 적용한다.

쌀을 제외한 곡물과 채소의 경우 0~40% 정도의 쿼터 내 관세율을 적용한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종량세 형태로 곡물의 경우 kg당 50~120엔, 채소의 경우 350엔이 부과된다. 생사, 땅콩, 서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쿼터 내 관세율은 7.5~40% 정도이다. 쿼터 초과 관세율은 kg 당 600~7,000엔이다.

쌀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 되면서 수입물량 제한이 사라졌다. 적용 관세율은 톤당 1999년에 351,170엔(2,922달러), 2000년에 341,000엔(2,837달러)으로 정해졌다. OECD와 WTO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세율(ad valorem equivalents, AVEs)에 따르면 HS 6단위 기준으로 낙농제품의 평균 쿼터 초과 관세율은 각각 250%와 476%이며, 곡류와 채소의 경우 각각 248%와 490%로 나타났다.

농산물 관세율

품목류(HS 2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음)별로 볼 때, 육류, 당류 및 설탕과자의 관세율은 전체 평균 관세율(10.7%)과 비슷한 수준이다. 관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품목류로는 곡물류, 육가공품, 코코아와 조제품, 조제식료품 등이 있으며, 특히 유제품과 베이커리제품의 관세율은 20% 정도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높은 편이다. 따라서 품목류별 관세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일본의 관심품목은 육류, 유제품, 곡물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베이커리제품, 당류, 조제식료품 등은 산업보호보다는 국민 건강 등의 목적으로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료 농산물에 비해 가공품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표 38. 일본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 체	10.68	18류	18.82
01류	0.38	19류	20.22
02류	10.85	20류	15.88
04류	21.84	21류	17.38
05류	0.24	22류	6.29
06류	0.43	23류	0.52
07류	6.08	24류	5.09
08류	7.07	29류	9.90
09류	3.47	33류	1.45
10류	1.50	35류	6.07
11류	17.38	38류	-
12류	2.16	41류	3.30
13류	2.79	43류	0.35
14류	1.94	50류	0.00
15류	3.89	51류	0.00
16류	17.78	52류	0.00
17류	11.99	53류	0.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보다 높은 관세율을 보이는 품목군은 육류(쇠고기, 식용설육 등), 낙농품(밀크와 크림 등), 과일 및 조제과일(사과, 배, 냉동 및 조제 과일 등), 차류(녹차, 홍차 등), 전분 및 밀가루(곡분, 가공곡물 등), 동식물성 유지(마가린 등), 육류조제품(소시지 등), 당류(당밀, 유당 등), 코코아 조제품, 곡물 및 베이커리제품 등이다. 일본은 주요 농산물 중에서 축산물과 낙농품 및 곡물조제품, 베이커리제품 등에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부표 8>.

표 39. 일본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기타	
품목	품목 수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품목	품목수
0101	2	1501	1	0401	4	0408	2	0103	1
0102	2	1507	3	0402	12	1005	2	0203	6
0103	1	1508	3	0403	7	1513	2	0206	2
0203	6	1512	8	0404	12	1515	2	0210	4
0206	2	1514	6	0405	5	1702	17	0703	1
0210	2	1515	9	1806	2	2009	15	0803	1
0402	4	1517	1	1901	6	2106	3	0805	1
0712	1	1701	6	2101	4	2204	3	0806	1
0713	7	1702	2	2106	4	2206	1	0812	3
1001	4	1703	4	2309	2	2208	1	1512	2
1003	2	1901	12		58	3505	2	1602	3
1005	1	1902	7			3809	1	5002	5
1006	4	1904	10						
1008	1	2008	4						
1101	1	2106	4						
1102	3	2204	4						
1103	8	2205	2						
1104	9	2206	3						
1107	4	2207	2						
1108	7	2208	3						
1202	2	2309	2						
1212	1								
계	74		96		58		51		30
총계	170				58		51		30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10% 미만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843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가 해당된다. 반면 100% 이상의 고율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분석대상 품목에서는 없다(고율

관세는 대부분 종량세 부과 품목임). 나머지 품목에서 20% 미만인 품목은 299개로 약 20%에 해당하고, 20~5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376개 품목, 50~10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5개이다.

■ 브루나이

관세부과 형태

브루나이는 2,064개 농산물 가운데 1,966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98개 품목은 종량세가 적용된다. 종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0.2% 이다.

농산물 관세율

품목류(HS 2단위 기준)별로 볼 때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기타조제식료품(HS 21류, 평균 0.4%)으로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있고, 조제향료류(HS 33류, 평균 3.2%)로는 메이크업용 제품 및 기초화장용 제품¹⁰과 두발용 제품이 있으며, 모피류(HS 43류, 평균 4.5%)로는 모피의류 및 기타 모피제품과 인조모피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의 품목들은 모두 관세율이 0%이다<부표 9>.

비종가세 현황

브루나이는 비종가세 가운데 종량세를 운용하고 있다. 종량세 부과 품목은 98개로 음료 및 주류, 담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HS 2207, 2208)이 24개로 다른 품목에 비해 많다.

¹⁰ 의약품은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의미한다.

표 40. 브루나이의 종량세 품목 현황

품목	개수	품목	개수
0901	8	2207	1
0902	8	2208	23
2106	8	2401	12
2203	2	2402	3
2204	11	2403	10
2205	4	3302	2
2206	6		

자료: ASEAN사무국, Brunei Darussalam's 2007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브루나이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1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99%인 1,962개에 달한다.

■ 캄보디아

관세부과 형태

캄보디아는 2,064개 농산물 전체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 비종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다. 평균 양허관세율은 15.1%이다.

농산물 관세율

품목류(HS 2단위 기준)별로 볼 때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육류(HS 02류), 낙농품 및 기타식용의 동물성생산물(HS 04류), 맥아·전분·아눌린 등의 제분공업생산물(HS 11류), 모피류(HS 43류) 등이 있다. 특히, 육·어류 및 코코아, 채소·과실 등의 조제품과 음료 및 주류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에 비해 30%대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부표 10>.

표 41. 캄보디아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15.1	18류	32.6
01류	9.0	19류	15.2
02류	34.2	20류	33.7
04류	26.3	21류	16.5
05류	12.7	22류	34.5
06류	13.0	23류	8.6
07류	5.9	24류	24.8
08류	7.0	29류	11.1
09류	15.6	33류	28.8
10류	6.4	35류	30.6
11류	27.1	38류	6.7
12류	16.1	41류	14.6
13류	16.3	43류	29.0
14류	15.0	50류	7.0
15류	7.0	51류	7.0
16류	29.6	52류	7.0
17류	7.0	53류	7.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Cambodia's 2007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캄보디아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1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61%인 1,259개이며, 나머지 품목은 10~50%에 분포하고 있다. 5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무하다.

■ 인도네시아

관세부과 형태

인도네시아는 1,969개 농산물 가운데 1,952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 17개 품목은 종량세를 적용한다. 종량세 부과 품목으로는 쌀이 9개로 가장 많으며 그밖에 곡분,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자당이 있다.

농산물 관세율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8.9%로 낮은 편이다. 품목류(HS 2 단위 기준)별로 볼 때, 화훼류(HS 06류),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HS 18류)과 기타조제식료품(HS 21류)의 관세율은 10~20%대로 평균 관세율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음료 및 주류(HS 22류)의 관세율은 108.9%로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2류에 해당하는 고율 관세 품목으로는 포도주 및 포도즙, 발효주(사과술, 배술 등), 에틸알코올(변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80/100 미만) 등이 있다<부표 11>.

표 42. 인도네시아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8.9	18류	12.5
01류	2.2	19류	6.2
02류	5.3	20류	5.8
04류	5.5	21류	21.6
05류	3.9	22류	108.9
06류	13.7	23류	2.3
07류	4.9	24류	10.7
08류	5.5	29류	3.4
09류	4.8	33류	14.3
10류	3.1	35류	4.5
11류	5.0	38류	5.6
12류	4.0	41류	1.2
13류	4.7	43류	7.5
14류	2.1	50류	6.3
15류	5.1	51류	6.4
16류	5.7	52류	8.4
17류	5.9	53류	6.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Indonesia's 2007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인도네시아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1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94%인 1,830개에 달한다. 관세율 10~100% 미만인 품목은 77개인 4%로 미미하며,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도 45개인 2%에 불과하다.

■ 라오스

관세부과 형태

라오스는 전체 농산물 2,050개 품목에 대하여 모두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량세 등의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전혀 없다.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4.3%이다.

품목별 관세율

품목류(HS 2단위 기준)별로 볼 때 관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육류(HS 02류), 과일류(HS 08류), 커피·차·마태·향신료(HS 09류), 식물성 조제품 및 동물성 유지(HS 14류), 육·어류 조제품(HS 16류), 채소·과실의 조제품(HS 20류), 음료 및 주류(HS 22류) 등으로 이러한 품목들은 전체 평균 관세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특히 채소류(HS 07류)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39.6%로 가장 높다<부표 12>.

표 43. 라오스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14.3	18류	10.0
01류	9.7	19류	15.6
02류	30.0	20류	30.0
04류	11.2	21류	10.8
05류	9.9	22류	33.2
06류	13.3	23류	5.0
07류	39.6	24류	25.9
08류	31.9	29류	5.0
09류	27.1	33류	10.3

(표 43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10류	5.0	35류	5.5
11류	5.0	38류	7.4
12류	9.8	41류	19.2
13류	13.3	43류	20.0
14류	20.0	50류	6.7
15류	10.4	51류	7.2
16류	28.5	52류	8.1
17류	13.1	53류	6.2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Lao's 2007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할 때, 라오스의 농산물은 전체 품목이 관세율 5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10% 미만의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42%인 865개이며, 50% 이상의 관세 품목은 전무하다.

■ 말레이시아

관세부과 형태

말레이시아는 전체 농산물 2,466개 품목 가운데 96%인 2,364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 102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와 복합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종량세 부과품목은 87개이며, 나머지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복합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율

브루나이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3.4%로 매우 낮은 편이다. 곡물·곡분 조제품, 화학공업생산물, 견의 평균 관세율은 3%대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류로는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HS 18류), 기타조제식료품(HS 21류), 음료 및 주류(HS 22류), 면(HS 52류) 등이 있다. 특히 곡류(HS 10류)는 평균 관세율이 21.7%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높은데, 이는 쌀(HS 1006)의 관세율이 40%로 높기 때문으로 쌀을 제외한 곡류의 관세율은 0% 이다<부표 13>.

표 44. 말레이시아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3.4	18류	13.7
01류	0.0	19류	3.9
02류	0.0	20류	5.8
04류	4.4	21류	11.5
05류	0.0	22류	15.5
06류	0.0	23류	0.0
07류	1.0	24류	종량세
08류	6.1	29류	0.3
09류	1.4	33류	2.7
10류	21.7	35류	9.8
11류	0.4	38류	3.0
12류	0.5	41류	0.9
13류	0.0	43류	0.0
14류	0.0	50류	3.1
15류	2.4	51류	0.0
16류	6.9	52류	9.7
17류	2.8	53류	0.0

자료: ASEAN사무국, Malaysia's 2007 CEPT Package.

비종가세 현황

말레이시아는 비종가세 가운데 종량세와 복합세를 운용하고 있다. 종량세 부과 품목은 87개로 맥주(HS 2203), 포도주 및 포도즙(HS 2204), 사과 · 배 · 배 · 미이드(봉밀와인) 등의 발효주(HS 2206),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HS 2207, 2208),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HS 2401) 등이 있다. 복합세 부과 품목은 15개로 바나나(HS 0803),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망고(HS 0804), 멜론과 파파야(HS 0807), 기타신선과실(HS 0810)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비종가세는 주류와 담배 그리고 과일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말레이시아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품목	종량세	복합세	합계
0803	-	2	2
0804	1	3	4
0807	-	4	4
0810	-	5	5
2203	2	-	2
2204	11	-	11
2205	4	-	4
2206	11	-	11
2207	4	-	4
2208	24	-	24
2401	12	-	12
2402	4	1	5
2403	14	-	14
합계	87	15	102

자료: ASEAN사무국, Malaysia's 2007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말레이시아의 농산물은 다른 ASEAN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관세율 1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92%인 2,185개에 달한다. 나머지 품목은 관세율 10~50% 미만이며, 50% 이상의 관세 품목은 전무하다.

■ 미얀마

관세부과 형태

미얀마는 전체 농산물 2,064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종량세 등의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전무하다.

농산물 관세율

미얀마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6.6%로 낮은 편이다. 품목류(HS 2단위 기준)별로 볼 때, 식물성 조제품 및 동물성 유지, 당류와 설탕과자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6.0%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육류(HS 02류), 채소류(HS 07류), 과일류(HS 08류)와 조제품 등이 있다. 조제품으로는 육·어류 조제품(HS 16류), 코코아 조제품(HS 18류), 곡물·곡분 조제품(HS 19류), 채소·과실의 조제품(HS 20류) 등이 있다. 특히 음료 및 주류(HS 22류)의 평균 관세율은 29%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부표 14>.

표 46. 미얀마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6.6	18류	17.4
01류	0.0	19류	11.6
02류	14.0	20류	15.0
04류	6.3	21류	14.0
05류	4.5	22류	29.3
06류	3.3	23류	3.0
07류	10.4	24류	23.8
08류	14.4	29류	1.0
09류	6.0	33류	8.7
10류	2.4	35류	2.9
11류	4.8	38류	1.2
12류	2.3	41류	7.0
13류	4.3	43류	8.5
14류	6.0	50류	10.8
15류	2.5	51류	7.1
16류	11.7	52류	3.4
17류	6.0	53류	1.8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Myanmar's 2007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미얀마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1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72%인 1,492개에 달한다. 관세율이 10~20%인 품목은 508개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50% 이상의 관세 품목은 전무하다.

■ 필리핀

관세부과 형태

필리핀은 2,193개 농산물 전체 품목에 대하여 모두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없다.

농산물 관세율

필리핀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8.7%로 낮은 편이다. 품목류(HS 2단위 기준)별로 볼 때 과실류, 제분공업생산물(맥아, 전분, 아눌린 등), 조제사료, 면의 평균 관세율은 8%대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슷하다. 전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으로는 산동물(HS 01류), 육류(HS 02류), 채소류(HS 07류), 곡류(HS 10류)와 조제품(육·어류 조제품, 곡물·곡분 조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등이 있다. 특히, 육류의 평균 관세율은 28%로 전체 평균 관세율의 3배 가까이 되는데, 이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관세율이 각각 35%와 39%로 높기 때문이다<부표 15>.

표 47. 필리핀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8.7	18류	5.6
01류	19.5	19류	10.1
02류	28.0	20류	9.3
04류	3.3	21류	10.0
05류	2.8	22류	9.9
06류	4.3	23류	8.3

(표 47 계속)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07류	14.6	24류	6.4
08류	8.1	29류	2.1
09류	16.9	33류	4.8
10류	29.2	35류	3.2
11류	8.9	38류	5.3
12류	3.8	41류	2.4
13류	2.4	43류	3.0
14류	3.4	50류	1.3
15류	7.3	51류	1.0
16류	23.8	52류	8.7
17류	20.8	53류	4.9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Philippines' 2007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필리핀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다른 ASEAN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세율 1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81%인 1,782개에 달한다. 나머지 품목은 관세율 10~100% 미만에 분포하며,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전무하다.

■ 싱가포르

관세부과 형태

싱가포르는 전체 농산물 2,064개 품목 가운데 99.7%인 2,058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 6개 품목은 종량세를 적용한다.

농산물 관세율

싱가포르의 비종가세를 제외한 농산물 품목들의 평균 관세율은 모두 0%로, 이는 관세장벽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8. 싱가포르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0.0	18류	0.0
01류	0.0	19류	0.0
02류	0.0	20류	0.0
04류	0.0	21류	0.0
05류	0.0	22류	0.0
06류	0.0	23류	0.0
07류	0.0	24류	0.0
08류	0.0	29류	0.0
09류	0.0	33류	0.0
10류	0.0	35류	0.0
11류	0.0	38류	0.0
12류	0.0	41류	0.0
13류	0.0	43류	0.0
14류	0.0	50류	0.0
15류	0.0	51류	0.0
16류	0.0	52류	0.0
17류	0.0	53류	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Singapore's 2006 CEPT Package.

비종가세 현황

종량세 부과 품목은 6개로 맥주와 에틸알코올(변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 80/100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 HS 4단위 기준으로 2203호에서 2개 품목, 2208호에서 4개 품목이 종량세 부과 대상이다.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농산물은 2,058개 품목으로 관세율이 모두 0%이다.

■ 태국

관세부과 형태

태국은 1,384개 농산물 가운데 96%인 1,329개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 55개 품목은 종량세를 적용한다.

농산물 관세율

태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4.7%이다. 품목류(HS 2단위 기준)별로 볼 때, 조제사료,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가죽 및 모피, 견, 양모 등의 평균 관세율은 5% 정도로 전체 평균 관세율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와는 달리 관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품목은 육류, 낙농품, 화훼류, 채소류, 과일류, 제분공업생산물(맥아·전분·이눌린 등)과 조제품(육·어류, 곡물·곡분, 설탕과자 등) 등이 있다. 특히 음료 및 주류와 담배의 관세율은 각각 54.6%와 60.0%로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음료 및 주류(HS 22)의 경우 관세율이 0%인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을 제외하면 관세율이 45~60% 사이에 분포한다<부표 16>.

표 49. 태국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14.7	18류	12.6
01류	10.9	19류	23.8
02류	35.6	20류	30.0
04류	24.8	21류	25.9
05류	11.6	22류	54.6
06류	34.0	23류	8.0
07류	39.9	24류	60.0
08류	33.8	29류	1.4
09류	29.6	33류	16.1
10류	종량세	35류	5.9
11류	27.4	38류	4.8
12류	19.3	41류	4.5
13류	10.0	43류	8.4
14류	18.1	50류	5.2
15류	20.1	51류	3.1
16류	26.0	52류	4.8
17류	24.1	53류	5.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Thailand's 2006 CEPT Package.

비종가세 현황

태국은 비종가세 가운데 종량세를 운용하고 있다. 종량세 부과 품목은 55개로 주로 곡물, 식물성 조제품 및 동물성 유지, 당류와 설탕과자, 음료와 주류 등이다. 곡물은 밀과 메슬린,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수수 등이 있으며, 식물성 조제품 및 동물성 유지로는 대두유,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와 그 분획물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사탕무와 사탕수수, 한천, 자당, 당밀, 에틸알코올(변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100 이상) 등에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 50. 태국의 종량세 품목 현황

단위: 개

품목	품목 수	품목	품목 수
1001	2	1508	1
1002	1	1509	2
1003	1	1510	1
1004	1	1511	1
1005	2	1513	3
1006	4	1515	2
1007	1	1516	3
1008	4	1518	3
1107	2	1701	3
1203	1	1703	2
1211	3	2201	1
1212	1	2207	3
1302	1	3503	2
1507	1	3506	3
총 계	55		

자료: ASEAN사무국, Thailand's 2006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태국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1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관세 품목은 전체의 63%인 832개에 해당하며, 나머지 품목은 관세율 10~100% 미만에 분포한다.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전무하다.

■ 베트남

관세부과 형태

베트남은 2,064개 농산물 전체 품목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ASEAN 10개국 중에서 종가세만을 부과하는 국가로는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이 있다.

농산물 관세율

베트남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1.2%로 ASEAN 10개국의 평균 관세율 9.4%와 비교하여 두 배 가량 높은 편이다. 품목류(HS 2단위 기준)별로 볼 때 낙농품(조란 및 천연꿀 포함), 제분공업생산물(맥아, 전분, 아눌린 등)과 모직물의 평균 관세율은 21% 정도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산동물, 채유용 종자, 식물성 조제품 및 동물성 유지, 각종 화학생산물 등의 관세율은 4% 정도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대부분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속하는 것으로 과실류, 향신료, 각종 조제품(육·어류, 코코아, 곡물·곡분, 채소·과실 등의 조제품), 담배, 면 등이 있다. 특히, 음료 및 주류(HS 22류)는 평균 관세율이 87.8%로 전체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부표 17>.

표 51. 베트남의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MFN 관세율	구분	MFN 관세율
전체	21.2	18류	32.9
01류	3.4	19류	42.8
02류	20.8	20류	50.0
04류	21.8	21류	31.2
05류	4.4	22류	87.8
06류	12.2	23류	6.3
07류	24.3	24류	41.6
08류	39.5	29류	1.4
09류	30.9	33류	23.7
10류	24.5	35류	10.2
11류	21.0	38류	6.2
12류	6.8	41류	4.4
13류	4.9	43류	19.5
14류	5.0	50류	24.2
15류	25.3	51류	21.9
16류	50.0	52류	31.6
17류	18.3	53류	15.6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Viet Nam's 2007 CEPT Package.

관세율의 분포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베트남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관세율 5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0% 미만인 품목은 전체의 50%인 1,027개이며, 나머지 품목은 관세율 10~100%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없다.

국별 관세율 비교

■ 평균 관세율

분석 대상국 가운데 농산물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63%이고, 다음으로 중국 16%, 일본 11%, ASEAN 9% 순이다. 일본의 경우는 고관세가 대부분이 종량세이어서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한 평균 관세율이 41%(최세균 외 2002)로 중국보다 높다. 평균 관세율이 높을수록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부정적 영향은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ASEAN 국가들 가운데 평균 관세율이 높은 나라는 베트남(21.2%), 캄보디아(15.1%), 태국(14.7%), 라오스(14.3%) 등이다. 반면, 싱가포르의 관세율은 0%이며, 브루나이의 관세율은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종가세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일본의 경우 비종가세 품목이 많다. 최고세율은 일본 990%(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 한국 887.4%, 중국 71%, ASEAN 62.8% 등이다.

표 52. 동아시아 국가별 양허관세 비교

국가	품목 수(개)	평균 관세율(%)	최빈값	최고세율(%)
한국	1,452	63.2	27	887
중국	1,766	15.9	20	71
일본	1,832	10.7	0	990
ASEAN평균	2,030	9.4	2	63
브루나이	1,966	0.2	0	30
캄보디아	2,064	15.1	7	35
인도네시아	1,952	8.9	5	150
라오스	2,050	14.3	5	40
말레이시아	2,364	3.4	0	40
미얀마	2,064	6.6	1	40
필리핀	2,193	8.7	3	65
싱가포르	2,058	0.0	0	0
태국	1,329	14.7	1	65
베트남	2,064	21.2	0	100

주 1) 종가세 기준임.

2) 일본의 최고세율은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국별 관세율 단계별 품목 분포

관세율 단계별 품목 분포를 보면 한국의 경우 20~50% 범위에 드는 품목이 470개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7%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가장 많다.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126개로 전체의 9%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HS 4류(낙농품), 7류(채소), 8류(과일), 9류(차 등), 10류(곡물), 11류(곡물 조제품), 12류(인삼 등), 13류(인삼엑스 등), 21류(기타 조제식료품) 등이다. 주로 곡물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며, 주요 양념채소류, 과일, 인삼, 그리고

이러한 주요 품목을 원료로 하는 조제품이 포함된다.

중국은 관세율 20~50% 구간에 전체 품목의 31%인 539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가장 많다.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전혀 없다. 그러나 10% 미만의 저율관세 품목은 410개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저율관세로 볼 수 있는 10%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의 55%인 843개에 달한다. 고율관세 품목은 대부분이 종량세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보호해야 할 품목과 개방 대상 품목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관세율 10~50% 사이에 분포하는 품목이 전체의 44.3%를 차지한다.

ASEAN(10개국 평균)의 저율관세 품목은 1,583개로 전체의 66.9%를 차지한다. 고율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ASEAN의 관세율이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20~50% 구간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 735개 품목(전체의 35.6%)이 관세율 구간 20~50%에 속한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도 태국과 유사하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농산물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 등 수입국이며, 관세율이 낮은 국가는 수출국인 ASEAN과 중국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관세율은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이다. ASEAN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관세율 체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품목의 관세율이 높다는 것은 일단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는 평균 관세율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품목을 HS 2단위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표 53. 동아시아 국가별 관세율 단계별 분포

단위: 개, %

국가	종가세						비종가세	전체세번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합계		
한국	701 (48.8)	85 (5.9)	470 (32.7)	54 (3.8)	126 (8.8)	1,452 (100)	76 (5.23)	1,452 (100)
중국	410 (23.3)	748 (42.5)	539 (30.6)	62 (3.5)	0 (0.0)	1,759 (100)	7 (0.4)	1,766 (100)
일본	843 (55.4)	299 (19.6)	376 (24.7)	5 (0.3)	0 (0.0)	1,523 (100)	309 (16.9)	1,832 (100)
ASEAN평균	1,529 (75.5)	195 (9.5)	272 (14.2)	10 (0.6)	5 (0.2)	2,010 (100)	28 (1.4)	2,038 (100)
브루나이	1,962 (99.8)	0 (-)	4 (0.2)	0 (-)	0 (-)	1,966 (100)	98 (4.7)	2,064 (100)
캄보디아	1,259 (61.0)	247 (12.0)	558 (27.0)	0 (-)	0 (-)	2,064 (100)	0 (-)	2,064 (100)
인도네시아	1,830 (93.8)	52 (2.7)	20 (1.0)	5 (0.3)	45 (2.3)	1,952 (100)	17 (0.9)	1,969 (100)
라오스	865 (42.2)	539 (26.3)	646 (31.5)	0 (-)	0 (-)	2,050 (100)	0 (-)	2,050 (100)
말레이시아	2,185 (92.4)	123 (5.2)	56 (2.4)	0 (-)	0 (-)	2,364 (100)	102 (4.1)	2,466 (100)
미얀마	1,492 (72.3)	508 (24.6)	64 (3.1)	0 (-)	0 (-)	2,064 (100)	0 (-)	2,064 (100)
필리핀	1,782 (81.3)	192 (8.8)	215 (9.8)	4 (0.2)	0 (-)	2,193 (100)	0 (-)	2,193 (100)
싱가포르	2,058 (100)	0 (-)	0 (-)	0 (-)	0 (-)	2,058 (100)	6 (0.3)	2,064 (100)
태국	832 (62.6)	39 (2.9)	423 (31.8)	35 (2.6)	0 (-)	1,329 (100)	55 (4.0)	1,384 (100)
베트남	1,027 (49.8)	251 (12.2)	735 (35.6)	51 (2.5)	0 (-)	2,064 (100)	0 (-)	2,064 (100)

자료: 한국, 농림축산품품목분류 및 관세율, 2007, China, Customs Tariff, 2004, Japan, Customs Tariff, 2004, ASEAN사무국(국별 2007 CEPT Package) 자료를 이용함.

■ 국별 품목군별 평균 관세율

한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100% 이상 되는 고관세 품목은 채소류(HS 07류), 곡류(HS 10류), 맥아·전분·아눌린 등의 제분공업 생산품(HS 11류), 채유용 종자·과실·각종 종자(HS 12류) 등이다.

중국에서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육류(HS 2류, 평균 18.9%), 과실 및 견과류(HS 8류, 평균 18.0%), 곡물(HS 10류, 평균 33.6%), 당류(HS 17류, 평균 32.2%), 채소 및 과실의 조제품(HS 20류, 평균 20.5%), 음료 및 주류(HS 22류, 평균 27.6%), 담배(HS 24류, 평균 32.3%) 등이다.

일본이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낙농품과 곡물 분야이다.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으로는 육류(HS 2류, 평균 10.9%), 유제품(HS 4류, 평균 21.8%), 육가공품(HS 16류, 평균 17.8%), 베이커리제품(HS 19류, 평균 20.2%) 등이 있다.

ASEAN의 경우 곡물류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SEAN은 회원국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ASEAN 회원국 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육류, 채소, 과일, 커피 및 차, 코코아와 초콜릿, 조제식품, 음료 및 주류 등이다. 낙농품과 곡물류의 관세율은 조제식품에 비해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태국은 육류, 과일, 채소, 화훼, 주류, 담배 등에 대한 관세가 높은 편이다. 필리핀은 육류, 커피 및 차, 곡물, 육조제품, 설탕에 대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다.

품목별 평균 관세율로 판단할 때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곡물과 채소이다. 일본은 곡물, 유제품, 베이커리 제품 등 가공식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은 농산물 교역구조로 볼 때 음료 및 주류, 담배, 당류, 채소 및 과일 가공품 등 가공식품 분야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ASEAN은 육류, 채소, 과일, 조제식품, 당류, 음료 및 주류 등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4. 동아시아 국가별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ASEAN 평균	브루 나이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1류	18.8	6.2	0.4	5.5	0.0	9.0	2.2	9.7	0.0	0.0	19.5	0.0	10.9	3.4
2류	22.5	18.9	10.9	16.8	0.0	34.2	5.3	30.0	0.0	14.0	28.0	0.0	35.6	20.8
4류	63.6	15.7	21.8	10.4	0.0	26.3	5.5	11.2	4.4	6.3	3.3	0.0	24.8	21.8
5류	14.4	11.0	0.2	5.0	0.0	12.7	3.9	9.8	0.0	4.5	2.8	0.0	11.6	4.4
6류	20.9	7.6	0.4	9.4	0.0	13.0	13.7	13.3	0.0	3.3	4.3	0.0	34.0	12.2
7류	123.5	11.7	6.1	14.1	0.0	5.9	4.9	39.6	1.0	10.4	14.6	0.0	39.9	24.3
8류	81.8	18.0	7.1	14.6	0.0	7.0	5.5	31.9	6.1	14.4	8.1	0.0	33.8	39.5
9류	76.9	14.2	3.5	13.2	0.0	15.6	4.8	27.1	1.4	6.0	16.9	0.0	29.6	30.9
10류	218.0	33.6	1.5	10.3	0.0	6.4	3.1	5.0	21.7	2.4	29.2	0.0	종량세	24.5
11류	314.8	27.1	17.4	10.0	0.0	27.1	5.0	5.0	0.4	4.8	8.9	0.0	27.4	21.0
12류	117.9	9.5	2.2	6.3	0.0	16.1	4.0	9.8	0.5	2.3	3.8	0.0	19.3	6.8
13류	107.0	14.1	2.8	5.6	0.0	16.3	4.7	13.1	0.0	4.3	2.4	0.0	10.0	4.9
14류	9.1	10.4	1.9	7.0	0.0	15.0	2.1	20.0	0.0	6.0	3.4	0.0	18.1	5.0
15류	28.5	19.0	3.9	8.0	0.0	7.0	5.1	10.4	2.4	2.5	7.3	0.0	20.1	25.3
16류	56.8	13.2	17.8	18.2	0.0	29.6	5.7	28.5	6.9	11.7	23.8	0.0	26.0	50.0
17류	31.2	32.2	12.0	9.8	0.0	7.0	5.9	13.1	2.8	6.0	20.8	0.0	24.1	18.3
18류	27.4	12.7	18.8	13.7	0.0	32.6	12.5	10.0	13.7	17.4	5.6	0.0	12.6	32.9
19류	33.7	19.6	20.2	12.9	0.0	15.2	6.2	15.6	3.9	11.6	10.1	0.0	23.8	42.8
20류	42.7	20.5	15.9	18.0	0.0	33.7	5.8	30.0	5.8	15.0	9.3	0.0	30.0	50.0
21류	63.7	22.2	17.4	14.2	0.4	16.5	21.6	10.8	11.5	14.0	10.0	0.0	25.9	31.2
22류	32.8	27.6	6.3	37.4	0.0	34.5	108.9	33.2	15.5	29.3	9.9	0.0	54.6	87.8
23류	17.9	5.3	0.5	4.2	0.0	8.6	2.3	5.0	0.0	3.0	8.3	0.0	8.0	6.3
24류	59.2	32.3	5.1	21.5	0.0	24.8	10.7	25.9	종량세	23.8	6.4	0.0	60.0	41.6
29류	17.8	11.0	9.9	2.6	0.0	11.1	3.4	5.0	0.3	1.0	2.1	0.0	1.4	1.4
33류	40.2	19.2	1.5	11.3	3.2	28.8	14.3	10.3	2.7	8.7	4.8	0.0	16.1	23.7
35류	87.7	10.8	6.1	7.3	0.0	30.6	4.5	5.5	9.8	2.9	3.2	0.0	5.9	10.2
38류	15.5	12.0	-	4.0	0.0	6.7	5.6	7.4	3.0	1.2	5.3	0.0	4.8	6.2
41류	5.3	8.2	3.3	5.4	0.0	14.6	1.2	19.2	0.9	7.0	2.4	0.0	4.5	4.4
43류	15.3	19.6	0.4	10.0	4.5	29.0	7.5	20.0	0.0	8.5	3.0	0.0	8.4	19.5
50류	25.7	8.4	0.0	6.4	0.0	7.0	6.3	6.2	3.1	10.8	1.3	0.0	5.2	24.2
51류	2.0	13.1	0.0	5.4	0.0	7.0	6.4	7.2	0.0	7.1	1.0	0.0	3.1	21.9
52류	2.0	16.0	0.0	8.2	0.0	7.0	8.4	8.1	9.7	3.4	8.7	0.0	4.8	31.6
53류	2.0	5.7	0.0	4.7	0.0	7.0	6.0	6.2	0.0	1.8	4.9	0.0	5.0	15.6
평균	63.2	15.9	10.7	9.4	0.2	15.1	8.9	14.3	3.4	6.6	8.7	0.0	14.7	21.2

자료: 한국, 농림축산물품분류 및 관세율, 2007, China, Customs Tariff, 2004, Japan, Customs Tariff, 2004, ASEAN사무국(국별 2007 CEPT Package) 자료를 이용함.

제 6 장

동아시아 FTA 영향평가

GTAP을 이용한 정책실험

■ 추정 모형¹¹

동아시아 FTA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크게 일반균형모형과 계량경제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일반균형모형으로는 분석 대상국가와 품목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을 선택하였다. GTAP 모형은 이용의 편의성과 장기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된, 검증된 모형이라는 점도 모형 선정에 고려되었다.

GTAP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퍼듀대학이 호주의 IMPACK과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 1990년대 초반에 완성된 연산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이다. GTAP은 모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General Equilibrium Modelling Package: GEMPACK) 등 3개 부분이 결합되어 운용된다. GTAP은 국제경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여러 국가들의 경제는 실물부문(상품교역)과 자본 흐름을 통해 연결된다. 각국의 경제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에는 한 나라 경제에 최종수요 부분인 지역가계(Regional Household)를 설치하여 해당 국가에서 생성되는 모든 소득을 받아들이고, 소득은 콥-더글러스(Cobb-Douglas) 효용함수에 따라 고정된 비율로 민간가계, 저축,

¹¹ GEMPACK User Documentation(Release 8.0) GPD-1부터 GPD-8 참조.

정부 등 부문별로 지출된다. 민간가계는 기업(생산자)의 생산물을 구입하고, 저축부문은 기업에 대해 투자를 담당하며, 정부는 기업의 생산물을 구입하게 된다. 기업은 타 기업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는 구조를 갖는다.

지역가계의 수입은 민간가계, 기업, 정부로부터의 조세수입과 기업으로부터 받는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 등으로 구성된다.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다른 국가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기업은 지역가계에 관세를 지급하게 된다. 지역가계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민간소비, 정부구매, 저축으로 이루어진 종합효용(Aggregate Utility)의 극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각 부문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는 국산재와 수입재로 이루어진 혼합재의 형태로 표시되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합리적 적정화의 가정에 의해 소비 수준이 결정된다. 투자 수준은 생산기술에 따라 결정된다.

모형 내에서는 완전경쟁, 규모에 따른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수입품 간의 이질성(차별화) 등이 반영될 수 있다. 기업은 주어진 기술조건 하에서 비용 최소(이윤극대화)를 위한 요수 투입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본원적 생산요소와 중간투입재의 분리를 가정하여 CES(nested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 함수가 이용된다. 기업은 중간투입재 가격에 상관없이 본원적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에 따라 최적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중간투입재는 본원적 생산요소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 투입된다. 토지,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 결합은 CES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최종 재화의 생산수준은 비용최소화를 달성하는 본원적 생산요소와 중간재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모텔의 균형 또는 시장청산조건은 모든 투입 요소와 생산재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다. 소득과 지출은 균형을 이루고, 저축과 투자도 균형을 이루게 된다. 대외부문은 상품 교역과 자본 흐름의 합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 정책실험

정책실험을 위해 87개 국가로 이루어진 원자료를 5개 국가로 분류하였다(한국, 중국, 일본, ASEAN, 기타). ASEAN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기타 동남아 국가가 포함된다. 상품 분류는 지역의 다양성, 시장개방 정책실험을 위한 대상 국가들 간 기존의 농산물 교역의 한계(교역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품목이 많음), 정책실험의 목적이 시장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방향성 검토와 교역유형의 변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하였다. 원자료의 57개 부문은 농업 중심의 9개 부문으로 통합되었다. 농산물은 미작, 축산, 기타곡물, 채소와 과일, 기타 농산물(가공식품 포함) 등 5개 부문으로 통합되었으며, 그밖에 경제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 임업,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관세율이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관 및 관세 징수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계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ASEAN 회원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모두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상호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실제 통관 기준 관세율은 쿼터 이내 관세율과 쿼터 밖의 관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일부 탄력관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세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개방 정책실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정책실험 결과

동아시아 FTA로 인한 역내 국가들 간의 관세철폐로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FTA가 역내 국가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GDP 변화율은 한국 2.68%, 일본 1.41%, 중국 0.46%, ASEAN 0.76% 등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이다. 동아시아 FTA가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외 국가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잉여(Equivalent Variation 즉, EV로 계산된 것)의 크기는 일본, 한국, 중국, ASEAN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표시된 EV는 일본 100억 달러, 한국 63억 달러, 중국 42억 달러, ASEAN 22억 달러 수준이다. 개인효용의 변화도 GDP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개인효용 변화가 1.66%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무역수지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모두 적자로 나타났다.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41억 달러로 가장 컸다.

표 55. 동아시아 FTA로 인한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

변수	한국	중국	일본	ASEAN	기타 국가
GDP(%)	2.68	0.46	1.41	0.76	-0.39
EV(백만 달러)	6,271	4,209	10,002	2,188	-11,072
무역수지(백만 달러)	-2,030	-3,347	-4,139	-2,225	11,741
개인효용(%)	1.66	0.40	0.28	0.40	-0.05

농업부문은 동아시아 FTA 추진에 있어 역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예상된다. 경쟁력이 약한 한국과 일본은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중국과 ASEAN은 비농업분야의 경쟁력 취약점을 농업부문에서 보상받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TAP 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FTA 영향평가는 이러한 예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로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나라는 일본으로 쌀, 축산,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업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에서 특히 생산 감소가 큰 부문은 미작으로 9.8%(약 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부문별 생산 감소는 축산 1.5%(약 9억 달러), 기타 곡물 1.9%(약 3억 달러), 과일·채소 1.4%(약 3억 달러), 기타 농산물 0.5%(약 12억 달러) 등이다.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 규모는 모두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과 수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은 가공식품 등 기타 농산물 분야의 생산 증가로 농업부문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타 농산물 분야를 제외하고는 축산업 생산이 3.8%(약 6억 달러) 증가하고, 과일·채소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동아시아 역내 축산물과 가공식품 교역이 흑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쌀과 기타 곡물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생산 감소는 7.6%(약 11억 달러), 기타 곡물의 생산 감소는 12.1%(약 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임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으나 수산업은 긍정적 영향을 나타낼 전망이다.

동아시아 FTA는 중국 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농업 생산은 쌀, 축산, 과일·채소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곡물과 쌀 등 곡물 산업의 생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기타 곡물 생산은 5.2%(약 16억 달러), 쌀 생산은 0.8%(약 4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과일·채소 생산은 0.4%(약 5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가 중국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미미할 전망이다. 임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수산업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SEAN은 동아시아 FTA로 기타 곡물을 제외한 다른 농업분야는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 증가는 쌀 0.3%(약 1억 달

러), 축산 1.3%(약 5억 달러), 과일·채소 0.6%(약 1억 달러), 기타 농산물 2.1%(약 16억 달러) 등이다.

토지용역비는 동아시아 FTA 영향으로 농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과 일본에서 하락하고,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과 ASEAN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용역비 하락 폭은 한국 19.1%, 일본 10.1%로 일본보다 한국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ASEAN의 토지용역비는 각각 4.4%, 2.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임과 자본용역비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에서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6. 동아시아 FTA가 역내 국가별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부문	한국	중국	일본	ASEAN
미작	-7.6	0.8	-9.8	0.3
축산	3.8	0.1	-1.5	1.3
기타 곡물	-12.1	5.2	-1.9	-1.4
채소, 과일	0.0	0.4	-1.4	0.6
기타 농산물	5.9	0.7	-0.5	2.1
임업	-1.5	-0.4	-0.6	-0.5
수산업	0.7	0.3	-0.2	0.6

동아시아 FTA로 인한 한국의 쌀 수입은 중국에서 6,500만 달러, ASEAN에서 1,7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과 ASEAN의 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입 물량 증가의 충격은 한국의 쌀 가격을 8.7% 정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 모형 추정의 결과이다. 축산물 수입은 1억 8,000만 달러 증가하고 주로 중국과 ASEAN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곡물은 중국에서 17억 달러 정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ASEAN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순증은 15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

망된다. 과일·채소 수입은 1억 2,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기타농산물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7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7. 동아시아 FTA로 인한 한국의 농산물 교역 변화

단위: 백만 달러

부문	교역	중국	일본	ASEAN	합계
미작	수출	0	6	1	7
	수입	65	0	17	82
축산	수출	47	38	35	120
	수입	59	8	111	178
기타 곡물	수출	12	71	6	90
	수입	1,669	-19	-182	1,468
채소, 과일	수출	7	49	6	62
	수입	116	0	5	121
기타 농산물	수출	94	534	103	731
	수입	434	119	164	717
임업	수출	0	0	0	0
	수입	2	0	2	4
수산업	수출	1	5	0	6
	수입	27	16	1	44

중국은 동아시아 FTA로 모든 농산물 분야의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쌀 수출은 2억 9,000만 달러 증가하고, 기타 곡물 수출은 1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타나났다. 중국의 쌀 수출은 대일본 2억 달러, 대한민국 7,0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곡물은 대한민국 수출 증가가 17억 달러로 한국이 가장 큰 수입 증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축산물 수출은 8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대일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일·채소 수출은 4억 5,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기타농산물 수출은 1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8. 동아시아 FTA로 인한 중국의 농산물 교역 변화

단위: 백만 달러

부문	교역	한국	일본	ASEAN	합계
미작	수출	65	203	22	290
	수입	0	0	3	4
축산	수출	59	666	75	800
	수입	47	50	234	331
기타 곡물	수출	1,669	111	122	1,902
	수입	12	3	385	400
채소, 과일	수출	116	266	69	450
	수입	7	1	133	141
기타 농산물	수출	434	684	359	1,478
	수입	94	143	435	672
임업	수출	2	2	1	4
	수입	0	0	2	2
수산업	수출	27	14	1	41
	수입	1	1	2	4

동아시아 FTA로 인한 일본의 농산물 수입 증가는 모든 품목(부문)에 걸쳐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기타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쌀 수입은 중국, ASEAN, 한국 등 모든 역내 국가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3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축산물 수입 증가는 11억 달러 수준이며 주로 중국과 ASEAN에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기타 곡물의 역내 교역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대부분의 사료곡물을 아시아 지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기타 곡물 수입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료곡물에 대한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동아시아 FTA가 일본의 사료곡물 수입선을 중국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일·채소의 수입 증가는 4억 달러 정도로 크지 않으나 기타 농산물 수입은 3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9. 동아시아 FTA로 인한 일본의 농산물 교역 변화

단위: 백만 달러

부문	교역	한국	중국	ASEAN	합계
미작	수출	0.3	0	0.3	0.6
	수입	6	203	160	369
축산	수출	8	50	15	73
	수입	38	666	375	1,078
기타 곡물	수출	-19	3	11	-6
	수입	71	111	-29	153
채소, 과일	수출	0	1	2	3
	수입	49	266	80	395
기타 농산물	수출	119	143	157	419
	수입	534	684	1,859	3,077
임업	수출	0	0	0	0
	수입	0	2	-7	-4
수산업	수출	16	1	1	17
	수입	5	14	5	24

표 60. 동아시아 FTA로 인한 ASEAN의 농산물 교역 변화

단위: 백만 달러

부문	교역	한국	중국	일본	합계
미작	수출	17	3	160	180
	수입	1	22	0	23
축산	수출	111	234	375	720
	수입	35	75	15	125
기타 곡물	수출	-182	385	-29	174
	수입	6	122	11	139
채소, 과일	수출	5	133	80	218
	수입	6	69	2	76
기타 농산물	수출	164	435	1,859	2,458
	수입	103	359	157	619
임업	수출	2	2	-7	-3
	수입	0	1	0	1
수산업	수출	1	2	5	8
	수입	0	1	1	2

동아시아 FTA로 ASEAN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농산물 분야의 수출이 수입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쌀 수출은 1억 8,000만 달러 증가하고, 기타 곡물 수출은 1억 7,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쌀 수출은 일본으로 1억 6,000만 달러, 한국으로 2,0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축산물 수출은 7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일본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일·채소 수출은 2억 2,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기타농산물 수출은 2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GSIM을 이용한 시장 개방 영향 분석¹²

■ GSIM 모형(Global Simulation Model)

동아시아 FTA에 따른 품목별 시장개방 효과를 CGE 모형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GSIM 모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때 분석대상의 범위와 모형의 선택은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균형모형(Global General Equilibrium Model)은 대상 국가와 대상 부문이 많아질수록 모형이 복잡하고 작업량이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약간의 오차에도 분석결과에 매우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개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부분균형모형은 일반균형모형이 가지는 부문 간의 자원 이동과 상품의 흐름을 통한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개별 시장에 대한 효과를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더욱 세

¹² 이 절은 고려대학교의 양승룡 교수가 집필한 것임.

심하게 분석할 수 있다.

GSIM 모형은 먼저 국제시장의 균형조건으로부터 수입국의 복합재(Composite Good)에 대한 균형가격을 모형의 해(Solution Set)로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균형가격을 통해 다시 각 국별 분석 결과를 역도출할 수 있다. 이 축약모형은 수출국가의 수만큼 식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 비해 최소한의 자료와 계산절차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자료

GSIM 모형의 또 다른 장점은 엑셀(Excel)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ASEAN과 한·중·일의 품목별 교역 자료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FAO 자료이다. 관세는 2005년의 한·중·일의 세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세계 각국 실행관세율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 쌀의 경우 관세화를 통한 수입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433%로 가정하였다(쌀 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관세화 참조). ASEAN의 실행관세율은 ASEAN 각국의 관세율을 단순평균하였으며, 모형 내 필요한 세계기타 관세율은 미국, EU,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의 가용한 모든 국가의 평균 실행관세율이다.

수출입 및 대체탄력성은 계량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사용한 국별 소득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별 GDP자료를 사용하였다. 한·중·일의 국내가격은 가락시장, 중국 농업부 농산물 시장가격 검색시스템, 동경 중앙도매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환율자료를 이용하여 화폐단위를 통일시켰다. 생산비는 한국 농업업주요통계, 중국 농업통계연감, 일본 통계연감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교역액 변화

가. 과일

중국의 과일류 교역 변화는 수출 증가의 70.2%를 차지하는 ASEAN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중국의 사과 수입은 약 6만 달러 소폭 증대되어 중국은 FTA 체결로 인해 역내 국가 중 유일하게 사과 교역에서 흑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은 FTA 체결로 사과 수출이 110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19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사과 수출 증대는 일본 시장 72.5%, 중국 ASEAN 시장 각각 15만 달러와 20만 달러 등이다. 한국의 사과 수입 증가의 99.6%는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의 사과 수출 증가는 6만 달러로 한·중·일 3개국 중 가장 적은 수출증가를 보인다. 일본의 사과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245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은 수출에 변화가 없는 반면, 수입이 759만 달러 증가한다. ASEAN은 한·중·일 3개국에서 모두 사과를 수입하며, 수입증가액의 96.8%는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1. 관세 철폐 후 사과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1,631.0	2,441.5	9,596.1	-2,946.8	10,721.8 (3.5)
한국	149.2	-	916.1	198.4	-162.7	1,101.0 (14.3)
일본	42.8	7.4	-	120.1	-107.4	62.9 (0.1)
ASEAN	-	-	-	-	-	-
세계기타	-137.2	-450.2	-912.7	-2,324.6	3,072.1	-752.6
수입총계 (변화율%)	54.8 (0.0)	1,188.2 (707.3)	2,444.9 (282.7)	7,590.0 (3.2)	-144.8	11,133.1

FTA 체결로 중국의 배 수출은 850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58만 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과에 이어 배 교역에서도 중국은 역내 국가 중 유일하게 교역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 배 수출은 122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169만 달러 증가하여 순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은 배 수출 증가액이 가장 적으며, 수입은 225만 달러로 크게 증가한다. ASEAN의 배 수입 증가액의 86.3%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기인하며, 한국 또한 ASEAN에 83만 달러 상당의 배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표 62. 관세 철폐 후 배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1,685.8	2,264.5	5,642.3	-1,124.3	8,468.3 (6.93)
한국	412.3	-	1,024.4	832.6	-1,047.5	1,221.8 (2.18)
일본	170.7	-	-	62.8	-75.4	158.1 (2.22)
ASEAN	-	-	-	-	-	-
세계기타	-48.7	-127.6	-1,036.5	-1,067.8	2,201.2	-79.4
수입총계 (변화율%)	534.3 (3.54)	1,558.2 (738.5)	2,252.4 (942.4)	5,469.9 (5.54)	-46.0	9,768.8

중국은 동아시아 FTA를 통해 포도를 ASEAN에 152만 달러, 한국에 212만 달러, 일본에 330만 달러 수출할 것으로 추정되어 역내 국가 가운데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관세철폐 후 역내 수출 증가는 156만 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많다. 한국 포도 수출의 대부분은 일본시장에 대한 것이며, 포도 수입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 수입 증가액의 76.5%는 중국이 차지한다. ASEAN의 역내 포도 수입은 2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3. 관세 철폐 후 포도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2,119.9	3,304.4	1,522.6	-1,021.4	5,925.5 (56.9)
한국	140.3	-	1,016.6	416.4	-12.7	1,560.6 (85.9)
일본	64.2	-	-	59.6	-74.8	49.0 (3.1)
ASEAN	-	-	-	-	6.3	6.3 (0.1)
세계기타	-12.8	-59.2	-7.0	-1,096.4	1,042.4	-133.0
수입총계 (변화율%)	191.7 (0.2)	2,060.7 (8.7)	4,314.0 (21.7)	902.2 (0.8)	-60.2	7,408.4

파인애플의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중국(약 73만 달러)이며, 일본으로의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파인애플 생산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은 수출 변화 없이 수입만 증가하며, 주요 파인애플 생산지역인 ASEAN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0만 달러 증가하나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표 64. 관세 철폐 후 파인애플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322.1	493.2	0.8	-91.2	724.9 (30.5)
한국	-	-	-	-	-	-
일본	-	-	-	-	-	-
ASEAN	2,304.0	188.4	86.7	-	-2,393.1	186.0 (0.2)
세계기타	-1,916.6	-278.2	-63.0	-0.8	2,136.4	-122.2
수입총계 (변화율%)	387.4 (0.4)	232.3 (0.0)	516.9 (0.1)	-	-347.9	788.7

동아시아 FTA 체결 시 ASEAN의 동아시아 역내 바나나 수출은 823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ASEAN으로부터 바나나 수입 증가는 중국 492만 달러, 한국 111만 달러, 일본 220만 달러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의 역외 국가로부터의 바나나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5. 관세 철폐 후 바나나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	173.6	0.8	-154.2	20.2 (0.11%)
한국	-	-	-	-	-	-
일본	-	-	-	-	-	-
ASEAN	4,916.3	1,108.2	2,202.1	-	-2,393.1	5,833.5 (1.32%)
세계기타	-1,128.6	-914.2	-1,916.4	-0.8	2,136.4	-1,823.6
수입총계 (변화율%)	3,787.7 (3.80%)	194.0 (0.17%)	459.3 (0.08%)	-	-410.9	4,030.1

나. 곡물

동아시아 FTA 체결로 쌀은 3억 달러의 교역변화가 발생한다. 쌀 수출 변화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수출 증가는 2억 4,8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의 쌀 수입은 2억 1,300만 달러 증가하여 역내 국가 중 증가액이 가장 클 전망이다. 쌀의 경우 역내 국가 모두가 주 생산지역으로 관세 철폐 시 다른 품목에 비해 수출입 모두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립종을 모두 생산하고, 역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은 한국에 약 5,000만 달러, 일본에 1억 6,000만 달러, ASEAN에 5,600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수출 증가는 일본에 대한 수출이 1,0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한국의 ASEAN으로부터의 쌀 수입 증가는 1,200만 달러에 머물 전망이다.

옥수수인 경우 중국은 410만 달러 수출 증대가 예상되어 FTA 체결로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ASEAN은 중국으로부터 434만 달러어치의 옥수수를 수입하여 역내 국가 중 가장 큰 수입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옥수수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교역량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중국과 ASEAN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6. 관세 철폐 후 쌀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49,631	163,212	56,422	-21,244	248,027 (33.8)
한국	-	-	10,244	3,283	-6,541	6,986 (4997.2)
일본	-	-	-	623	-452	176 (15.1)
ASEAN	4,322	12,411	65,322	-	-24,134	57,922 (0.2)
세계기타	-2,142	-10,421	-25,762	-14,152	36,571	-15,906
수입총계 (변화율%)	2,180 (1.5)	51,621 (38.6)	213,017 (11.4)	46,176 (0.7)	-15,800	297,150

표 67. 관세 철폐 후 옥수수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747.9	1,192.3	4,343.0	-2,184.3	4,098.9 (0.4)
한국	56.0	-	176.0	114.0	-156.0	190.0 (22.9)
일본	-	-	-	-	-	-
ASEAN	433.4	134.2	166.3	-	-498.4	235.5 (0.5)
세계기타	-203.7	-101.1	-352.4	-2,102.4	2,038.2	-721.4
수입총계 (변화율%)	285.7 (0.0)	781.0 (0.1)	1,182.2 (0.1)	2,354.6 (0.5)	-800.5	3,803.0

동아시아 FTA로 인한 중국의 밀 수출 증가액은 203만 달러로 역내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이 가운데 ASEAN에 대한 수출이 155만 달러로 압도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밀 수입국가로 수출의 변화는 거의 없다. ASEAN은 한국으로 112만 달러 정도의 밀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8. 관세 철폐 후 밀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913.5	292.4	1,549.2	-724.2	2,030.9 (5.5)
한국	-	-	25.6	-	-4.9	20.7 (0.3)
일본	-	-	-	-	3.4	3.4 (0.0)
ASEAN	15.0	1,124.2	-	-	-1,004.2	135.0 (3.9)
세계기타	-7.1	-834.4	-96.2	-592.4	1,001.4	-528.7
수입총계 (변화율%)	7.9 (0.1)	1,203.3 (12.5)	221.8 (8.9)	956.8 (0.4)	-728.5	1,661.3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대두 수입국가로 FTA 체결 후 각국의 수출과 수입에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은 대ASEAN 수출이 102만 달러 증가하나, 역외 수출이 138만 달러 감소하여 총 수출은 74만 달러 증가에 그친다. 한국의 대두 수출은 일본시장에 대한 우세한 가격경쟁력으로 54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로 인한 역내 대두 교역 변화는 미미할 전망이다.

표 69. 관세 철폐 후 대두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321.8	71.4	1,022.4	-1,379.3	736.3 (0.4)
한국	10.0	-	540.9	98.3	-8.4	640.8 (720.0)
일본	51.0	85.9	-	-	-96.2	40.7 (9.1)
ASEAN	-	-	37.9	-	-34.8	3.1 (0.0)
세계기타	-30.6	-170.5	-842.6	-642.7	1,643.2	-43.2
수입총계 (변화율%)	30.4 (0.0)	237.2 (0.1)	507.6 (0.0)	478.0 (0.1)	-75.5	1,177.7

다. 채소

마늘의 경우 중국은 동아시아 FTA로 2,378만 달러의 수출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가 높아 신선마늘 수출이 부진했던 대한민국 수출은 1,519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마늘 수입이 150만 달러 감소하여 수입의 순증은 1,4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으로 마늘 수출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약 100만 달러 정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ASEAN의 마늘 수출은 FTA 체결과 거의 무관하다. 일본과 ASEAN은 중국의 수출증가로 인해 수입이 각각 875만 달러, 181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0. 관세 철폐 후 마늘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15,188.5	9,011.6	1,606.0	-2,024.4	23,781.7 (4.2)
한국	104.1	-	967.6	310.1	-312.4	1,069.4 (457.0)
일본	204.0	-	-	-	-114.2	89.8 (44.7)
ASEAN		-	-	-	2.5	2.5 (0.0)
세계기타		-1,527.8	-1,231.4	-101.5	964.3	-2,088.7
수입총계 (변화율%)	115.8 (12.0)	13,660.7 (85.8)	8,747.8 (36.3)	1,814.6 (1.1)	-1,484.2	22,854.7

관세철폐로 인한 양파의 교역 변화는 마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중국의 양파 수출은 2,438만 달러 증가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각각 1,330만 달러와 957만 달러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 대일본 수출이 100만 달러 늘어나며, 이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 후 중국의 마늘과 양파 수출은 총 5,000만 달러 증가하며, 이로 인해 한국의 양념채소류 피해가 역내 국가 중 제일 크다. 일본의 피해도 적지 않으나 관세율과 수입량이 한국보다 적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1. 관세 철폐 후 양파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13,296.7	9,568.7	4,558.9	-3,046.2	24,378.1 (5.2)
한국	144.4	-	1,006.3	599.2	-210.1	1,539.8 (273.0)
일본	168.0	-	-	-	-104.5	63.5 (62.9)
ASEAN	-	-	-	-	1.2	1.2 (0.3)
세계기타	-135.2	-864.2	-267.5	-1,971.5	824.8	-2,413.6
수입총계 (변화율%)	177.2 (17.7)	12,432.5 (102.7)	10,307.5 (55.6%)	3,186.6 (3.2%)	-2,534.8	23,569.0

라. 육류

동아시아 국가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 없는 관계로 동아시아 FTA로 인한 역내 국가의 수출 증대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 FTA 체결로 인한 쇠고기 교역 창출효과는 61만 달러로 분석대상 품목 중 가장 작다. 중국의 수입액은 7만 달러 증가한 반면 수출은 37만 달러 증가하여 역내 국가 중 교역 변화가 가장 작다. 한국은 일본과 ASEAN에 각각 17만 달러와 6만 달러 정도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ASEAN의 쇠고기 수출과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동아시아 FTA가 일본의 쇠고기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72. 관세 철폐 후 쇠고기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160.2	201.3	114.0	-106.8	368.7 (550.3)
한국	-	-	168.2	64.0	-98.4	133.8 (70.8)
일본	-	-	-	54.2	-48.5	5.7 (23.8)
ASEAN	12.3	154.2	138.2	-	-192.2	112.5 (25.6)
세계기타	-5.2	-11.2	-	-116.8	119.1	-14.1
수입총계 (변화율%)	7.1 (0.0)	303.2 (0.1)	507.7 (4.6)	115.4 (0.6)	-326.8	606.6

동아시아 FTA체결로 인한 돼지고기 무역창출효과는 1,35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대부분이 중국의 수출증가로 인한 것이다. 동아시아 FTA 체결 후 중국의 역외 국가에 대한 수출은 707만 달러 감소하나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은 크게 증가한다. 특히 ASEAN에 대한 수출이 1,157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돼지고기 수출 증가는 216만 달러로 추정된다. 일본과 ASEAN은 수출에 큰 변화가 없다.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활발해져 274만 달러상당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결과는 구제역 등으로 역내 돼지고기 교역이 매우 제한된 상태의 교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면 돼지고기 교역은 현재 추정된 결과보다 훨씬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돼지고기 교역 변화에 대한 추정은 구제역 등 최근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위생조건이 개선되면 현재 추정된 것보다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아시아 FTA로 인한 닭고기의 교역 증가효과는 1,029만 달러로, 중국

은 760만 달러의 가장 높은 수출 증가를 보인다. 중국의 수출증가는 주로 한국과 일본이 대상이며,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은 707만 달러로 가장 많이 증가한다. 그러나 최대 수입국은 802만 달러 수입 증대를 보인 일본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교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역내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질병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닭고기 교역은 추정된 결과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73. 관세 철폐 후 돼지고기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4,444.5	3,017.3	11,565.4	-7,064.8	11,962.4 (33.5)
한국	-	-	1,919.5	1,156.4	-912.8	2,163.1 (72.6)
일본	-	-	-	2.9	-1.6	1.3 (2.6)
ASEAN	-	-	-	-	-	-
세계기타	-	-1,703.3	-2,017.1	-4,538.5	7,632.4	-626.5
수입총계 (변화율%)	-	2,741.2 (0.5)	2,919.7 (0.1)	8,186.2 (7.8)	-346.8	13,500.3

표 74. 관세 철폐 후 닭고기 교역액 변화

단위: 천 달러

수입국 수출국	중국	한국	일본	ASEAN	세계기타	수출총계 (%)
중국	-	7,068.9	5,008.2	486.9	-4,967.4	7,596.6 (4.7)
한국	103.6	-	3,999.8	1,005.4	-1,972.4	3,136.4 (55.0)
일본	45.2	12.5	-	202.5	-193.8	66.4 (3.3)
ASEAN	243.1	4,048.6	2,008.4	-	-1,372.3	4,927.8 (15.5)
세계기타	-101.7	-5,157.2	-3,001.1	-304.6	3,126.2	-5,438.4
수입총계 (변화율%)	290.2 (0.1)	5,972.8 (7.3)	8,015.3 (5.6)	1,390.2 (0.7)	-5,379.7	10,288.8

제 7 장

동아시아 FTA와 농업부문의 과제

동아시아 지역협력 또는 지역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외연은 ASEAN+3에 기초하여 점차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의 깊이는 국가연합, 공동체, 연방국가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낮은 단계의 통합에서 시작하여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여기서 통합의 최종 목표를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연방국가 수준의 지역통합을 지향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통합이 가능하였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이어야 하지만, 깊은 협력이 어려울 만큼 넓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는 이익사회를 넘어선 공동사회로서 일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근본적 정체성과 가치지향을 공유하는 항구적 문화공동체이기 때문이다(박사명, 2008).

경제, 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로도 통합의 속도와 정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경제부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등의 자유이동, 공정한 경제발전, 경제적 격차의 축소 등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비롯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회원국 간에 갈등을 초래할 분야가 존재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농업부문을 들 수 있다. 갈등을 최소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지역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농업부문의 중요한 이슈와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적인 지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동아시아 지역의 결속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주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FTA의 포괄범위와 수준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기초라는 점을 인식하여 높은 수준의 FTA가 되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포괄범위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 및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시장개방의 예외를 최소화함으로써 단일시장 형성의 장애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부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이 동아시아 FTA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사전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다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탄생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은 농업부문을 대표적인 취약산업으로 분류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시장개방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민감하게 취급해오고 있다. 반면 중국과 ASEAN 국가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비농업부문의 열세를 농업부문에서 보완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보완적 관계에 의한 시장개방의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농산물 수입국의 민감성과 수출국의 관심부분을 어떻게 타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농업부문의 협상은 물론 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농업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협력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농업부문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 협력의 기초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사전적 협력 심화·확대

■ 농산물 교역 원활화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역내 양자간 FTA 관계가 완료된 이후 추진될 수도 있고, 중·일 FTA 등 양자간 FTA 추진이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 간의 FTA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FTA가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FTA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농업부문은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은 미미할 것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또는 동식물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신선 농산물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신선한 상태의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은 질병, 병해충, 위생 측면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농산물이 대부분 민감품목일 것이지만 실제로 시장개방에 대한 보완대책이 적용될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산물은 쌀이다. 과일은 역내 국가들 간의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면 보완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물은 중소가축 중심의 육류와 낙농품 교역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채소류는 중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역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개방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동아시아 FTA 이전에 형성될 양자간 FTA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산업 내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FTA 등 시장통합 협상 이전에 핵심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준 및 규격의 조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역내 교역 의존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기본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가

들 사이에 동식물검역 기준, 통관절차, 규격, 표시, 표준 등을 조화시키고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역내 교역 비중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최근 FTA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표준품질인증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문제도 품질인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농산물 교역의 원활화를 위해 검역, 통관, 규격, 표시 등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비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일본과 기타 역내 국가들이 농산물 교역 원활화를 위한 공통의 규격을 확립해 나가는 일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역내 일부 국가는 통관절차, 기술 및 표준, 통관 검사와 검역, 상관습 및 유통체계 등에 있어서 시장접근이 매우 어려운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과 관련된 일본의 강제적인 기술규정 관련 법률은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전기용품거래법 등 50여 가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품질을 표시하는 인증제도는 사실상 강제표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일본공업규격(JIS), 일본농업규격(JAS), S 마크, G 마크 등이 있다.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최세균 외, 2001)에서도 한국의 농산물 수출업체가 느끼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은 동식물검역(또는 위생·식물위생), 보호 정책, 상관습, 기술 장벽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발생은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와 인식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BSE 이외에 최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확산,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균에 의한 오염식품의 유통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농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문제에 대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FTA는 필연적으로 농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고 여기에 따른 유해 식품 및 유해 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이러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 유해 병해충 유입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식품안전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의 식량공급 기능에서 품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농정 담당 기관의 관리 및 감시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축 질병의 예방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이력 시스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U에서는 국가 내에서 뿐 아니라 국가간 육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EU 생산이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와 미국 등을 주축으로 한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는 가축개체식별 방법 및 기구에 대한 표준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국가 간 육류 및 생축의 이동이 가능토록 생산이력시스템에 대한 표준 및 정보 교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밖에 동식물검역(SPS),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식품 생산과 교역을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생산 단계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위해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단계별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필요하다. 역내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통의 표시, 규격, 인증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역 원활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 국별 보완관계 발전

경제통합 추진은 구체적으로 회원국 사이의 이해 조정 및 보상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EU의 경우가장 큰 과제는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 조정이었다.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한 프랑스가 공산품 시장개방을 양보한 대신 독일은 농산물 부문에서

의 공동보호정책을 실시하는 비용부담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유럽은 시장 통합을 통해 각각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기에 시장 통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시장 통합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농업분야에서도 회원국 간 농업생산 분야의 보완관계가 성립되었다. 그 결과 북부 유럽은 곡물, 낙농, 육류를 공급할 수 있었고, 남부 유럽은 과일, 채소, 포도주 등의 특화가 가능하였다.

동아시아 국가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역내 농산물 교역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면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농산물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를 심화시켜 나간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은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별 농업분야의 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및 농업 발전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생산 요소의 부존 정도, 기술발전 정도, 농업의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부존 자원의 집약도가 다르고 품목별 특화에 있어서도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 구조조정은 상호 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보다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별 역할 조정 정도에 따라 경쟁 관계의 완화를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의 기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 3국의 경우 중국은 역내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 역내 교역 및 경쟁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중국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수출국이며 한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 곡물 수입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곡물 교역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곡물 공급 능력을 증대시켜 동북아 역내 곡물 자급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면 식량안보와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 경쟁 구도 완화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농업 구조조정은 곡물의 재배면적 감소는 물론 작물별 재배면적 구성비도 감소하고 있어 곡물 공급 자로서의 역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채소와 과일의 생산 면적

및 구성비는 증가하여 역내 교역의 경쟁관계는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곡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배려(쿼터 물량 배정, 투자, 기술 협력 등)와 중국의 정책 조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상호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규모 농산물 수입시장은 증가하는 중국 농산물의 역내 완충지역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 시장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역내 식량안보 및 농업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곡물 수입에 있어서 국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대중국 수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교역은 상업적 고려가 최우선이므로 가격과 품질 등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남아 국가 간 신뢰는 지난 40여년에 가까운 역내 협력 및 제도적 발전 과정을 통해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간에는 영토 및 역사 문제 등에서 보듯이 신뢰 구축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리더십 부족과 중국의 경제력 부족 상황에서 양국은 패권경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역내 상황을 타개할 교량적,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연계할 수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위권 세력으로 독특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수출입 국가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일본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ASEAN 국가로부터 신선농산물을 수입하고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분업적 구조를 보인다. 한국은 ASEAN 국가들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은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한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해나감으로써 ASEAN이 한국과 전략적 제휴를 추구하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군사 측면은 물론 심리적으

로도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는 ASEAN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은 높으나, 그동안 한국은 북한 및 한-미 동맹에 외교력을 집중하며 ASEAN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였다.

■ 농업협력 사업의 강화

농업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의 보완 및 상호 이해와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일본은 농업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상품양허에서 ASEAN의 양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업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상품양허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 사업 시행은 농산물 교역 증대와 유사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협력, 인적 교류, 유전자원 교류, 저장·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투자 등 단일시장을 향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다양한 분야의 농업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역내 국가들의 유용한 유전자원 교환 및 활용도 고려해볼 점이다. 친환경 농업 관련 기술, 유통 및 가공 기술 등의 교류는 향후 증대될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위해요소 감축, 교역원활화를 통한 경제통합 여건 조성 등에 기여할 것이다.

사후적 보완대책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EU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블록에서 시작하여 점차 통합의 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다. 느슨한 형태의 지역통합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형태에서 출발하여 국가연합, 공동시장, 연방국가(합중국) 등의 형태로 발

전하는 것이다.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의 이해관계 조정 여부에 따라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의 수준과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초기 단계의 FTA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물론 투자, 기술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협정체결을 통해 농업부문의 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FTA 체결 초기부터 농업부문의 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형성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EU는 일찍이 농업 분야가 제조업, 서비스업과 달리 기후조건, 동식물 질병을 비롯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생산 및 수요의 균형 달성이 일반적인 재화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EU와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U의 공동농업정책 도입 경험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공동 농업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럽 공동농업정책의 재정은 GDP 기준, 부가가치세 성격의 조세부담 방식, 농산물 수입 관세 등으로 조성되었다. 유럽 연합의 재정 가운데 농업 보조금은 축소되는 추세이나 1970년대 후반에는 유럽 공동체 재정의 70% 이상이 농업보증기금으로 사용되는 등 회원국 간 농업부문의 이해관계 조정에 많은 부분이 집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해서도 유럽의 공동농업정책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즈키 노부히로(鈴木宣弘)는 한·중·일 3국이 공동농업정책을 도입할 경우 쌀에 대한 재정부담을 추정한 바 있다. 한·중·일의 재정부담 비율은 22:8:70이 되고, 보상액은 일본 4,708억 엔, 한국 1,013억 엔으로 추정하였다¹³. 중국 미작농가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하나의 단순한 예에 속하지만 농업정책 수행에 있어서 협력이 가능할

¹³ 古塚秀, "일본에 있어서 농산물 무역의 전개와 일본농업", 『WTO 체제하의 농산물무역의 신국면』, 돗토리대학대학원연합농학연구과 일중한합동국제세미나 자료(2008. 1. 17.)에서 인용.

것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동아시아 FTA에 따른 민감품목 시장개방과 그에 대한 보상체계를 도입할 경우 국제적 규범(WTO 등)에 위배될 수 있다. 유럽은 국제 규범에 맞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보상을 축소해 왔다. 아시아 국가들이 새롭게 공동농업정책을 도입한다면 시장통합에 따른 국가별, 주요 품목별 이익과 피해를 추정하여 국가별 보상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생산 및 교역 비연계(De-coupled) 방식으로 농가별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 8 장

요약 및 결론

동아시아 역내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으로 양분된다. 중국과 ASEAN이 농산물 수출국이라면 한국과 일본은 수입국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일본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2000~05년 연평균 300억 달러).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ASEAN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국은 감소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동아시아 역내 곡물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은 쌀, 옥수수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쌀은 중국과 ASEAN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ASEAN과 중국은 상호 쌀을 수출입하고 있으나 ASEAN의 대중국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2000~05년 평균 동아시아 역내 쌀 교역 규모는 5억 9,000만 달러이다. 이 연구에서 GTAP과 GSIM으로 쌀의 시장개방 효과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쌀 수출은 2억 9,000만 달러(GTAP)에서 2억 5,000만 달러(GSIM) 증가하고, ASEAN의 쌀 수출은 1억 8,000만 달러(GTAP)에서 6,000만 달러(GSIM)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교역 증대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이 될 전망이다. 옥수수 교역은 중국의 수출을 중심으로 교역 증대가 예상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4,000만 달러).

과일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온대성 과일과 열대성 과일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3개국은 모두 동남아시아 시장에 온대성 과일을 수출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는 열대성 과일을 동북아시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과일류의 교역은 식물검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규모가 크지 않다. ASEAN은 한·중·일 3국에 바나나를 연간 3억 달러 정도 수출하고, 사과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2000~05년 평균 1억 달러).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의 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동아시아

FTA로 ASEAN의 바나나 수출은 600만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사과 수출은 1,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사과 수출 증가는 100만 달러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FTA가 과일류 역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중국이 수출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양념채소 역내 수출 규모는 마늘 1억 5,000만 달러, 고추 7,000만 달러, 양파 4,300만 달러 수준이다. 동아시아 FTA로 중국의 마늘 수출은 2,4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주로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1,500만 달러). 중국의 양파 수출도 2,400만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54%가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이다. 동아시아 FTA로 증가하는 양념채소류 교역의 대부분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증가로 볼 수 있다.

육류의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가축질병 문제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거의 없다. 한국은 돼지고기를 일본과 ASEAN에 수출하고, 닭고기를 중국과 ASEAN에서 수입한다. 중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ASEAN에 수출하지만 닭고기는 ASEAN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한다. ASEAN은 닭고기를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돼지고기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교역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시아 FTA로 인한 육류의 교역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시아 국별 농산물 경쟁력

쌀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ASEAN의 경우 국가별로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국가도 있다. ASEAN은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중국은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EAN과 중국은 장립종과 중·단립종으로 분리된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시장개방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단립종 시장에서는 중국이 ASEAN보다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동아시아 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ASEAN 시장에 밀을 수출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경우 동아시아 역내에서 ASEAN의 가격경쟁력은 가장 높지만 ASEAN의 수출 잠재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중국은 대두에 있어서 ASEAN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우위 지수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감자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특히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옥수수의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중국의 옥수수는 비교우위 지수로 평가할 때 동아시아 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일은 식물검역 규정에 의한 교역 제한으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가운데 교역이 가능한 국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온대성 과일은 동북아 국가들이 ASEAN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열대성 과일은 ASEAN 국가들이 동북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중국은 온대성 과일의 가격경쟁력이 한국과 일본보다 높으나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제한되어 있어 잠재적 경쟁력에 머무르고 있다. 온대성 과일 가운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한국과 중국의 배, 중국의 사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ASEAN은 바나나의 역내 경쟁력이 높다. 감귤은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건고추의 가격 경쟁력은 ASEAN이 중국보다 높으나 시장 점유율 및 비교우위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국이 ASEAN보다 앞서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ASEAN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고, 한국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ASEAN은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 마늘과 양파의 경우 중국이 역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쇠고기의 역내 교역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가격경쟁력 정도에 불과하다.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역내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역내에서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돼지고기에 있어서 일본 및 ASEAN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보다 2배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위생조건에 의한 교역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닭고기의 경쟁력은 ASEAN이 중국보다 높다. ASEAN은 특히 일본 닭고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아시아 FTA의 영향

동아시아 FTA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GTAP 모형으로 동아시아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를 추정 한 결과 GDP 변화율은 한국 2.68%, 일본 1.41%, 중국 0.46%, ASEAN 0.76%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는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외 국가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AP 모형에 의하면 동아시아 FTA로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은 각각 7.6%, 9.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일본의 쌀 수입 증가는 각각 8,200만 달러,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일본·한국은 기타 농산물(가공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수입이 수출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반적으로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옥수수 등 기타 곡물의 수입 증가가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축산, 과일 및 채소, 미작 부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역내 수입 증가 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과 ASEAN은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수출 증가는 50억 달러, 수입 증가는 15억 달러로 동아시아 FTA로 인한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SEAN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중국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교역유형의 변

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장 1절의 농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부분과 같은 교역 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GSIM 모형에 의한 역내 농산물 교역 변화도 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GTAP 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로 인한 곡물류 교역 변화는 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쌀 수출 증가는 중국 2억 5,000만 달러, ASEAN 6,0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쌀 수입 증가는 한국 5,200만 달러, 일본 2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나 GTAP 모형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옥수수, 대두, 밀 등의 교역 증가는 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념채소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중국의 수출 증가와 기타 역내 국가의 수입 증가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증가 규모는 마늘과 양파 모두 2,400만 달러 수준이며, 한국이 50% 이상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아시아 FTA로 중국과 한국은 사과, 배, 포도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중국의 과일류 수출 증가는 사과와 배 각각 1,000만 달러, 포도 600만 달러 규모이다. 한국의 사과, 배 수출은 각각 100만 달러 증가하고 포도 수출은 1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ASEAN의 바나나 수출 증가는 600만 달러 수준이며, 파인애플 수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수출은 한국, 중국, ASEAN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는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ASEAN 시장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육류의 교역 변화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아시아 FTA와 농업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역내 양자간 FTA 관계가 완료된 이후 추진될 수도 있고, 중·일 FTA 등 양자간 FTA 추진이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 간의 FTA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FTA가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FTA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에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농업부문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은 미미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므로 역외 국가들과의 FTA도 상당히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에서 농업분야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쌀, 사과와 배 등 일부 온대성 과일, 양념채소 등이 양자간 FTA에서 미개방 분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FTA 협상에 있어서는 일부 민감품목만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대상으로 남게 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기타 품목은 실질적인 교역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보완하여 동아시아 FTA 협상 이전에 역내 교역 원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작 부문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 피해에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 시장개방 관련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역내 농산물 무역은 과일 분야의 경우 온대성 과일과 열대성 과일의 산업 내 무역을 통한 교역 활성화와 보완적 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업의 경우 역내 쇠고기 교역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 간에 산업 내 무역 증가가 예상된다. 양념채소와 기타곡물의 경우 중국이 역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공동의 대책이 요구된다.

시장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산업 내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FTA 등 시장통합 협상 이전에 핵심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나갈 적절한 기구를 역내에 설치함으로써 시장통합의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FTA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초기 단계이며, 시장통합 이전 단계에서부터 역내 교역 의존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필요

하다. 동식물검역, 통관절차, 규격, 표시, 표준 등을 조화시키고 정보 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FTA는 필연적으로 농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고 여기에 따른 유해 식품 및 유해 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이러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 유해 병해충 유입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식품안전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생산이력시스템에 대한 표준 및 정보 교환 방안 등은 조기에 논의할수록 좋다. 그밖에 동식물검역(SPS),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식품 생산과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역 원활화와 지역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통의 표시, 규격, 인증 등 통관 및 유통 관련 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별 농업분야의 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요소의 부존 정도, 기술발전 정도, 농업의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부존자원 집약도가 다르고 품목별 특화에 있어서도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며,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구조 조정도 상호 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보다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역내 교역 활성화 잠재력과 필요성은 높다.

농업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의 보완 및 상호 이해와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농업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상품양허에 따른 이해관계를 보완할 수 있다. 농업 및 농촌발전, 생산 단계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위해 요인 제어 등을 위한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단계별 기술 개발 및 투자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기술 협력, 인적 교류, 유전자원 교류, 저장·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투자 등 단일시장을 향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다양한 분야의 농업협력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역내 국가들의 유용한 유전자원 교환 및 활용,

친환경 농업 관련 기술, 유통 및 가공 기술 등의 교류는 향후 증대될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위해요소 감축 등과 함께 교역원활화를 통한 경제통합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쌀 등 일부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 FTA 이전에 형성될 양자간 FTA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쌀의 생산 감소는 한국 10억 달러, 일본 41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은 쌀과 기타 곡물 분야의 피해 보상이 요구되며, 일본은 쌀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보상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본은 제조업 등 기타 부문의 이익이 예상되고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예산에 기여할 부분이 크고 보상액 수령 규모도 크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은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농업부문 시장개방에 따른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면 시장통합에 따른 국가별, 주요 품목별 이익과 피해를 추정하여 국가별 보상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생산 및 교역 비연계(De-coupled) 방식으로 농가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GSIM 모형에 의한 수입 수요와 수출 공급 탄성치

$X_{i,r}$: Exports, $P_{i,v}$: Export prices, $P_{i,m}$: The importing country's domestic wholesale prices, P_c : Production cost index
 $M_{i,r}$: Imports, $P_{i,m}$: The importing country's domestic wholesale prices, $P_{i,x}$: Each country's export price, Y : Import count

사과

한국	수출	$\log(X_{i,r}) = 50.253 + 1.429\log(P_{i,v}) - 0.451\log(P_{i,m}) - 3.125\log(P_c) + \varepsilon$ (1.12) (-0.46) (-0.41) Adj-R ² : 0.86
	수입	$\log(M_{i,v}) = 34.357 + 1.247\log(P_{i,m}) - 0.980\log(P_{i,x}) + 3.160\log(Y) + \varepsilon$ (0.33) (-4.72) (1.06) Adj-R ² : 0.81
중국	수출	$\log(X_{i,r}) = 47.285 + 2.947\log(P_{i,v}) - 0.354\log(P_{i,m}) - 2.134\log(P_c) + \varepsilon$ (1.65) (-0.23) (-1.01) Adj-R ² : 0.74
	수입	$\log(M_{i,v}) = 43.214 + 0.121\log(P_{i,m}) - 1.02\log(P_{i,x}) + 1.324\log(Y) + \varepsilon$ (0.20) (-3.24) (5.43) Adj-R ² : 0.94
일본	수출	$\log(X_{i,r}) = 78.564 + 0.641\log(P_{i,v}) - 0.128\log(P_{i,m}) - 1.013\log(P_c) + \varepsilon$ (2.74) (-0.65) (-3.14) Adj-R ² : 0.96
	수입	$\log(M_{i,v}) = 26.142 + 0.214\log(P_{i,m}) - 1.328\log(P_{i,x}) + 0.985\log(Y) + \varepsilon$ (3.45) (-2.12) (2.27) Adj-R ² : 0.95
ASEAN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 = 34.214 + 1.021\log(P_{i,m}) - 0.207\log(P_{i,x}) + 1.213\log(Y) + \varepsilon$ (7.45) (-6.14) (1.24) Adj-R ² : 0.91

배

한국	수출	$\log(X_{i,r}) = 32.145 + 1.123\log(P_{i,v}) - 0.954\log(P_{i,m}) - 1.324\log(P_c) + \varepsilon$ (3.64) (-1.24) (-2.45) Adj-R ² : 0.92
	수입	$\log(M_{i,v}) = 24.541 + 0.457\log(P_{i,m}) - 0.980\log(P_{i,x}) + 1.214\log(Y) + \varepsilon$ (4.12) (-3.14) (2.11) Adj-R ² : 0.94

중국	수출	$\log(X_{i,r}) = 36.282 + 2.945\log(P_{i,v}) - 0.954\log(P_{i,m}) - 1.145\log(P_c) + \varepsilon$ (2.12) (-1.21) (-0.98) Adj-R ² :0.92
	수입	$\log(M_{i,v}) = 34.652 + 0.085\log(P_{i,m}) - 1.121\log(P_{i,x}) + 2.314\log(Y) + \varepsilon$ (1.67) (-7.32) (4.28) Adj-R ² :0.95
일본	수출	$\log(X_{i,r}) = 54.547 + 1.006\log(P_{i,v}) - 0.954\log(P_{i,m}) - 2.123\log(P_c) + \varepsilon$ (3.64) (-1.24) (-2.34) Adj-R ² :0.95
	수입	$\log(M_{i,v}) = 54.321 + 0.796\log(P_{i,m}) - 1.234\log(P_{i,x}) + 1.654\log(Y) + \varepsilon$ (2.34) (-1.16) (2.04) Adj-R ² :0.86
ASEAN	수출	$\log(X_{i,r}) = 64.321 + 0.324\log(P_{i,v}) - 1.235\log(P_{i,m}) - 0.728\log(P_c) + \varepsilon$ (4.32) (-2.43) (-1.45) Adj-R ² :0.84
	수입	$\log(M_{i,v}) = 324.457 + 1.065\log(P_{i,m}) - 0.665\log(P_{i,x}) + 0.642\log(Y) + \varepsilon$ (2.31) (-4.12) (0.14) Adj-R ² :0.92

바나나

Korea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 = 32.456 + 0.124\log(P_{i,m}) - 0.209\log(P_{i,x}) + 1.241\log(Y) + \varepsilon$ (2.37) (-1.56) (4.12) Adj-R ² :0.98
China	수출	$\log(X_{i,r}) = 64.124 + 0.984\log(P_{i,v}) - 1.121\log(P_{i,m}) - 0.954\log(P_c) + \varepsilon$ (1.04) (-2.21) (-1.32) Adj-R ² :0.86
	수입	$\log(M_{i,v}) = 52.478 + 0.954\log(P_{i,m}) - 1.212\log(P_{i,x}) + 1.324\log(Y) + \varepsilon$ (2.34) (-1.54) (3.21) Adj-R ² :0.94
Japan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 = 27.654 + 1.234\log(P_{i,m}) - 0.318\log(P_{i,x}) + 0.954\log(Y) + \varepsilon$ (1.67) (-2.21) (3.28) Adj-R ² :0.92
ASEAN	수출	$\log(X_{i,r}) = 27.485 + 1.541\log(P_{i,v}) - 0.654\log(P_{i,m}) - 1.245\log(P_c) + \varepsilon$ (2.12) (-1.53) (-3.21) Adj-R ² :0.91
	수입	No records

포도

한국	수출	$\log(X_{i,r}) = 25.123 + 0.984\log(P_{i,v}) - 0.654\log(P_{i,m}) - 1.123\log(P_c) + \varepsilon$ (2.34) (-1.95) (-1.42) Adj-R ² : 0.92
	수입	$\log(M_{i,v}) = 54.322 + 0.654\log(P_{i,m}) - 0.833\log(P_{i,x}) + 0.654\log(Y) + \varepsilon$ (3.45) (-1.65) (3.24) Adj-R ² : 0.86
중국	수출	$\log(X_{i,r}) = 23.142 + 1.253\log(P_{i,v}) - 0.865\log(P_{i,m}) - 1.234\log(P_c) + \varepsilon$ (2.78) (-1.24) (-3.21) Adj-R ² : 0.91
	수입	$\log(M_{i,v}) = 32.451 + 1.021\log(P_{i,m}) - 1.426\log(P_{i,x}) + 0.654\log(Y) + \varepsilon$ (1.67) (-2.64) (4.41) Adj-R ² : 0.91
일본	수출	$\log(X_{i,r}) = 32.986 + 1.124\log(P_{i,v}) - 0.687\log(P_{i,m}) - 1.332\log(P_c) + \varepsilon$ (2.75) (-3.21) (-2.04) Adj-R ² : 0.92
	수입	$\log(M_{i,v}) = 32.654 + 0.657\log(P_{i,m}) - 0.846\log(P_{i,x}) + 1.032\log(Y) + \varepsilon$ (2.12) (-3.24) (2.14) Adj-R ² : 0.86
ASEAN	수출	$\log(X_{i,r}) = 31.254 + 0.794\log(P_{i,v}) - 0.531\log(P_{i,m}) - 1.452\log(P_c) + \varepsilon$ (1.24) (-2.07) (-3.14) Adj-R ² : 0.94
	수입	$\log(M_{i,v}) = 32.541 + 0.654\log(P_{i,m}) - 0.543\log(P_{i,x}) + 0.684\log(Y) + \varepsilon$ (2.12) (-1.32) (2.14) Adj-R ² : 0.93

파인애플

한국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 = 65.321 + 0.014\log(P_{i,m}) - 0.754\log(P_{i,x}) + 1.021\log(Y) + \varepsilon$ (2.21) (-3.21) (1.47) Adj-R ² : 0.91
중국	수출	$\log(X_{i,r}) = 27.143 + 1.014\log(P_{i,v}) - 0.654\log(P_{i,m}) - 1.324\log(P_c) + \varepsilon$ (2.12) (-1.05) (-3.45) Adj-R ² : 0.92
	수입	$\log(M_{i,v}) = 24.321 + 0.864\log(P_{i,m}) - 0.976\log(P_{i,x}) + 0.985\log(Y) + \varepsilon$ (1.68) (-2.12) (2.75) Adj-R ² : 0.91
일본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 = 32.124 + 0.654\log(P_{i,m}) - 0.429\log(P_{i,x}) + 0.654\log(Y) + \varepsilon$ (2.32) (-1.14) (5.32) Adj-R ² : 0.84

ASEAN	수출	$\log(X_{i,r})=65.324+1.116\log(P_{i,v})-0.965\log(P_{i,m})-0.874\log(P_c)+\varepsilon$ (1.34) (-0.68) (-2.14) Adj-R ² :0.87
	수입	No records

쌀

한국	수출	$\log(X_{i,r})=54.145+0.984\log(P_{i,v})-0.745\log(P_{i,m})-1.245\log(P_c)+\varepsilon$ (2.24) (-2.32) (-1.15) Adj-R ² :0.92
	수입	No records
중국	수출	$\log(X_{i,r})=12.454+1.021\log(P_{i,v})-0.754\log(P_{i,m})-1.324\log(P_c)+\varepsilon$ (3.67) (-1.04) (-2.14) Adj-R ² :0.95
	수입	$\log(M_{i,v})=24.657+0.458\log(P_{i,m})-1.245\log(P_{i,x})+0.874\log(Y)+\varepsilon$ (2.31) (-1.24) (3.24) Adj-R ² :0.89
일본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27.541+0.364\log(P_{i,m})-1.124\log(P_{i,x})+0.367\log(Y)+\varepsilon$ (2.16) (-1.11) (2.01) Adj-R ² :0.84
ASEAN	수출	$\log(X_{i,r})=54.217+1.124\log(P_{i,v})-1.004\log(P_{i,m})-0.864\log(P_c)+\varepsilon$ (2.23) (-1.43) (-2.54) Adj-R ² :0.95
	수입	$\log(M_{i,v})=65.214+1.478\log(P_{i,m})-0.823\log(P_{i,x})+0.754\log(Y)+\varepsilon$ (1.15) (-3.54) (0.52) Adj-R ² :0.81

밀가루

한국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24.156+0.119\log(P_{i,m})-0.431\log(P_{i,x})+1.012\log(Y)+\varepsilon$ (1.24) (-2.41) (3.07) Adj-R ² :0.88

중국	수출	$\log(X_{i,r}) = 28.654 + 0.541\log(P_{i,v}) - 1.145\log(P_{i,m}) - 0.865\log(P_c) + \varepsilon$ (2.18) (-1.13) (-3.21) Adj-R ² :0.92
	수입	$\log(M_{i,v}) = 64.124 + 0.854\log(P_{i,m}) - 1.031\log(P_{i,x}) + 0.764\log(Y) + \varepsilon$ (1.21) (-5.32) (3.87) Adj-R ² :0.89
일본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 = 31.214 + 0.874\log(P_{i,m}) - 0.321\log(P_{i,x}) + 0.754\log(Y) + \varepsilon$ (2.21) (-6.32) (2.14) Adj-R ² :0.91
ASEAN	수출	$\log(X_{i,r}) = 16.324 + 1.109\log(P_{i,v}) - 0.745\log(P_{i,m}) - 0.654\log(P_c) + \varepsilon$ (1.24) (-1.24) (-4.35) Adj-R ² :0.85
	수입	$\log(M_{i,v}) = 51.247 + 0.412\log(P_{i,m}) - 1.425\log(P_{i,x}) + 0.657\log(Y) + \varepsilon$ (1.68) (-3.24) (2.28) Adj-R ² :0.94

옥수수

한국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 = 32.014 + 0.654\log(P_{i,m}) - 0.234\log(P_{i,x}) + 0.864\log(Y) + \varepsilon$ (2.34) (-1.68) (2.13) Adj-R ² :0.92
중국	수출	$\log(X_{i,r}) = 34.652 + 0.776\log(P_{i,v}) - 0.657\log(P_{i,m}) - 0.765\log(P_c) + \varepsilon$ (3.21) (-2.16) (-1.28) Adj-R ² :0.88
	수입	$\log(M_{i,v}) = 27.145 + 0.648\log(P_{i,m}) - 1.116\log(P_{i,x}) + 0.542\log(Y) + \varepsilon$ (1.21) (-5.32) (3.87) Adj-R ² :0.67
일본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_{i,v}) = 27.48 + 0.416\log(P_{i,m}) - 0.541\log(P_{i,x}) + 0.684\log(Y) + \varepsilon$ (1.67) (-5.32) (3.28) Adj-R ² :0.87
ASEAN	수출	$\log(X_{i,r}) = 34.245 + 0.96\log(P_{i,v}) - 0.754\log(P_{i,m}) - 1.24\log(P_c) + \varepsilon$ (2.14) (-3.24) (-5.21) Adj-R ² :0.83
	수입	$\log(M_{i,v}) = 63.241 + 0.657\log(P_{i,m}) - 1.315\log(P_{i,x}) + 0.845\log(Y) + \varepsilon$ (2.17) (-2.34) (7.65) Adj-R ² :0.87

대두

한국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31.542+0.754\log(Pi,m)-0.643\log(Pi,x)+0.415\log(Y)+\varepsilon$ (2.65) (-4.67) (5.14) Adj-R ² :0.92
중국	수출	$\log(Xi,r)=14.657+2.013\log(Pi,v)-0.956\log(Pi,m)-1.124\log(Pc)+\varepsilon$ (3.32) (-2.15) (-1.76) Adj-R ² :0.86
	수입	$\log(Mi,v)=54.145+0.874\log(Pi,m)-1.84\log(Pi,x)+0.624\log(Y)+\varepsilon$ (2.41) (-3.45) (6.74) Adj-R ² :0.94
일본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75.213+0.754\log(Pi,m)-0.316\log(Pi,x)+0.384\log(Y)+\varepsilon$ (1.57) (-4.38) (6.32) Adj-R ² :0.88
ASEAN	수출	$\log(Xi,r)=54.374+0.914\log(Pi,v)-0.724\log(Pi,m)-0.684\log(Pc)+\varepsilon$ (2.31) (-6.32) (-2.07) Adj-R ² :0.88
	수입	$\log(Mi,v)=32.475+0.562\log(Pi,m)-0.912\log(Pi,x)+0.324\log(Y)+\varepsilon$ (3.24) (-4.12) (2.65) Adj-R ² :0.89

마늘

한국	수출	$\log(Xi,r)=27.145+0.538\log(Pi,v)-1.032\log(Pi,m)-0.564\log(Pc)+\varepsilon$ (2.31) (-4.42) (-1.65) Adj-R ² :0.87
	수입	$\log(Mi,v)=36.412+0.458\log(Pi,m)-2.012\log(Pi,x)+0.965\log(Y)+\varepsilon$ (2.24) (-1.54) (1.32) Adj-R ² :0.92
중국	수출	$\log(Xi,r)=34.214+1.742\log(Pi,v)-0.456\log(Pi,m)-1.001\log(Pc)+\varepsilon$ (3.14) (-2.28) (-1.67) Adj-R ² :0.93
	수입	$\log(Mi,v)=67.531+0.452\log(Pi,m)-0.647\log(Pi,x)+1.089\log(Y)+\varepsilon$ (2.23) (-1.65) (3.45) Adj-R ² :0.91

일본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19.324+0.567\log(Pi,m)-0.647\log(Pi,x)+0.687\log(Y)+\varepsilon$ (1.28) (-3.21) (1.45) Adj-R ² :0.92
ASEAN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27.465+1.657\log(Pi,m)-1.323\log(Pi,x)+0.674\log(Y)+\varepsilon$ (1.64) (-2.12) (4.68) Adj-R ² :0.93

양과

한국	수출	$\log(Xi,r)=27.365+0.432\log(Pi,v)-1.032\log(Pi,m)-0.687\log(Pc)+\varepsilon$ (1.67) (-2.01) (-3.24) Adj-R ² :0.91
	수입	$\log(Mi,v)=36.854+1.124\log(Pi,m)-1.978\log(Pi,x)+0.675\log(Y)+\varepsilon$ (2.34) (-1.47) (3.22) Adj-R ² :0.91
중국	수출	$\log(Xi,r)=36.282+2.945\log(Pi,v)-0.954\log(Pi,m)-1.145\log(Pc)+\varepsilon$ (1.24) (-2.31) (-1.98) Adj-R ² :0.85
	수입	$\log(Mi,v)=67.512+0.425\log(Pi,m)-0.558\log(Pi,x)+0.412\log(Y)+\varepsilon$ (2.31) (-4.65) (3.12) Adj-R ² :0.89
일본	수출	$\log(Xi,r)=54.547+1.006\log(Pi,v)-0.954\log(Pi,m)-2.123\log(Pc)+\varepsilon$ (2.64) (-3.21) (-1.15) Adj-R ² :0.91
	수입	$\log(Mi,v)=34.521+0.547\log(Pi,m)-1.754\log(Pi,x)+1.212\log(Y)+\varepsilon$ (3.37) (-2.07) (1.32) Adj-R ² :0.85
ASEAN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34.512+0.658\log(Pi,m)-1.128\log(Pi,x)+0.874\log(Y)+\varepsilon$ (3.68) (-2.12) (6.32) Adj-R ² :0.87

최고기

한국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25.642+1.012\log(Pi,m)-0.975\log(Pi,x)+1.321\log(Y)+\varepsilon$ (1.32) (4.32) (3.21) Adj-R ² :0.91
중국	수출	$\log(Xi,r)=27.654+0.321\log(Pi,v)-1.032\log(Pi,m)-0.654\log(Pc)+\varepsilon$ (1.14) (-2.25) (-1.65) Adj-R ² :0.88
	수입	$\log(Mi,v) = 56.321+0.541\log(Pi,m)-0.521\log(Pi,x)+1.654\log(Y)+\varepsilon$ (2.65) (-4.32) (3.32) Adj-R ² :0.92
일본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35.324+0.657\log(Pi,m)-1.307\log(Pi,x) +0.984\log(Y)+\varepsilon$ (1.68) (-2.35) (3.45) Adj-R ² :0.92
ASEAN	수출	$\log(Xi,r)=34.211+1.321\log(Pi,v)-0.987\log(Pi,m)-0.624\log(Pc)+\varepsilon$ (2.31) (-1.42) (-1.32) Adj-R ² :0.92
	수입	$\log(Mi,v)=27.354+0.635\log(Pi,m)-1.114\log(Pi,x)+0.754\log(Y)+\varepsilon$ (1.67) (-2.17) (4.32) Adj-R ² :0.88

돼지고기

한국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65.324+1.032\log(Pi,m)-1.227\log(Pi,x)+0.654\log(Y)+\varepsilon$ (3.64) (-7.64) (3.75) Adj-R ² :0.92
중국	수출	$\log(Xi,r)=27.143+1.214\log(Pi,v)-0.6541\log(Pi,m)-1.324\log(Pc)+\varepsilon$ (2.12) (-1.05) (-3.45) Adj-R ² :0.92
	수입	$\log(Mi,v)=24.321+0.864\log(Pi,m)-1.315\log(Pi,x)+0.985\log(Y)+\varepsilon$ (1.68) (-2.12) (2.75) Adj-R ² :0.91

일본	수출	No records
	수입	$\log(Mi,v)=32.541+0.654\log(Pi,m)-0.981\log(Pi,x)+0.684\log(Y)+\varepsilon$ (2.12) (-1.32) (2.14) Adj-R ² :0.93
ASEAN	수출	$\log(Xi,r)=31.254+1.887\log(Pi,v)-0.531\log(Pi,m)-1.452\log(Pc)+\varepsilon$ (1.24) (-2.07) (-3.14) Adj-R ² :0.94
	수입	$\log(Mi,v)=32.541+0.654\log(Pi,m)-1.667\log(Pi,x)+0.684\log(Y)+\varepsilon$ (2.12) (-1.32) (2.14) Adj-R ² :0.93

닭고기

한국	수출	$\log(Xi,r)=32.145+1.041\log(Pi,v)-0.954\log(Pi,m)-1.324\log(Pc)+\varepsilon$ (3.64) (-1.24) (-2.45) Adj-R ² :0.92
	수입	$\log(Mi,v)=24.541+0.457\log(Pi,m)-1.756\log(Pi,x)+1.214\log(Y)+\varepsilon$ (4.12) (-3.14) (2.11) Adj-R ² :0.94
중국	수출	$\log(Xi,r)=36.282+0.891\log(Pi,v)-0.954\log(Pi,m)-1.145\log(Pc)+\varepsilon$ (2.12) (-1.21) (-0.98) Adj-R ² :0.92
	수입	$\log(Mi,v)=34.652+0.085\log(Pi,m)-1.446\log(Pi,x)+2.314\log(Y)+\varepsilon$ (1.67) (-7.32) (4.28) Adj-R ² :0.95
일본	수출	$\log(Xi,r)=54.547+1.121\log(Pi,v)-0.954\log(Pi,m)-2.123\log(Pc)+\varepsilon$ (3.64) (-1.24) (-2.34) Adj-R ² :0.95
	수입	$\log(Mi,v)=54.321+0.796\log(Pi,m)-1.087\log(Pi,x)+1.654\log(Y)+\varepsilon$ (2.34) (-1.16) (2.04) Adj-R ² :0.86
ASEAN	수출	$\log(Xi,r)=64.321+1.342\log(Pi,v)-1.235\log(Pi,m)-0.728\log(Pc)+\varepsilon$ (4.32) (-2.43) (-1.45) Adj-R ² :0.84
	수입	$\log(Mi,v)=324.457+1.065\log(Pi,m)-1.967\log(Pi,x)+0.642\log(Y)+\varepsilon$ (2.31) (-4.12) (0.14) Adj-R ² :0.92

부 록 2

국가별 주요 품목의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CAI) 지수

부표 1. 한국 주요 품목의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CAI) 지수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보리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밀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대두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자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옥수수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사과	ASEAN	3.5	-	-	-	-	-	3.5
	일본	-	60.7	-	-	-	-	60.7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배	ASEAN	0.8	0.6	0.4	0.4	0.2	0.1	0.4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포도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부표 1 계속)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감귤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9.2	6.9	-	-	-	-	8.1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오렌지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복숭아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바나나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견고추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2.9	1.1	1.7	1.7	1.3	1.3	1.7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마늘	ASEAN	-	1.9	-	-	-	0.2	1.1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양파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	-	0.0	0.0	0.0	0.0	0.0
쇠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돼지고기	ASEAN	-	10.4	12.5	19.1	19.3	34.3	19.1
	일본	0.4	-	-	-	0.2	-	0.3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닭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일본	-	0.7	0.9	1.0	-	1.1	0.9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주: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자료를 이용함.

부표 2. 중국 주요 품목의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CAI) 지수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ASEAN	0.5	0.3	0.3	0.2	0.2	0.3	0.3
	한국	1.0	2.3	0.9	0.8	2.4	2.8	1.7
	일본	0.2	0.6	0.4	0.4	0.8	1.0	0.6
보리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밀	ASEAN	-	0.7	0.5	1.3	1.3	2.2	1.2
	한국	-	4.1	3.1	1.3	2.1	-	2.7
	일본	-	-	-	0.0	0.1	0.2	0.1
대두	ASEAN	0.1	0.3	0.2	0.2	0.1	0.1	0.2
	한국	0.4	0.8	0.5	0.6	0.7	0.9	0.7
	일본	0.8	1.0	1.1	1.3	1.0	1.2	1.1
감자	ASEAN	6.2	7.3	7.0	7.3	8.2	5.8	7.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	0.0	0.0	0.0
옥수수	ASEAN	1.7	2.3	1.7	1.3	0.7	0.5	1.4
	한국	0.7	0.9	0.8	0.6	0.9	0.9	0.8
	일본	0.0	0.1	0.0	0.1	0.2	0.1	0.1
사과	ASEAN	2.3	2.4	2.1	1.8	2.7	2.8	2.3
	한국	0.0	0.0	0.0	-	-	-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포도	ASEAN	-	-	6.0	4.8	6.1	5.7	5.7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부표 2 계속)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감귤	ASEAN	0.2	0.2	0.1	0.1	0.2	0.2	0.2
	한국	0.0	0.0	-	-	0.0	-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오렌지	ASEAN	-	-	-	2.4	2.1	4.7	3.1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복숭아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	-	-	-	-	-	-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바나나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1.2	1.4	0.8	0.6	0.7	0.5	0.9
견고추	ASEAN	1.3	0.6	0.5	0.6	0.5	0.5	0.7
	한국	2.0	1.5	1.3	0.7	0.6	0.4	1.1
	일본	1.5	0.7	0.6	0.5	0.3	0.3	0.7
마늘	ASEAN	0.4	0.6	0.4	0.3	0.5	0.5	0.5
	한국	15.1	0.9	0.6	0.7	0.5	0.4	3.0
	일본	0.7	0.5	0.4	0.4	0.4	0.3	0.5
양파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	-	-	0.1	0.1	0.5	0.2
	일본	-	-	0.2	0.1	0.1	0.4	0.2
쇠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돼지고기	ASEAN	3.2	4.4	1.8	1.1	1.6	1.6	2.3
	한국	-	-	-	-	0.0	0.1	0.1
	일본	0.0	0.0	0.0	0.0	0.0	0.0	0.0
닭고기	ASEAN	0.2	0.5	0.4	0.2	0.1	-	0.3
	한국	0.1	0.1	0.0	0.1	-	-	0.1
	일본	0.5	0.5	0.4	0.3	0.1	-	0.4

주: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자료를 이용함.

부표 3. 일본 주요 품목의 국별 비교우위(CAC) 지수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보리	ASEAN	-	-	-	0.0	-	0.0	0.0
	한국	-	-	-	0.0	-	0.0	0.0
	중국	-	-	-	0.0	-	0.0	0.0
밀	ASEAN	0.0	0.0	0.0	0.0	0.0	-	0.0
	한국	0.0	0.0	0.0	0.0	0.0	-	0.0
	중국	0.0	0.0	0.0	0.0	0.0	-	0.0
대두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자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옥수수	ASEAN	-	-	0.0	0.0	0.0	0.0	0.0
	한국	-	-	0.0	0.0	0.0	0.0	0.0
	중국	-	-	0.0	0.0	0.0	0.0	0.0
사과	ASEAN	147.1	0.0	34.5	21.6	32.2	18.9	42.4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포도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귤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부표 3 계속)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오렌지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복숭아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바나나	ASEAN	-	0.0	0.0	0.0	0.0	0.0	0.0
	한국	-	0.0	0.0	0.0	0.0	0.0	0.0
	중국	-	0.0	0.0	0.0	0.0	0.0	0.0
건고추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마늘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양파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쇠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돼지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닭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주: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자료를 이용함.

부표 4. 일본 주요 품목의 수입구조 반영 국별 비교우위(CAI) 지수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보리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밀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대두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자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옥수수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사과	ASEAN	56.8	-	15.6	9.5	18.6	11.1	22.3
	한국	0.0	0.0	0.0	-	-	-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포도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부표 4 계속)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감귤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	-	0.0	-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오렌지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복숭아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	-	-	-	-	-	-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바나나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견고추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마늘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양파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	-	0.0	0.0	0.0	0.0	0.0
쇠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돼지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닭고기	ASEAN	0.0	0.0	0.0	0.0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주: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자료를 이용함.

부표 5. ASEAN 주요 품목의 수입구조반영 국별 비교우위(CAI) 지수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쌀	한국	0.3	0.2	-	0.1	0.2	0.1	0.2
	일본	14.0	21.3	15.5	17.8	12.5	28.9	18.3
	중국	0.3	0.4	0.2	0.3	0.6	0.6	0.4
보리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밀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대두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감자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옥수수	한국	-	-	-	0.1	1.5	-	0.8
	일본	10.0	4.0	7.5	5.9	2.0	6.9	6.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사과	한국	0.0	0.0	0.0	-	-	-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배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포도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부표 5 계속)

품목	시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감귤	한국	0.0	0.0	-	-	0.0	-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오렌지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복숭아	한국	-	-	-	-	-	-	-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바나나	한국	2.8	2.7	3.0	2.8	2.8	-	2.8
	일본	217.0	201.6	167.0	203.3	249.5	59.0	182.9
	중국	1.8	3.2	3.2	4.4	6.2	7.9	4.5
견고추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63.2	11.1	5.3	6.2	24.3	34.1	24.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마늘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양파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	-	0.0	0.0	0.0	0.0	0.0
쇠고기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돼지고기	한국	0.0	0.0	0.0	0.0	0.0	0.0	0.0
	일본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0	0.0	0.0	0.0	0.0	0.0	0.0
닭고기	한국	2.2	2.3	2.6	3.5	13.7	-	4.9
	일본	122.7	120.9	209.7	201.1	175.1	-	165.9
	중국	0.0	0.0	0.0	0.0	-	-	0.0

주: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FAOSTAT(<http://faostat.fao.org>) 자료를 이용함.

부 록 3

국별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부표 6. 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0101	13.1	0905	13.1	1802	19.7
0102	57.9	0906	19.7	1803	19.7
0103	18.0	0907	19.7	1804	19.7
0104	18.0	0908	19.7	1805	19.7
0105	10.5	0909	19.7	1806	30.3
0106	13.5	0910	70.8	1901	39.4
0201	40.0	1001	4.2	1902	54.0
0202	40.0	1002	58.9	1903	27.0
0203	23.8	1003	359.1	1904	20.0
0204	22.5	1004	281.9	1905	22.3
0205	27.0	1005	403.5	2001	38.7
0206	18.0	1006	-	2002	40.5
0207	21.0	1007	394.2	2003	44.3
0208	20.3	1008	187.3	2004	34.5
0209	6.6	1101	8.7	2005	30.5
0210	24.0	1102	274.1	2006	35.4
0401	36.0	1103	426.8	2007	42.3
0402	141.2	1104	407.3	2008	49.1
0403	43.6	1105	304.0	2009	51.0
0404	47.8	1106	21.5	2101	45.4
0405	77.3	1107	188.3	2102	21.3
0406	36.0	1108	432.7	2103	54.0
0407	27.0	1109	16.4	2104	27.0
0408	29.9	1201	487.0	2105	40.6
0409	243.0	1202	230.5	2106	114.9
0410	19.7	1203	6.6	2201	13.1
0501	6.6	1204	5.0	2202	23.3
0502	6.6	1205	20.0	2203	30.0
0503	6.6	1206	36.0	2204	30.0
0504	27.0	1207	76.5	2205	30.0
0505	6.6	1208	27.0	2206	30.0
0506	10.2	1209	-	2207	99.5
0507	24.6	1210	40.9	2208	30.0
0510	13.1	1211	242.4	2209	8.0
0511	12.3	1212	16.5	2301	7.8

(부표 6 계속)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0601	26.5	1213	19.7	2302	6.3
0602	15.5	1214	57.3	2303	4.4
0603	36.0	1301	13.1	2304	1.8
0604	13.1	1302	130.5	2305	6.6
0701	304.0	1401	11.3	2306	10.5
0702	45.0	1402	6.6	2307	6.6
0703	156.0	1403	6.6	2308	41.9
0704	27.0	1404	8.2	2309	26.9
0705	32.4	1501	20.2	2401	54.0
0706	33.3	1502	18.0	2402	65.5
0707	27.0	1503	6.6	2403	61.5
0708	27.0	1505	6.6	2905	17.8
0709	63.0	1506	18.0	3301	40.2
0710	33.0	1507	12.6	3501	22.5
0711	77.1	1508	27.0	3502	13.0
0712	87.4	1509	27.0	3503	14.0
0713	176.9	1510	27.0	3504	13.0
0714	437.3	1511	27.0	3505	241.9
0801	32.8	1512	19.7	3809	18.0
0802	136.5	1513	23.4	3824	13.0
0803	90.0	1514	34.5	4101	5.0
0804	43.3	1515	71.0	4102	5.0
0805	89.5	1516	25.3	4103	5.9
0806	33.0	1517	19.7	4301	15.3
0807	45.0	1518	16.4	5001	51.0
0808	45.0	1520	13.1	5002	41.1
0809	40.8	1521	19.4	5003	9.0
0810	100.6	1522	16.4	5101	2.0
0811	72.0	1601	24.8	5102	2.0
0812	40.9	1602	62.6	5103	2.0
0813	128.5	1603	31.5	5201	2.0
0814	32.8	1701	40.4	5202	2.0
0901	41.8	1702	36.4	5203	2.0
0902	287.2	1703	12.7	5301	2.0
0903	26.2	1704	19.7	5302	2.0
0904	144.9	1801	16.4		

주: 평균 관세율은 종가세기준이며, 선택세의 종가세도 포함한 것임.

자료: 한국, 농림축산물품목분류 및 관세율, 2007.

부표 7. 중국의 품목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0101	5.00	0511	4.00	0904	20.00
0102	5.00	0601	6.40	0905	15.00
0103	7.50	0602	6.11	0906	10.85
0104	5.00	0603	16.50	0907	3.00
0105	6.00	0604	14.33	0908	6.33
0106	6.67	0701	13.00	0909	15.83
0201	14.67	0702	13.00	0910	13.14
0202	16.33	0703	13.00	1001	44.67
0203	17.00	0704	12.00	1002	1.50
0204	17.22	0705	11.50	1003	1.50
0205	20.00	0706	13.00	1004	1.00
0206	16.74	0707	13.00	1005	29.83
0207	19.80	0708	13.00	1006	44.97
0208	21.20	0709	12.76	1007	1.00
0209	21.71	0710	12.60	1008	1.80
0210	25.11	0711	13.00	1101	46.3
0401	15.00	0712	13.00	1102	27.36
0402	13.26	0713	2.97	1103	29.28
0403	15.00	0714	10.33	1104	32.80
0404	13.00	0801	12.26	1105	15.00
0405	15.00	0802	19.27	1106	16.67
0406	12.60	0803	10.00	1107	10.00
0407	15.71	0804	18.24	1108	17.50
0408	20.00	0805	14.29	1109	18.00
0409	15.00	0806	11.50	1201	2.40
0410	19.17	0807	17.20	1202	10.00
0501	15.00	0808	12.00	1203	15.00
0502	20.00	0809	13.75	1204	15.00
0503	15.00	0810	22.21	1205	18.22
0504	19.14	0811	30.00	1206	7.50
0505	1000	0812	30.00	1207	8.44
0506	12.00	0813	23.67	1208	12.00

(부표 7 계속)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0507	9.20	0814	25.00	1209	0.00
0508	12.00	0901	14.33	1210	15.00
0509	15.00	0902	15.00	1211	7.61
0510	5.10	0903	10.00	1212	17.11
1213	12.00	1703	8.00	2301	3.50
1214	7.00	1704	11.00	2302	4.60
1301	12.60	1801	8.00	2303	5.00
1302	14.84	1802	10.00	2304	5.00
1401	10.00	1803	10.00	2305	5.00
1402	15.00	1804	22.00	2306	5.00
1403	15.00	1805	15.00	2307	5.00
1404	8.00	1806	8.20	2308	5.00
1501	1.000	1901	16.67	2309	10.48
1502	8.00	1902	17.63	2401	10.00
1503	10.00	1903	15.00	2402	25.00
1504	12.80	1904	28.75	2403	57.00
1505	20.00	1905	18.33	2905	11.00
1506	21.00	2001	25.00	3301	19.15
1507	27.10	2002	20.80	3501	10.00
1508	10.00	2003	25.00	3502	10.00
1509	10.00	2004	19.00	3503	12.00
1510	10.00	2005	23.10	3504	5.50
1511	25.19	2006	30.00	3505	16.00
1512	9.48	2007	17.50	3809	10.00
1513	10.00	2008	17.81	3824	14.00
1514	27.10	2009	17.43	4101	6.09
1515	14.67	2101	28.58	4102	10.20
1516	15.00	2102	25.00	4103	19.64
1517	26.25	2103	20.17	4301	19.64
1518	10.00	2104	23.50	5001	6.00
1520	20.00	2105	19.00	5002	9.00
1521	20.00	2106	18.10	5003	9.00
1522	20.00	2201	18.13	5101	19.50
1601	15.00	2202	31.25	5102	9.00

(부표 7 계속)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품목	평균 관세율
1602	14.45	2204	20.50	5103	13.19
1603	23.60	2205	65.00	5201	20.50
1604	11.07	2206	53.60	5202	10.00
1605	8.65	2207	33.00	5203	20.20
1701	40.67	2208	18.36	5301	6.00
1702	26.00	2209	20.00	5302	5.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China, Customs Tariff, 2004.

부표 8. 일본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0101	0.00	0602	0.00	0905	0.00
0102	0.00	0603	0.00	0906	0.00
0103	5.67	0604	3.00	0907	1.20
0104	0.00	0701	3.65	0908	1.20
0105	0.00	0702	3.00	0909	3.00
0106	0.00	0703	4.83	0910	2.33
0201	38.50	0704	3.00	1001	5.00
0202	38.50	0705	3.00	1002	2.80
0203	2.15	0706	2.83	1003	0.00
0204	0.00	0707	3.00	1004	0.00
0205	0.00	0708	3.00	1005	0.50
0206	12.66	0709	3.46	1006	0.00
0207	8.00	0710	8.10	1007	1.00
0208	0.00	0711	8.50	1008	1.71
0209	6.00	0712	8.89	1101	18.75
0210	6.35	0713	5.32	1102	22.10
0401	23.61	0714	8.40	1103	20.04
0402	24.17	0801	2.00	1104	19.41
0403	28.82	0802	4.85	1105	20.00
0404	21.06	0803	3.00	1106	11.41
0405	35.00	0804	5.12	1107	0.00
0406	24.79	0805	7.33	1108	14.58

(부표 8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0407	12.77	0806	1.20	1109	21.30
0408	20.47	0807	4.67	1201	0.00
0409	22.50	0808	10.90	1202	5.00
0410	5.25	0809	6.63	1203	0.00
0501	0.00	0810	5.80	1204	0.00
0502	0.00	0811	11.46	1205	0.00
0503	0.00	0812	11.27	1206	0.00
0504	0.00	0813	8.19	1207	0.00
0505	0.00	0814	1.50	1208	4.20
0506	0.00	0901	6.00	1209	0.00
0510	1.00	0902	10.38	1210	3.87
0511	0.38	0903	12.00	1211	2.75
0601	0.00	0904	1.71	1212	7.86
1213	0.00	1806	22.68	2306	0.00
1214	0.00	1901	22.03	2307	0.00
1301	2.83	1902	16.73	2308	0.00
1302	2.77	1903	9.60	2309	1.45
1401	5.00	1904	19.82	2401	0.00
1402	0.00	1905	16.88	2402	6.47
1403	0.00	2001	11.28	2403	7.32
1404	0.67	2002	9.06	2905	9.90
1501	3.20	2003	11.19	3301	1.45
1502	0.00	2004	13.29	3501	2.70
1503	4.30	2005	13.47	3502	5.45
1505	2.10	2006	16.20	3503	8.80
1506	6.40	2007	21.63	3504	4.37
1509	0.00	2008	14.91	3505	6.80
1510	0.00	2009	20.31	4101	8.40
1511	3.17	2101	18.89	4102	0.00
1513	1.60	2102	6.20	4103	0.30
1515	1.42	2103	10.89	4301	0.35
1516	3.67	2104	9.13	5001	0.00
1517	14.64	2105	24.50	5002	0.00
1518	2.50	2106	18.60	5003	0.00
1520	5.00	2201	1.50	5101	0.00
1521	4.52	2202	11.50	5102	0.00
1522	2.25	2203	0.00	5103	0.00

(부표 8 계속)

품목군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품목군	MFN 관세율
1601	10.00	2204	22.53	5201	0.00
1602	17.94	2205	19.10	5202	0.00
1701	0.00	2206	0.00	5203	0.00
1702	14.97	2207	11.84	5301	0.00
1703	1.50	2208	1.05	5302	0.00
1704	19.80	2209	7.50		
1801	0.00	2301	0.00		
1802	0.00	2302	0.00		
1803	7.50	2303	0.00		
1804	0.00	2304	0.00		
1805	12.90	2305	0.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부 표 9. 브루나이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0.0	1302	0.0	2930	0.0
0102	0.0	1401	0.0	2931	0.0
0103	0.0	1402	0.0	2932	0.0
0104	0.0	1403	0.0	2933	0.0
0105	0.0	1404	0.0	2934	0.0
0106	0.0	1501	0.0	2935	0.0
0201	0.0	1502	0.0	2936	0.0
0202	0.0	1503	0.0	2937	0.0
0203	0.0	1504	0.0	2938	0.0
0204	0.0	1505	0.0	2939	0.0
0205	0.0	1506	0.0	2940	0.0
0206	0.0	1507	0.0	2941	0.0
0207	0.0	1508	0.0	2942	0.0
0208	0.0	1509	0.0	3301	0.0
0209	0.0	1510	0.0	3302	0.0
0210	0.0	1511	0.0	3303	5.0

(부표 9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401	0.0	1512	0.0	3304	5.0
0402	0.0	1513	0.0	3305	21.7
0403	0.0	1514	0.0	3306	0.0
0404	0.0	1515	0.0	3307	2.3
0405	0.0	1516	0.0	3501	0.0
0406	0.0	1517	0.0	3502	0.0
0407	0.0	1518	0.0	3503	0.0
0408	0.0	1520	0.0	3504	0.0
0409	0.0	1521	0.0	3505	0.0
0410	0.0	1522	0.0	3506	0.0
0501	0.0	1601	0.0	3507	0.0
0502	0.0	1602	0.0	3801	0.0
0503	0.0	1603	0.0	3802	0.0
0504	0.0	1604	0.0	3803	0.0
0505	0.0	1605	0.0	3804	0.0
0506	0.0	1701	0.0	3805	0.0
0507	0.0	1702	0.0	3806	0.0
0508	0.0	1703	0.0	3807	0.0
0509	0.0	1704	0.0	3808	0.0
0510	0.0	1801	0.0	3809	0.0
0511	0.0	1802	0.0	3810	0.0
0601	0.0	1803	0.0	3811	0.0
0602	0.0	1804	0.0	3812	0.0
0603	0.0	1805	0.0	3813	0.0
0604	0.0	1806	0.0	3814	0.0
0701	0.0	1901	0.0	3815	0.0
0702	0.0	1902	0.0	3816	0.0
0703	0.0	1903	0.0	3817	0.0
0704	0.0	1904	0.0	3818	0.0
0705	0.0	1905	0.0	3819	0.0
0706	0.0	2001	0.0	3820	0.0
0707	0.0	2002	0.0	3821	0.0
0708	0.0	2003	0.0	3822	0.0

230 부 록

(부표 9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709	0.0	2004	0.0	3823	0.0
0710	0.0	2005	0.0	3824	0.0
0711	0.0	2006	0.0	3825	0.0
0712	0.0	2007	0.0	4101	0.0
0713	0.0	2008	0.0	4102	0.0
0714	0.0	2009	0.0	4103	0.0
0801	0.0	2101	4.0	4104	0.0
0802	0.0	2102	0.0	4105	0.0
0803	0.0	2103	0.0	4106	0.0
0804	0.0	2104	0.0	4107	0.0
0805	0.0	2105	0.0	4112	0.0
0806	0.0	2106	0.0	4113	0.0
0807	0.0	2201	0.0	4114	0.0
0808	0.0	2202	0.0	4115	0.0
0809	0.0	2203	종량세	4301	0.0
0810	0.0	2204	종량세	4302	0.0
0811	0.0	2205	종량세	4303	10.0
0812	0.0	2206	종량세	4304	10.0
0813	0.0	2207	0.0	5001	0.0
0814	0.0	2208	종량세	5002	0.0
0901	0.0	2209	0.0	5003	0.0
0902	종량세	2301	0.0	5004	0.0
0903	0.0	2302	0.0	5005	0.0
0904	0.0	2303	0.0	5006	0.0
0905	0.0	2304	0.0	5007	0.0
0906	0.0	2305	0.0	5101	0.0
0907	0.0	2306	0.0	5102	0.0
0908	0.0	2307	0.0	5103	0.0
0909	0.0	2308	0.0	5104	0.0
0910	0.0	2309	0.0	5105	0.0
1001	0.0	2401	종량세	5106	0.0
1002	0.0	2402	0.0	5107	0.0
1003	0.0	2403	0.0	5108	0.0
1004	0.0	2901	0.0	5109	0.0
1005	0.0	2902	0.0	5110	0.0
1006	0.0	2903	0.0	5111	0.0

(부표 9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007	0.0	2904	0.0	5112	0.0
1008	0.0	2905	0.0	5113	0.0
1101	0.0	2906	0.0	5201	0.0
1102	0.0	2907	0.0	5202	0.0
1103	0.0	2908	0.0	5203	0.0
1104	0.0	2909	0.0	5204	0.0
1105	0.0	2910	0.0	5205	0.0
1106	0.0	2911	0.0	5206	0.0
1107	0.0	2912	0.0	5207	0.0
1108	0.0	2913	0.0	5208	0.0
1109	0.0	2914	0.0	5209	0.0
1201	0.0	2915	0.0	5210	0.0
1202	0.0	2916	0.0	5211	0.0
1203	0.0	2917	0.0	5212	0.0
1204	0.0	2918	0.0	5301	0.0
1205	0.0	2919	0.0	5302	0.0
1206	0.0	2920	0.0	5303	0.0
1207	0.0	2921	0.0	5304	0.0
1208	0.0	2922	0.0	5305	0.0
1209	0.0	2923	0.0	5306	0.0
1210	0.0	2924	0.0	5307	0.0
1211	0.0	2925	0.0	5308	0.0
1212	0.0	2926	0.0	5309	0.0
1213	0.0	2927	0.0	5310	0.0
1214	0.0	2928	0.0	5311	0.0
1301	0.0	2929	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Brunei Darussalam's 2007 CEPT Package.

부표 10. 캄보디아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11.3	1302	15.0	2930	7.0
0102	11.3	1401	15.0	2931	7.0
0103	10.0	1402	15.0	2932	11.3
0104	7.5	1403	15.0	2933	19.0
0105	8.3	1404	15.0	2934	24.5
0106	9.0	1501	7.0	2935	7.0
0201	35.0	1502	7.0	2936	0.0
0202	35.0	1503	7.0	2937	0.0
0203	35.0	1504	7.0	2938	7.0
0204	35.0	1505	7.0	2939	26.2
0205	35.0	1506	7.0	2940	7.0
0206	35.0	1507	7.0	2941	0.0
0207	35.0	1508	7.0	2942	7.0
0208	35.0	1509	7.0	3301	35.0
0209	35.0	1510	7.0	3302	7.0
0210	30.0	1511	7.0	3303	7.0
0401	7.0	1512	7.0	3304	35.0
0402	15.0	1513	7.0	3305	12.3
0403	35.0	1514	7.0	3306	7.0
0404	35.0	1515	7.0	3307	35.0
0405	35.0	1516	7.0	3501	35.0
0406	35.0	1517	7.0	3502	35.0
0407	17.5	1518	7.0	3503	35.0
0408	35.0	1520	7.0	3504	35.0
0409	35.0	1521	7.0	3505	35.0
0410	35.0	1522	7.0	3506	7.0
0501	15.0	1601	35.0	3507	35.0
0502	15.0	1602	35.0	3801	7.0
0503	15.0	1603	35.0	3802	7.0
0504	15.0	1604	22.3	3803	7.0
0505	15.0	1605	35.0	3804	7.0
0506	15.0	1701	7.0	3805	7.0
0507	15.0	1702	7.0	3806	7.0
0508	15.0	1703	7.0	3807	7.0

(부표 10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509	15.0	1704	7.0	3808	2.6
0510	15.0	1801	15.0	3809	7.0
0511	7.5	1802	15.0	3810	7.0
0601	15.0	1803	35.0	3811	7.0
0602	11.5	1804	35.0	3812	7.0
0603	15.0	1805	35.0	3813	7.0
0604	15.0	1806	35.0	3814	35.0
0701	3.5	1901	15.0	3815	7.0
0702	7.0	1902	15.0	3816	7.0
0703	3.5	1903	35.0	3817	7.0
0704	7.0	1904	35.0	3818	7.0
0705	7.0	1905	7.0	3819	35.0
0706	7.0	2001	35.0	3820	35.0
0707	7.0	2002	35.0	3821	7.0
0708	7.0	2003	35.0	3822	7.0
0709	7.0	2004	35.0	3823	7.0
0710	7.0	2005	35.0	3824	7.0
0711	7.0	2006	35.0	3825	7.0
0712	7.0	2007	7.0	4101	15.0
0713	3.5	2008	35.0	4102	15.0
0714	7.0	2009	35.0	4103	15.0
0801	7.0	2101	35.0	4104	23.8
0802	7.0	2102	7.0	4105	35.0
0803	7.0	2103	35.0	4106	7.0
0804	7.0	2104	35.0	4107	11.7
0805	7.0	2105	35.0	4112	7.0
0806	7.0	2106	7.9	4113	7.0
0807	7.0	2201	35.0	4114	7.0
0808	7.0	2202	35.0	4115	7.0
0809	7.0	2203	35.0	4301	15.0
0810	7.0	2204	35.0	4302	35.0
0811	7.0	2205	35.0	4303	35.0
0812	7.0	2206	35.0	4304	35.0
0813	7.0	2207	35.0	5001	7.0
0814	7.0	2208	35.0	5002	7.0
0901	26.1	2209	7.0	5003	7.0

234 부 록

(부표 10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902	7.0	2301	7.0	5004	7.0
0903	7.0	2302	7.0	5005	7.0
0904	15.0	2303	7.0	5006	7.0
0905	15.0	2304	7.0	5007	7.0
0906	15.0	2305	7.0	5101	7.0
0907	15.0	2306	7.0	5102	7.0
0908	15.0	2307	7.0	5103	7.0
0909	15.0	2308	7.0	5104	7.0
0910	15.0	2309	13.2	5105	7.0
1001	7.0	2401	15.0	5106	7.0
1002	7.0	2402	23.8	5107	7.0
1003	7.0	2403	35.0	5108	7.0
1004	7.0	2901	7.0	5109	7.0
1005	4.7	2902	7.0	5110	7.0
1006	6.6	2903	7.0	5111	7.0
1007	7.0	2904	7.0	5112	7.0
1008	5.3	2905	35.0	5113	7.0
1101	35.0	2906	7.0	5201	7.0
1102	35.0	2907	7.0	5202	7.0
1103	31.0	2908	7.0	5203	7.0
1104	7.0	2909	7.0	5204	7.0
1105	35.0	2910	7.0	5205	7.0
1106	35.0	2911	7.0	5206	7.0
1107	7.0	2912	7.0	5207	7.0
1108	35.0	2913	7.0	5208	7.0
1109	35.0	2914	7.0	5209	7.0
1201	7.5	2915	7.0	5210	7.0
1202	10.0	2916	7.0	5211	7.0
1203	15.0	2917	7.0	5212	7.0
1204	15.0	2918	6.5	5301	7.0
1205	15.0	2919	7.0	5302	7.0
1206	15.0	2920	7.0	5303	7.0
1207	13.3	2921	12.3	5304	7.0
1208	35.0	2922	21.0	5305	7.0
1209	1.3	2923	7.0	5306	7.0
1210	15.0	2924	7.0	5307	7.0

(부표 10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211	31.7	2925	7.0	5308	7.0
1212	10.5	2926	7.0	5309	7.0
1213	15.0	2927	7.0	5310	7.0
1214	15.0	2928	7.0	5311	7.0
1301	19.2	2929	7.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Cambodia's 2007 CEPT Package.

부표 11. 인도네시아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3.3	1302	4.6	2930	4.0
0102	2.5	1401	1.7	2931	5.0
0103	3.3	1404	2.5	2932	2.7
0104	2.5	1501	5.0	2933	1.2
0105	2.7	1502	7.5	2934	0.6
0106	0.0	1503	5.0	2935	0.0
0201	5.0	1504	5.0	2936	1.0
0202	5.0	1505	7.5	2937	2.9
0203	5.0	1506	5.0	2938	0.0
0204	5.0	1507	0.0	2939	1.6
0205	5.0	1508	0.0	2940	5.0
0206	5.0	1509	0.0	2941	4.4
0207	6.0	1510	5.0	2942	5.0
0208	5.0	1511	0.0	3301	5.0
0209	5.0	1512	5.0	3302	77.5
0210	5.0	1513	0.0	3303	10.0
0401	5.0	1514	10.0	3304	10.0
0402	5.6	1515	5.3	3305	10.0

(부표 11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403	8.3	1516	9.8	3306	8.8
0404	5.0	1517	5.0	3307	10.0
0405	5.0	1518	5.0	3501	3.3
0406	5.0	1520	5.0	3502	5.0
0407	5.0	1521	5.0	3503	5.0
0408	5.0	1522	5.0	3504	5.0
0409	5.0	1601	10.0	3505	5.0
0410	5.0	1602	5.3	3506	5.0
0501	5.0	1603	5.0	3507	2.5
0502	5.0	1604	6.0	3801	5.0
0504	5.0	1605	5.0	3802	6.3
0505	5.0	1701	중량세	3803	5.0
0506	5.0	1702	5.0	3804	5.0
0507	5.0	1703	5.0	3805	5.0
0508	0.0	1704	10.0	3806	6.7
0510	5.0	1801	5.0	3807	5.0
0511	3.0	1802	5.0	3808	8.3
0601	8.8	1803	15.0	3809	3.8
0602	9.6	1804	15.0	3810	0.0
0603	25.0	1805	15.0	3811	3.6
0604	15.0	1806	13.0	3812	3.8
0701	12.5	1901	6.3	3813	5.0
0702	5.0	1902	5.0	3814	5.0
0703	5.0	1903	5.0	3815	5.0
0704	5.0	1904	5.0	3816	5.0
0705	5.0	1905	7.3	3817	5.0
0706	11.7	2001	5.0	3818	0.0
0707	5.0	2002	5.0	3819	5.0
0708	5.0	2003	5.0	3820	5.0
0709	5.0	2004	5.0	3821	5.0
0710	5.0	2005	5.0	3822	7.5
0711	5.0	2006	5.0	3823	6.4
0712	5.0	2007	5.0	3824	5.4

(부표 11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713	2.5	2008	5.4	3825	4.4
0714	5.0	2009	7.9	4101	0.0
0801	5.0	2101	5.0	4102	0.0
0802	5.0	2102	5.0	4103	0.0
0803	5.0	2103	5.7	4104	0.0
0804	7.9	2104	5.0	4105	0.0
0805	8.3	2105	5.0	4106	1.9
0806	5.0	2106	38.0	4107	0.0
0807	5.0	2201	3.3	4112	0.0
0808	5.0	2202	10.0	4113	2.5
0809	5.0	2203	40.0	4114	5.0
0810	5.0	2204	128.2	4115	5.0
0811	5.0	2205	150.0	4301	5.0
0812	5.0	2206	138.0	4302	5.0
0813	5.0	2207	30.0	4303	8.3
0814	5.0	2208	150.0	4304	12.5
0901	4.0	2209	5.0	5001	5.0
0902	5.0	2301	0.0	5002	5.0
0903	5.0	2302	2.0	5003	5.0
0904	5.0	2303	3.8	5004	5.0
0905	5.0	2304	0.0	5005	5.0
0906	5.0	2305	0.0	5006	5.0
0907	5.0	2306	1.1	5007	7.5
0908	5.0	2307	5.0	5101	5.0
0909	5.0	2308	5.0	5102	5.0
0910	5.0	2309	3.3	5103	5.0
1001	2.0	2401	5.0	5104	5.0
1002	5.0	2402	15.0	5105	5.0
1003	0.0	2403	14.2	5106	5.0
1004	5.0	2901	0.7	5107	5.0
1005	3.3	2902	1.1	5108	5.0
1006	종량세	2903	4.5	5109	5.0
1007	0.0	2904	3.3	5110	5.0
1008	5.0	2905	3.3	5111	10.0

(부표 11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101	5.0	2906	5.0	5112	10.0
1102	3.3	2907	4.4	5113	10.0
1103	4.3	2908	5.0	5201	0.0
1104	5.0	2909	4.5	5202	5.0
1105	5.0	2910	3.0	5203	5.0
1106	5.0	2911	5.0	5204	5.0
1107	5.0	2912	4.6	5205	5.0
1108	6.4	2913	5.0	5206	5.0
1109	5.0	2914	5.0	5207	5.0
1201	5.0	2915	3.8	5208	10.6
1202	5.0	2916	3.3	5209	10.3
1203	5.0	2917	3.4	5210	10.4
1204	5.0	2918	5.0	5211	10.3
1205	5.0	2919	5.0	5212	14.0
1206	5.0	2920	0.0	5301	5.0
1207	5.0	2921	4.7	5302	5.0
1208	2.5	2922	3.1	5303	2.5
1209	0.0	2923	0.0	5305	5.0
1210	5.0	2924	6.5	5306	5.0
1211	5.0	2925	6.0	5307	5.0
1212	5.0	2926	5.0	5308	5.0
1213	5.0	2927	7.5	5309	10.0
1214	5.0	2928	5.0	5310	8.3
1301	5.0	2929	3.8	5311	1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Indonesia's 2007 CEPT Package.

부표 12. 라오스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8.8	1302	10.0	2930	5.0
0102	8.8	1401	20.0	2931	5.0
0103	8.3	1402	20.0	2932	5.0
0104	10.0	1403	20.0	2933	5.0
0105	10.0	1404	20.0	2934	5.0
0106	10.0	1501	30.0	2935	5.0
0201	30.0	1502	30.0	2936	5.0
0202	30.0	1503	5.0	2937	5.0
0203	30.0	1504	5.0	2938	5.0
0204	30.0	1505	5.0	2939	5.0
0205	30.0	1506	5.0	2940	5.0
0206	30.0	1507	5.0	2941	5.0
0207	30.0	1508	5.0	2942	5.0
0208	30.0	1509	5.0	3301	5.0
0209	30.0	1510	10.0	3302	5.0
0210	30.0	1511	10.0	3303	20.0
0401	5.0	1512	10.0	3304	20.0
0402	5.0	1513	20.0	3305	20.0
0403	20.0	1514	10.0	3306	20.0
0404	5.0	1515	10.0	3307	10.0
0405	10.0	1516	11.7	3501	5.0
0406	10.0	1517	10.0	3502	5.0
0407	30.0	1518	10.0	3503	5.0
0408	10.0	1520	10.0	3504	5.0
0409	10.0	1521	10.0	3505	5.0
0410	10.0	1522	10.0	3506	8.3
0501	10.0	1601	30.0	3507	5.0
0502	10.0	1602	30.0	3801	5.0
0503	10.0	1603	10.0	3802	5.0
0504	10.0	1604	30.0	3803	5.0
0505	10.0	1605	30.0	3804	5.0
0506	10.0	1701	10.0	3805	5.0
0507	10.0	1702	10.0	3806	5.0

(부표 12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508	10.0	1703	10.0	3807	5.0
0509	10.0	1704	30.0	3808	5.0
0510	10.0	1801	10.0	3809	5.0
0511	9.5	1802	10.0	3810	10.0
0601	5.0	1803	10.0	3811	10.0
0602	8.1	1804	10.0	3812	10.0
0603	30.0	1805	10.0	3813	10.0
0604	30.0	1806	10.0	3814	10.0
0701	22.5	1901	10.0	3815	10.0
0702	40.0	1902	10.0	3816	10.0
0703	40.0	1903	10.0	3817	10.0
0704	40.0	1904	10.0	3818	10.0
0705	40.0	1905	30.0	3819	10.0
0706	40.0	2001	30.0	3820	10.0
0707	40.0	2002	30.0	3821	5.0
0708	40.0	2003	30.0	3822	5.0
0709	40.0	2004	30.0	3823	10.0
0710	40.0	2005	30.0	3824	9.4
0711	40.0	2006	30.0	3825	10.0
0712	40.0	2007	30.0	4101	20.0
0713	40.0	2008	30.0	4102	20.0
0714	40.0	2009	30.0	4103	20.0
0801	30.0	2101	20.0	4104	20.0
0802	30.0	2102	5.0	4105	20.0
0803	40.0	2103	10.0	4106	20.0
0804	34.0	2104	10.0	4107	20.0
0805	40.0	2105	20.0	4112	20.0
0806	30.0	2106	10.0	4113	20.0
0807	40.0	2201	20.0	4114	5.0
0808	30.0	2202	30.0	4115	12.5
0809	30.0	2203	40.0	4301	20.0
0810	30.0	2204	30.0	4302	20.0
0811	30.0	2205	30.0	4303	20.0
0812	30.0	2206	30.0	4304	20.0
0813	30.0	2207	37.5	5001	20.0

(부표 12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814	30.0	2208	38.3	5002	5.0
0901	40.0	2209	10.0	5003	5.0
0902	40.0	2301	5.0	5004	5.0
0903	40.0	2302	5.0	5005	5.0
0904	30.0	2303	5.0	5006	5.0
0905	20.0	2304	5.0	5007	5.0
0906	20.0	2305	5.0	5101	5.0
0907	20.0	2306	5.0	5102	5.0
0908	20.0	2307	5.0	5103	5.0
0909	5.0	2308	5.0	5104	5.0
0910	16.4	2309	5.0	5105	5.0
1001	5.0	2401	5.8	5106	5.0
1002	5.0	2402	40.0	5107	5.0
1003	5.0	2403	40.0	5108	5.0
1004	5.0	2901	5.0	5109	5.0
1005	5.0	2902	5.0	5110	5.0
1006	5.0	2903	5.0	5111	10.0
1007	5.0	2904	5.0	5112	10.0
1008	5.0	2905	5.0	5113	10.0
1101	5.0	2906	5.0	5201	20.0
1102	5.0	2907	5.0	5202	5.0
1103	5.0	2908	5.0	5203	5.0
1104	5.0	2909	5.0	5204	5.0
1105	5.0	2910	5.0	5205	5.0
1106	5.0	2911	5.0	5206	5.0
1107	5.0	2912	5.0	5207	5.0
1108	5.0	2913	5.0	5208	10.0
1109	5.0	2914	5.0	5209	10.0
1201	20.0	2915	5.0	5210	10.0
1202	20.0	2916	5.0	5211	10.0
1203	30.0	2917	5.0	5212	10.0
1204	20.0	2918	5.0	5301	5.0
1205	20.0	2919	5.0	5302	5.0
1206	20.0	2920	5.0	5303	5.0

242 부 록

(부표 12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207	20.0	2921	5.0	5304	5.0
1208	5.0	2922	5.2	5305	5.0
1209	5.0	2923	5.0	5306	5.0
1210	5.0	2924	5.0	5307	5.0
1211	5.0	2925	5.0	5308	5.0
1212	5.0	2926	5.0	5309	10.0
1213	5.0	2927	5.0	5310	10.0
1214	5.0	2928	5.0	5311	10.0
1301	20.0	2929	5.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Lao's 2007 CEPT Package.

부표 13. 말레이시아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0.0	1302	0.0	2930	0.0
0102	0.0	1401	0.0	2931	2.1
0103	0.0	1402	0.0	2932	0.0
0104	0.0	1403	0.0	2933	0.2
0105	0.0	1404	0.0	2934	0.0
0106	0.0	1501	7.5	2935	0.0
0201	0.0	1502	5.0	2936	0.0
0202	0.0	1503	5.0	2937	0.4
0203	0.0	1504	7.5	2938	0.0
0204	0.0	1505	0.0	2939	0.0
0205	0.0	1506	5.0	2940	0.0
0206	0.0	1507	5.0	2941	0.0
0207	0.0	1508	5.0	2942	0.0
0208	0.0	1509	0.0	3301	0.0
0209	0.0	1510	0.0	3302	0.0
0210	0.0	1511	4.3	3303	0.0
0401	0.0	1512	0.0	3304	2.9

(부표 13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402	0.4	1513	2.1	3305	13.3
0403	14.7	1514	0.0	3306	0.0
0404	0.0	1515	0.3	3307	5.3
0405	1.7	1516	3.2	3501	8.3
0406	5.0	1517	5.4	3502	5.0
0407	3.3	1518	1.5	3503	15.0
0408	2.8	1520	5.0	3504	0.0
0409	2.0	1521	0.0	3505	8.3
0410	0.7	1522	5.0	3506	25.0
0501	0.0	1601	17.5	3507	0.0
0502	0.0	1602	3.0	3801	0.0
0503	0.0	1603	20.0	3802	5.0
0504	0.0	1604	8.1	3803	0.0
0505	0.0	1605	3.0	3804	0.0
0506	0.0	1701	0.0	3805	0.0
0507	0.0	1702	1.5	3806	0.0
0508	0.0	1703	0.0	3807	0.0
0509	0.0	1704	15.0	3808	6.6
0510	0.0	1801	0.0	3809	0.0
0511	0.0	1802	0.0	3810	0.0
0601	0.0	1803	22.0	3811	1.4
0602	0.0	1804	10.0	3812	0.0
0603	0.0	1805	10.0	3813	0.0
0604	0.0	1806	15.4	3814	15.0
0701	0.0	1901	2.0	3815	0.0
0702	0.0	1902	6.2	3816	0.0
0703	0.0	1903	5.0	3817	0.0
0704	0.0	1904	6.4	3818	0.0
0705	0.0	1905	3.5	3819	0.0
0706	0.0	2001	6.8	3820	0.0
0707	0.0	2002	2.6	3821	0.0
0708	2.5	2003	3.7	3822	0.0
0709	0.0	2004	4.6	3823	4.3
0710	1.0	2005	3.5	3824	3.3

(부표 13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711	2.8	2006	0.0	3825	0.0
0712	1.9	2007	0.0	4101	0.0
0713	0.0	2008	8.1	4102	0.0
0714	3.0	2009	5.2	4103	0.0
0801	4.2	2101	10.7	4104	0.0
0802	0.0	2102	8.3	4105	0.0
0803	복합세	2103	12.8	4106	2.7
0804	3.3	2104	10.0	4107	0.0
0805	5.0	2105	5.0	4112	0.0
0806	5.0	2106	12.4	4113	2.5
0807	복합세	2201	8.3	4114	0.0
0808	5.0	2202	20.8	4115	0.0
0809	6.0	2203	종량세	4301	0.0
0810	13.9	2204	종량세	4302	0.0
0811	4.5	2205	종량세	4303	0.0
0812	5.0	2206	종량세	4304	0.0
0813	8.3	2207	종량세	5001	0.0
0814	10.0	2208	종량세	5002	0.0
0901	0.0	2209	5.0	5003	0.0
0902	8.0	2301	0.0	5004	0.0
0903	0.0	2302	0.0	5005	0.0
0904	0.0	2303	0.0	5006	0.0
0905	0.0	2304	0.0	5007	6.7
0906	0.0	2305	0.0	5101	0.0
0907	0.0	2306	0.0	5102	0.0
0908	0.0	2307	0.0	5103	0.0
0909	0.0	2308	0.0	5104	0.0
0910	0.0	2309	0.0	5105	0.0
1001	0.0	2401	종량세	5106	0.0
1002	0.0	2402	종량·복합세	5107	0.0
1003	0.0	2403	종량세	5108	0.0
1004	0.0	2901	3.6	5109	0.0
1005	0.0	2902	0.0	5110	0.0
1006	40.0	2903	0.4	5111	0.0

(부표 13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007	0.0	2904	0.0	5112	0.0
1008	0.0	2905	0.2	5113	0.0
1101	0.0	2906	0.0	5201	0.0
1102	0.0	2907	0.0	5202	0.0
1103	0.0	2908	0.0	5203	0.0
1104	0.0	2909	0.0	5204	15.0
1105	0.0	2910	0.0	5205	10.0
1106	2.5	2911	0.0	5206	10.0
1107	0.0	2912	0.0	5207	10.0
1108	0.0	2913	0.0	5208	10.0
1109	0.0	2914	0.0	5209	10.0
1201	0.0	2915	0.0	5210	10.0
1202	5.0	2916	0.4	5211	10.0
1203	0.0	2917	0.0	5212	10.0
1204	0.0	2918	0.0	5301	0.0
1205	0.0	2919	0.0	5302	0.0
1206	0.0	2920	0.0	5303	0.0
1207	0.0	2921	0.0	5304	0.0
1208	0.0	2922	2.7	5305	0.0
1209	0.0	2923	0.0	5306	0.0
1210	0.0	2924	0.8	5307	0.0
1211	0.0	2925	0.0	5308	0.0
1212	2.0	2926	0.0	5309	0.0
1213	0.0	2927	0.0	5310	0.0
1214	0.0	2928	0.0	5311	0.0
1301	0.0	2929	0.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Malaysia's 2007 CEPT Package.

부표 14. 미얀마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0.0	1302	5.6	2930	1.0
0102	0.0	1401	8.3	2931	1.0
0103	0.0	1402	5.0	2932	1.0
0104	0.0	1403	5.0	2933	1.0
0105	0.0	1404	5.2	2934	1.0
0106	0.0	1501	1.5	2935	1.0
0201	15.0	1502	0.8	2936	1.0
0202	15.0	1503	1.3	2937	1.0
0203	15.0	1504	1.3	2938	1.0
0204	15.0	1505	1.5	2939	0.9
0205	15.0	1506	1.5	2940	1.0
0206	15.0	1507	1.0	2941	1.0
0207	15.0	1508	1.5	2942	1.0
0208	15.0	1509	8.0	3301	1.0
0209	1.5	1510	1.0	3302	10.0
0210	10.0	1511	1.0	3303	20.0
0401	3.0	1512	1.0	3304	20.0
0402	3.0	1513	2.0	3305	20.0
0403	5.0	1514	1.0	3306	5.4
0404	5.0	1515	1.1	3307	16.1
0405	3.0	1516	4.7	3501	5.0
0406	3.0	1517	3.4	3502	5.0
0407	15.0	1518	1.6	3503	3.8
0408	15.0	1520	1.0	3504	1.5
0409	15.0	1521	1.3	3505	1.5
0410	15.0	1522	3.3	3506	1.5
0501	5.0	1601	15.0	3507	1.0
0502	5.0	1602	15.0	3801	3.0
0503	5.0	1603	15.0	3802	1.5
0504	5.0	1604	8.9	3803	1.0
0505	5.0	1605	10.0	3804	1.0
0506	5.0	1701	0.5	3805	3.2

(부표 14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507	2.9	1702	3.1	3806	1.5
0508	3.2	1703	15.0	3807	1.0
0509	5.0	1704	20.0	3808	0.3
0510	5.0	1801	15.0	3809	1.0
0511	5.0	1802	15.0	3810	5.0
0601	11.3	1803	15.0	3811	1.4
0602	0.0	1804	15.0	3812	1.0
0603	5.0	1805	15.0	3813	1.0
0604	5.0	1806	18.6	3814	7.5
0701	15.0	1901	8.5	3815	1.0
0702	15.0	1902	15.0	3816	1.0
0703	4.3	1903	1.0	3817	1.0
0704	15.0	1904	15.0	3818	1.5
0705	10.0	1905	14.4	3819	1.5
0706	15.0	2001	15.0	3820	1.0
0707	15.0	2002	15.0	3821	1.5
0708	15.0	2003	15.0	3822	1.5
0709	12.5	2004	15.0	3823	1.0
0710	15.0	2005	15.0	3824	1.0
0711	15.0	2006	15.0	3825	1.0
0712	15.0	2007	15.0	4101	5.0
0713	0.0	2008	15.0	4102	5.0
0714	12.2	2009	15.0	4103	5.0
0801	10.3	2101	13.0	4104	7.5
0802	14.5	2102	15.0	4105	7.5
0803	15.0	2103	15.0	4106	7.5
0804	15.0	2104	15.0	4107	7.5
0805	15.0	2105	15.0	4112	7.5
0806	15.0	2106	13.7	4113	7.5
0807	15.0	2201	6.7	4114	7.5
0808	15.0	2202	10.0	4115	7.5
0809	15.0	2203	30.0	4301	5.0
0810	15.0	2204	30.0	4302	7.5
0811	15.0	2205	30.0	4303	11.2

(부표 14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812	15.0	2206	30.0	4304	11.5
0813	15.0	2207	13.8	5001	3.0
0814	15.0	2208	40.0	5002	3.0
0901	8.3	2209	15.0	5003	3.0
0902	15.0	2301	12.5	5004	3.0
0903	15.0	2302	1.5	5005	3.0
0904	2.5	2303	1.5	5006	3.0
0905	3.0	2304	1.5	5007	20.0
0906	3.0	2305	1.5	5101	0.5
0907	3.0	2306	1.5	5102	0.5
0908	3.0	2307	1.5	5103	0.5
0909	1.5	2308	1.5	5104	0.5
0910	3.0	2309	4.6	5105	0.5
1001	0.0	2401	15.0	5106	2.0
1002	0.0	2402	30.0	5107	2.0
1003	0.0	2403	30.0	5108	2.0
1004	0.0	2901	1.0	5109	2.0
1005	0.0	2902	1.0	5110	2.0
1006	4.5	2903	1.0	5111	15.0
1007	0.0	2904	1.0	5112	15.0
1008	0.0	2905	1.3	5113	15.0
1101	5.0	2906	1.0	5201	0.0
1102	5.0	2907	1.0	5202	1.0
1103	5.0	2908	1.0	5203	1.0
1104	5.0	2909	1.0	5204	3.0
1105	5.0	2910	1.0	5205	1.0
1106	4.3	2911	1.0	5206	1.0
1107	5.0	2912	1.0	5207	1.0
1108	4.4	2913	1.0	5208	4.6
1109	5.0	2914	1.0	5209	5.1
1201	1.0	2915	1.0	5210	5.1
1202	1.0	2916	1.0	5211	5.1
1203	1.0	2917	1.0	5212	5.1

(부표 14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204	1.0	2918	1.0	5301	0.5
1205	1.0	2919	1.0	5302	0.5
1206	1.0	2920	1.0	5303	0.5
1207	1.0	2921	1.0	5304	0.5
1208	5.0	2922	1.1	5305	0.5
1209	0.9	2923	1.0	5306	3.0
1210	15.0	2924	1.0	5307	3.0
1211	1.0	2925	1.0	5308	2.5
1212	4.7	2926	1.0	5309	4.0
1213	5.0	2927	1.0	5310	3.0
1214	5.0	2928	1.0	5311	4.0
1301	1.5	2929	1.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Myanmar's 2007 CEPT Package.

부표 15. 필리핀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5.4	1302	3.0	2930	1.4
0102	2.5	1401	3.0	2931	1.0
0103	26.2	1402	5.0	2932	3.0
0104	14.6	1403	3.0	2933	1.8
0105	28.6	1404	3.0	2934	1.3
0106	5.0	1501	3.0	2935	3.0
0201	10.0	1502	3.0	2936	1.0
0202	10.0	1503	3.0	2937	2.1
0203	35.0	1504	3.0	2938	3.0
0204	10.5	1505	3.0	2939	2.6
0205	5.0	1506	3.0	2940	3.0
0206	6.0	1507	7.0	2941	1.9
0207	39.2	1508	3.0	2942	1.0
0208	6.7	1509	3.0	3301	2.8

250 부 록

(부표 15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5.4	1302	3.0	2930	1.4
0102	2.5	1401	3.0	2931	1.0
0103	26.2	1402	5.0	2932	3.0
0104	14.6	1403	3.0	2933	1.8
0105	28.6	1404	3.0	2934	1.3
0106	5.0	1501	3.0	2935	3.0
0201	10.0	1502	3.0	2936	1.0
0202	10.0	1503	3.0	2937	2.1
0203	35.0	1504	3.0	2938	3.0
0204	10.5	1505	3.0	2939	2.6
0205	5.0	1506	3.0	2940	3.0
0206	6.0	1507	7.0	2941	1.9
0207	39.2	1508	3.0	2942	1.0
0208	6.7	1509	3.0	3301	2.8
0101	5.4	1302	3.0	2930	1.4
0102	2.5	1401	3.0	2931	1.0
0103	26.2	1402	5.0	2932	3.0
0104	14.6	1403	3.0	2933	1.8
0105	28.6	1404	3.0	2934	1.3
0106	5.0	1501	3.0	2935	3.0
0201	10.0	1502	3.0	2936	1.0
0202	10.0	1503	3.0	2937	2.1
0203	35.0	1504	3.0	2938	3.0
0204	10.5	1505	3.0	2939	2.6
0205	5.0	1506	3.0	2940	3.0
0206	6.0	1507	7.0	2941	1.9
0207	39.2	1508	3.0	2942	1.0
0208	6.7	1509	3.0	3301	2.8
0209	5.0	1510	3.0	3302	1.0
0210	31.4	1511	15.0	3303	7.0
0401	3.0	1512	5.3	3304	7.0
0402	1.3	1513	12.5	3305	10.0
0403	6.3	1514	3.0	3306	5.0
0404	1.7	1515	4.2	3307	7.1
0405	3.0	1516	12.7	3501	2.0

(부표 15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406	5.0	1517	15.0	3502	3.0
0407	7.0	1518	3.0	3503	3.0
0408	3.0	1520	10.0	3504	1.0
0409	7.0	1521	3.0	3505	4.3
0410	3.0	1522	3.0	3506	5.0
0501	3.0	1601	40.0	3507	3.0
0502	3.0	1602	38.9	3801	1.5
0503	3.0	1603	3.0	3802	5.0
0504	3.0	1604	14.5	3803	3.0
0505	3.0	1605	12.1	3804	3.0
0506	3.0	1701	37.0	3805	2.3
0507	3.0	1702	3.7	3806	2.0
0508	3.0	1703	8.5	3807	3.0
0509	3.0	1704	13.8	3808	4.0
0510	3.0	1801	3.0	3809	3.0
0511	2.2	1802	3.0	3810	1.0
0601	1.0	1803	3.0	3811	3.0
0602	2.1	1804	3.0	3812	2.0
0603	15.0	1805	7.0	3813	5.0
0604	7.7	1806	6.6	3814	5.0
0701	27.0	1901	6.0	3815	1.0
0702	10.0	1902	14.4	3816	3.0
0703	35.0	1903	15.0	3817	3.0
0704	20.0	1904	8.3	3818	-
0705	22.5	1905	15.0	3819	3.0
0706	26.7	2001	15.0	3820	3.0
0707	20.0	2002	9.5	3821	3.0
0708	16.7	2003	7.0	3822	1.0
0709	13.3	2004	8.3	3823	5.2
0710	10.6	2005	9.5	3824	2.6
0711	16.6	2006	15.0	3825	28.2
0712	3.0	2007	10.0	4101	3.0
0713	4.0	2008	9.7	4102	1.0
0714	28.0	2009	7.2	4103	3.0

252 부 록

(부표 15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801	8.1	2101	30.6	4104	1.0
0802	3.0	2102	4.0	4105	1.0
0803	15.0	2103	9.0	4106	1.0
0804	9.2	2104	11.0	4107	5.0
0805	9.4	2105	10.0	4112	5.0
0806	5.0	2106	5.8	4113	5.0
0807	15.0	2201	10.0	4114	6.0
0808	7.0	2202	8.3	4115	6.0
0809	7.0	2203	15.0	4301	3.0
0810	9.2	2204	6.5	4302	3.0
0811	9.7	2205	5.0	4303	3.0
0812	8.3	2206	5.0	4304	3.0
0813	7.0	2207	10.0	5001	3.0
0814	20.0	2208	13.3	5002	3.0
0901	38.9	2209	15.0	5003	1.0
0902	3.0	2301	1.0	5004	1.0
0903	3.0	2302	4.4	5005	1.0
0904	14.7	2303	2.0	5006	1.0
0905	3.0	2304	3.0	5007	1.0
0906	3.0	2305	3.0	5101	1.0
0907	3.0	2306	5.6	5102	1.0
0908	3.0	2307	3.0	5103	1.0
0909	3.0	2308	3.0	5104	1.0
0910	6.6	2309	19.0	5105	1.0
1001	3.8	2401	7.0	5106	1.0
1002	7.0	2402	10.0	5107	1.0
1003	7.0	2403	4.5	5108	1.0
1004	7.0	2901	1.0	5109	1.0
1005	23.3	2902	1.9	5110	1.0
1006	47.4	2903	2.7	5111	1.0
1007	7.0	2904	2.0	5112	1.0
1008	2.5	2905	2.5	5113	1.0
1101	7.0	2906	3.0	5201	1.0
1102	8.5	2907	2.5	5202	3.0
1103	14.3	2908	3.0	5203	3.0

(부표 15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104	9.3	2909	2.2	5204	10.0
1105	4.0	2910	3.0	5205	7.0
1106	7.5	2911	1.0	5206	7.0
1107	1.0	2912	2.7	5207	7.0
1108	7.9	2913	3.0	5208	10.0
1109	3.0	2914	2.5	5209	10.0
1201	1.0	2915	2.7	5210	10.0
1202	15.0	2916	1.6	5211	10.0
1203	10.0	2917	2.1	5212	10.0
1204	3.0	2918	1.0	5301	3.0
1205	3.0	2919	1.0	5302	3.0
1206	1.0	2920	1.0	5303	3.0
1207	3.7	2921	1.8	5304	3.0
1208	3.0	2922	1.9	5305	5.0
1209	1.3	2923	1.0	5306	5.0
1210	1.0	2924	1.7	5307	5.0
1211	3.0	2925	1.0	5308	6.0
1212	6.5	2926	2.0	5309	7.0
1213	3.0	2927	1.0	5310	7.0
1214	3.0	2928	1.0	5311	7.0
1301	1.0	2929	2.5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Philippines' 2007 CEPT Package

부표 16. 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12.0	1401	10.0	2930	1.0
0102	2.5	1402	30.0	2931	1.0
0103	6.7	1403	30.0	2932	1.3
0104	15.0	1404	18.3	2933	1.2
0105	15.0	1501	27.0	2934	1.0
0106	9.1	1502	10.0	2935	1.0
0201	50.0	1503	10.0	2936	1.0
0202	50.0	1504	10.0	2937	1.0
0203	33.3	1506	10.0	2938	1.0
0204	30.0	1507	종량세	2939	0.9
0205	30.0	1508	종량세	2940	1.0
0206	32.2	1509	종량세	2941	1.7
0207	33.8	1510	종량세	2942	1.0
0208	31.7	1511	종량세	3301	5.0
0209	30.0	1512	27.0	3302	5.0
0210	43.8	1513	종량세	3303	40.0
0401	40.0	1514	27.0	3304	40.0
0402	17.5	1515	21.5	3305	20.0
0404	17.5	1516	27.0	3306	16.7
0405	21.3	1517	30.0	3307	20.0
0406	30.0	1518	27.0	3501	5.0
0407	13.5	1520	10.0	3502	7.5
0408	27.0	1521	5.0	3503	종량세
0409	30.0	1522	10.0	3504	5.0
0410	30.0	1601	30.0	3505	5.0
0501	1.0	1602	30.0	3506	종량세
0502	1.0	1603	30.0	3507	5.0
0503	1.0	1604	23.8	3801	5.0
0504	30.0	1605	20.0	3802	5.0
0505	10.0	1701	65.0	3803	5.0
0506	1.0	1702	17.4	3804	5.0
0507	30.0	1703	35.0	3805	5.0

(부표 16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508	30.0	1704	30.0	3806	3.8
0509	30.0	1801	27.0	3807	5.0
0510	30.0	1802	27.0	3808	0.0
0511	0.5	1803	10.0	3809	5.0
0601	30.0	1804	5.0	3810	5.0
0602	30.0	1805	10.0	3811	5.0
0603	54.0	1806	10.0	3812	5.0
0604	30.0	1901	10.0	3813	0.0
0701	60.0	1902	30.0	3814	5.0
0702	40.0	1903	30.0	3815	5.0
0703	53.3	1904	27.5	3816	5.0
0704	40.0	1905	26.7	3817	5.0
0705	40.0	2001	30.0	3818	5.0
0706	40.0	2002	30.0	3819	10.0
0707	40.0	2003	30.0	3820	5.0
0708	40.0	2004	30.0	3821	5.0
0709	40.0	2005	30.0	3822	5.0
0710	38.8	2006	30.0	3823	5.0
0711	40.0	2007	30.0	3824	5.0
0712	43.3	2008	30.0	3825	5.0
0713	29.2	2009	30.0	4102	0.0
0801	46.7	2101	45.0	4104	5.0
0802	10.0	2102	16.7	4105	5.0
0803	40.0	2103	20.0	4106	5.0
0804	40.0	2104	25.0	4107	5.0
0805	38.0	2105	30.0	4112	5.0
0806	30.0	2106	5.0	4113	5.0
0807	40.0	2201	0.0	4114	5.0
0808	20.0	2202	45.0	4115	3.0
0809	40.0	2203	60.0	4301	1.0
0810	37.1	2204	58.5	4302	5.0
0811	36.7	2205	60.0	4303	30.0
0812	40.0	2206	60.0	4304	17.5
0813	40.0	2207	종량세	5001	10.0
0901	40.0	2208	59.1	5002	10.0

256 부 록

(부표 16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903	30.0	2209	60.0	5003	1.0
0904	29.0	2301	1.0	5004	5.0
0905	27.0	2302	7.4	5005	5.0
0906	27.0	2303	7.7	5006	5.0
0907	27.0	2304	6.0	5007	5.0
0908	27.0	2305	9.0	5101	1.0
0909	27.0	2306	9.0	5102	1.0
0910	27.0	2307	9.0	5103	1.0
1001	종량세	2308	9.0	5104	1.0
1002	종량세	2309	9.0	5105	1.0
1003	종량세	2402	60.0	5106	5.0
1004	종량세	2403	60.0	5107	5.0
1005	종량세	2901	1.0	5108	5.0
1006	종량세	2902	2.0	5109	5.0
1007	종량세	2903	3.4	5110	5.0
1008	종량세	2904	1.0	5111	5.0
1101	5.0	2905	1.4	5112	5.0
1102	30.0	2906	1.6	5113	5.0
1103	30.0	2907	1.4	5201	0.0
1104	30.0	2908	1.0	5202	0.0
1105	30.0	2909	2.6	5203	0.0
1106	40.0	2910	1.0	5204	5.0
1107	종량세	2911	1.0	5205	5.0
1108	21.7	2912	1.3	5206	5.0
1109	5.0	2913	1.0	5207	5.0
1201	20.5	2914	1.3	5208	5.0
1202	26.5	2915	1.4	5209	5.0
1203	종량세	2916	1.0	5210	5.0
1204	30.0	2917	2.0	5211	5.0
1205	30.0	2918	1.3	5212	5.0
1206	30.0	2919	1.0	5301	5.0
1207	28.3	2920	1.0	5302	5.0
1208	40.0	2921	1.0	5303	5.0
1209	3.9	2922	0.9	5304	5.0

(부표 16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210	30.0	2923	1.0	5305	5.0
1211	11.8	2924	1.0	5306	5.0
1212	21.7	2925	1.0	5307	5.0
1213	1.0	2926	1.0	5308	5.0
1214	5.0	2927	1.0	5309	5.0
1301	7.8	2928	1.0	5310	5.0
1302	10.8	2929	1.0	5311	5.0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Thailand's 2006 CEPT Package.

부표 17. 베트남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단위: %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101	3.8	1302	5.0	2930	0.0
0102	3.8	1401	5.0	2931	0.0
0103	3.3	1402	5.0	2932	0.0
0104	2.5	1403	5.0	2933	0.0
0105	2.8	1404	5.0	2934	3.8
0106	5.0	1501	15.0	2935	0.0
0201	20.0	1502	15.0	2936	0.0
0202	20.0	1503	15.0	2937	0.0
0203	30.0	1504	10.0	2938	1.0
0204	20.0	1505	15.0	2939	0.0
0205	20.0	1506	15.0	2940	3.0
0206	20.0	1507	27.5	2941	2.8
0207	20.0	1508	27.5	2942	0.0
0208	20.0	1509	22.5	3301	5.0
0209	20.0	1510	22.5	3302	8.8
0210	20.0	1511	28.3	3303	50.0
0401	20.0	1512	22.5	3304	45.7
0402	21.8	1513	25.0	3305	45.0

(부표 17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403	30.0	1514	22.5	3306	30.0
0404	26.7	1515	13.7	3307	50.0
0405	15.0	1516	49.1	3501	10.0
0406	20.0	1517	48.5	3502	10.0
0407	20.0	1518	5.0	3503	7.7
0408	20.0	1520	3.0	3504	10.0
0409	20.0	1521	3.0	3505	13.3
0410	20.0	1522	3.0	3506	15.0
0501	5.0	1601	50.0	3507	3.0
0502	5.0	1602	50.0	3801	3.0
0503	5.0	1603	50.0	3802	1.0
0504	5.0	1604	50.0	3803	1.0
0505	5.0	1605	50.0	3804	1.0
0506	5.0	1701	36.7	3805	5.0
0507	5.0	1702	4.6	3806	5.0
0508	5.0	1703	10.0	3807	3.0
0509	5.0	1704	42.5	3808	2.9
0510	0.0	1801	10.0	3809	3.3
0511	4.5	1802	10.0	3810	3.0
0601	0.0	1803	10.0	3811	1.0
0602	3.1	1804	10.0	3812	5.0
0603	40.0	1805	20.0	3813	0.0
0604	40.0	1806	44.5	3814	3.0
0701	15.0	1901	36.0	3815	3.0
0702	30.0	1902	50.0	3816	10.0
0703	15.0	1903	50.0	3817	0.0
0704	30.0	1904	50.0	3818	0.0
0705	30.0	1905	47.2	3819	3.0
0706	30.0	2001	50.0	3820	3.0
0707	30.0	2002	50.0	3821	0.0
0708	30.0	2003	50.0	3822	0.0
0709	30.0	2004	50.0	3823	9.2
0710	30.0	2005	50.0	3824	4.1
0711	30.0	2006	50.0	3825	40.0

(부표 17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0712	30.0	2007	50.0	4101	0.0
0713	15.0	2008	50.0	4102	0.0
0714	10.0	2009	50.0	4103	0.0
0801	38.3	2101	50.0	4104	3.8
0802	40.0	2102	8.8	4105	3.4
0803	40.0	2103	50.0	4106	3.8
0804	40.0	2104	40.0	4107	10.0
0805	40.0	2105	50.0	4112	10.0
0806	40.0	2106	25.3	4113	10.0
0807	40.0	2201	50.0	4114	5.0
0808	40.0	2202	50.0	4115	5.0
0809	40.0	2203	100.0	4301	0.0
0810	40.0	2204	100.0	4302	0.0
0811	40.0	2205	100.0	4303	42.0
0812	40.0	2206	100.0	4304	45.0
0813	40.0	2207	42.5	5001	5.0
0814	20.0	2208	100.0	5002	5.0
0901	36.7	2209	50.0	5003	10.0
0902	50.0	2301	10.0	5004	15.0
0903	50.0	2302	10.0	5005	15.0
0904	30.0	2303	10.0	5006	15.0
0905	20.0	2304	0.0	5007	40.0
0906	20.0	2305	0.0	5101	0.0
0907	20.0	2306	0.0	5102	0.0
0908	20.0	2307	10.0	5103	10.0
0909	20.0	2308	10.0	5104	3.0
0910	20.0	2309	9.4	5105	0.0
1001	3.0	2401	28.8	5106	20.0
1002	3.0	2402	100.0	5107	20.0
1003	3.0	2403	30.0	5108	20.0
1004	3.0	2901	0.0	5109	20.0
1005	18.3	2902	0.0	5110	20.0
1006	38.4	2903	4.7	5111	40.0
1007	10.0	2904	3.0	5112	40.0

260 부 록

(부표 17 계속)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품목	MFN 관세율
1008	10.0	2905	0.0	5113	40.0
1101	20.0	2906	0.0	5201	0.0
1102	20.0	2907	0.0	5202	10.0
1103	20.0	2908	0.0	5203	0.0
1104	20.0	2909	0.0	5204	30.0
1105	30.0	2910	0.0	5205	20.0
1106	30.0	2911	0.0	5206	20.0
1107	5.0	2912	0.3	5207	20.0
1108	20.0	2913	0.0	5208	40.0
1109	10.0	2914	0.0	5209	40.0
1201	7.5	2915	0.0	5210	40.0
1202	6.7	2916	0.0	5211	40.0
1203	10.0	2917	3.2	5212	40.0
1204	10.0	2918	1.0	5301	0.0
1205	10.0	2919	3.0	5302	0.0
1206	30.0	2920	0.0	5303	10.0
1207	10.0	2921	0.0	5304	3.0
1208	30.0	2922	8.3	5305	8.0
1209	0.0	2923	0.8	5306	3.0
1210	4.0	2924	2.6	5307	20.0
1211	4.7	2925	1.7	5308	20.0
1212	9.0	2926	0.0	5309	40.0
1213	10.0	2927	0.0	5310	40.0
1214	1.0	2928	0.0	5311	40.0
1301	4.7	2929	6.3		

주: 종가세 기준임.

자료: ASEAN사무국, Viet Nam's 2007 CEPT Package.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강인수. 1993.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정책연구 93-09.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권오복 등. 2004.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R-4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6. 「한·미 FTA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기석. 2007.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 ASEAN+3, EAS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국가전략 제13권 1호.
- 김동환. 1994. “가공식품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농촌경제」 제 17권 3호.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김세원 등. 2006.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제도적 접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김세원. 2004. 「EU 경제학」. 박영사.
- 김영한. 2004.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국제통상연구」. 9권 2호. 국제통상학회.
- 김준현 등. 1993. 「섬유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자동화 추진 전략」. 연구보고서 281. 산업연구원.
- 김태현. 2007. “ASEAN의 경험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에 관한 연구.” 조선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홍중, 박성훈. 2004.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노성호 등. 1989. 「의류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구조고도화」. 산업연구원. 연보 170.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 시아로」. 이매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정책연구보 고서. 05-16.
- 박번순 등. 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박사명. 2008. 「동아시아 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매진.

- 박석근. 2005.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단계론적 접근.” 『인제논총』 제20권.
- 박진수. 1994. 6. 『국제화 시대 맞이한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 박태규. 1992.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경쟁력 분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경제연구총서.
- 서종혁 등. 2001. 『동북아시아 농업협력 강화 방안』. C2001-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은희. 2006. “ASEAN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0집.
- 심영섭, 윤재형. 1995.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권역별 경쟁력 분석』. 연보369. 산업연구원.
- 어명근 등. 2003.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명근 등. 2003.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R4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명환. 2005.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위한 한국의 비전.” 2005 APEC 국제심포지움 기조연설. 외교통상부.
- 이정환. 1998.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종욱. 1992. 『한국전자산업의 경쟁력 원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장기선 등. 2004. 『동아시아 FTA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외환국제금융리뷰.
- 정영록. 1992. 『동북아시아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등. 2005.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
- 정인교 등. 2002. 『한·ASEAN FTA 타당성 검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2003. “한중일 FTA의 추진 당위성과 선행과제.”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정란. 2006.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일본의 입장.”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2007. 『EU 정책브리핑』. 외교통상부.
- 진시원. 2006.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경로: FTA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 최세균 등.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C2001-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등. 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R4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등. 2002.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 방안』. C2002-38. 한

- 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등. 2004. 「한·일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C2004-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2007. 「세계 농정의 흐름과 시사점」. 세계 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영종 등. 2005.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 최인범. 1993.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 「무역연구」.

<국외문헌>

- Cheong InKyo. 20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y Analyses 02-02. KIEP.
- Choi, S. et al. 1997.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case of New Zealand Agricultural Product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0. KREI.
- Kim Heungchong. 2002. *Has Traded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KIEP Working Paper 02-12. KIEP.
- Kim, D. 1994. "Domestic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in Global Markets: the case of U.S.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Ph.D thesis, Univ. of Wisconsin-Madison.
- Lee Chang-Soo, Park Soon-Chan. 2002. *Formation of Region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and the Role of Japan and the U.S.* KIEP Working Paper 01-03. KEIP.
- Suthiphand Chirathivat. 2004. "East Asia FTA: Economic Modalities, Prospects and Further Implication." *Journal of Asian Economics*.
- 다니구치 마코토(김종걸·김문정 옮김). 2007. 「동아시아 공동체」, 울력.
- 古塚秀. 2008. "일본에 있어서 농산물 무역의 전개와 일본농업." WTO 체제하의 농산물무역의 신국면. 돗토리대학대학원연합농학연구과 일중한합동국제세미나 자료.

<기타>

조선일보. 2008년 2월 11일.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FAOSTAT. <<http://faostat.fao.org>>.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201/07/eng20020107_88176.shtml>.

연구보고 R572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2/2차 연도)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11.

발 행 2008. 11.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978-89-6013-100-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